

자 료

- I. 직제
- II.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 III. 장관 연설문
- IV.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 V.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 VI. 인사
- VII. 국외훈련·출장
- VIII. 국제교류 현황
- IX. 상훈
- X. 위원회 현황
-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목 차

I. 직 제	503
1. 직제 연혁	503
2. 조직도	535
3. 정원 변동표	536
II.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539
1. 훈 령	539
2. 예 규	545
3. 주요지시	549
III. 장관 연설문	555
IV.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624
1. 법무부장관	624
2. 검찰총장	626
3. 법무부차관	627
4. 대검찰청 차장검사	629
5. 법무부 실·국·본부장	630
V.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637
1. 본 부	637
2. 법무연수원	641
3. 검 찰 청	642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675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78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679
7.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682
VI. 인 사	683
VII. 국외훈련 · 출장	684
VIII. 국제교류 현황	685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685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688
IX. 상 훈	694
1. 총 괄	694
2. 훈장 · 포장 · 표창자 명단	695
X. 위원회 현황	706
1. 총 괄	706
2. 위원회 개요	706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712

I. 직 제

1. 직제 연혁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 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행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 및 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포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포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 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 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장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사찰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과·검찰제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 교정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 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 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 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 (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 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 심사과로 명칭 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조사와 폐지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66	2001. 4.23. 2001. 4.24.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 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 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 출장소 신설
67	2001. 9.29. 2001.10.10.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 출장소 신설
68	2002. 3.25. 2002. 3.30.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 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 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 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 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 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 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 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 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 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체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 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 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 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 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 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 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 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 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 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 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은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 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정책 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 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 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 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 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 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 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장·치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행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 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 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 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 보호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更生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자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이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행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녀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 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06	2009. 7. 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 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 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 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 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 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 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 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 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 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 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 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 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 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 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 령 호 수	건 명	내 용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 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 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 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 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 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 (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 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 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 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 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 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 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21	2013.11. 5.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2013.11.13.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2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2013.12.12.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 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7급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2014. 9. 4.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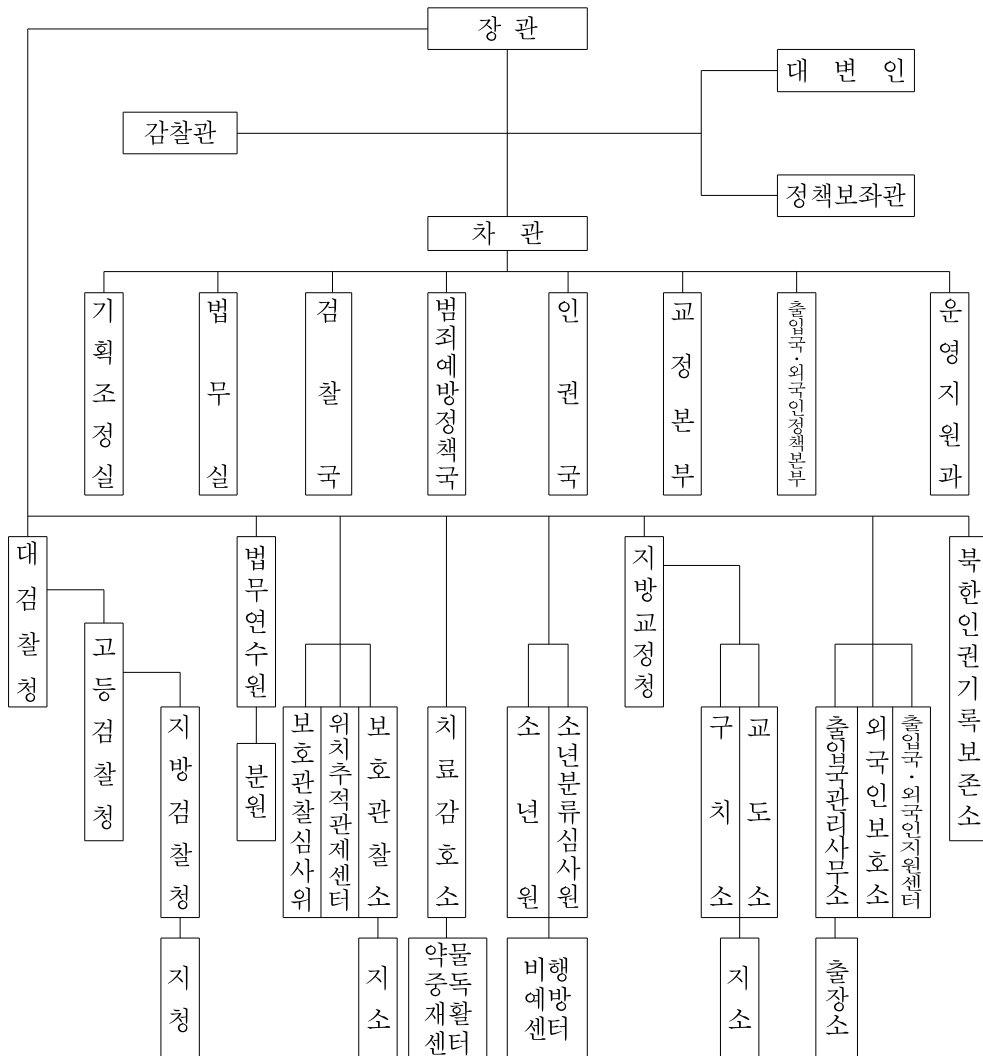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명	내 용
125	2015. 1. 6.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 (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분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5→4·5급 1명, 7→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4→3·4급 1명, 5→4·5급 4명, 6→5급 13명, 7→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5급6명→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명	내용
131	2016. 5.10.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 센터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 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 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 직업훈련과 → 보안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 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2016.12.30.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2. 조직도

본부	2실 3국 2본부
산하기관	검찰청 64
	연수원 2
	보호관찰기관 63
	치료감호기관 2
	소년보호기관 27
	교정기관 56
	출입국관리기관 46
계	인권기록보존소 1
	262개 기관



[illegible]

II.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 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37	2016. 1. 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방법으로 서면심의 규정 신설	인 권 구 조 과
1038	2016. 1. 5.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 행정자치부의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추진에 따라 직무윤리 검증절차 규정 신설	법 무 심 의 관 실
1039	2016. 1. 11.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제정)	○ 7호 처분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임상병리 검사 및 심리검사 실시, 전담직원 지정, 보호조치의 종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 운영 규정 등 명시 ○ 9·10호 처분자 중 의료·재활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신체질환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 마련	소 년 과
1040	2016. 1. 15.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규정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재정착난민의 입주에 따른 국내 정착 계획의 수립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난 민 과
1041	2016. 1. 20.	교정행정 정보화 업무지침	○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담당자 변경 ○ 교정시설을 교정기관으로 명칭 변경	보 안 과
1042	2016. 1. 21.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 공무원임용령 개정('15.9.25.)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변경 ○ 필수보직기간 연장 및 전문직위 보직요건 추가신설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1043	2016. 1. 25.	보호소년 교육지침	○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의료·재활 교육을 수료하고 다른 소년원(전직 소년원 포함)으로 이송되는 경우, 인수 소년원에 교육과정 이수 사항 등을 사전 통보 하게 하는 등 학적처리절차 신설(제49조)	소 년 과
1044	2016. 1. 25.	보호소년 처우지침	○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규정 ○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훈령) 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소 년 과

번 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45	2016. 1. 25.	비행진단 및 비행 예방교육에 관한 지침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 주거지 이동 등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정비	소 년 과
1046	2016. 1. 25.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정비 (제43조)	소 년 과
1047	2016. 1. 25.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정비 (제16조)	소 년 과
1048	2016. 1. 2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 지침	○ 상위 법령상의 보호장비 사용법에 따른 보호소년 등 대상 포승규정 정비	소 년 과
1049	2016. 1. 25.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취사원 고용규칙(폐지)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취사원 고용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하고 있어 지침 불필요	소 년 과
1050	2016. 2. 25.	교정본부 보고사무 지침	○ 교정기관의 신속·정확한 보고사무를 위해 제정 ○ 정보보고, 감독보고에 대한 대상·체계·방법 및 시기에 대해 규정	교정기획과
1051	2016. 2. 25.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 지침	○ 범정부 소속기관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제정	범 죄 예 방 기 획 과
1052	2016. 2. 25.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고사무 지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하여 보고대상·방법 및 보고시점 등을 정함	출 입 국 기 획 과
1053	2016. 2. 25.	법무연수원 보고 사무지침	○ 중요사안의 보고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고사무 처리를 위해 법무연수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개별 훈령 제정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1054	2016. 2. 25.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폐지)	○ 본 훈령의 적용대상인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연수원에 대한 개별 보고사무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폐지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번 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55	2016. 3. 2.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응시 요건에 「형법」 교육 이수 추가 등	보호법제과
1056	2016. 3. 2.	법무부 자체감사 규정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2015.12.21.)이 제정 됨에 따라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이를 반영	감 사 담 당 관 실
1057	2016. 3. 2.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강의 원고료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횡수·시간 제한 등을 정함	감 사 담 당 관 실
1058	2016. 3. 31.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2016.3.1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授受)'의 개념 명확화,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개정	감 사 담 당 관 실
1059	2016. 4. 8.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 시행으로 변경된 정부상징의 기준에 맞게 법무부 기의 규격 및 모형 정비	운영지원과
1060	2016. 4. 22.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대검찰청의 변경된 직제(중앙수사 수사기획관 폐지)를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형사기획과
1061	2016. 4. 25.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정비 (제5조)	소 년 과
1062	2016. 4. 25.	보호소년 처우 지침	○ 보호소년의 항고 또는 재항고 인용 후 새로운 소년원송치 처분결정 새로운 수용개시전의 수용기간 전부 산입 (제7조 3항 신설) ○ 특별지도소년 지정 요건 추가(제16조)	소 년 과
1063	2016. 4. 25.	비행진단 및 비행 예방교육에 관한 지침	○ 비행예방교육 미수료처리와 관련, 교육 대상자 조항(제22조)을 인용하여야 하는 조문이 관련 없는 타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제31조제6항)	소 년 과
1064	2016. 5. 10.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정비 (제8조)	보호법제과

번 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65	2016. 5. 11.	난민위원회 운영 세칙	○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 시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 및 의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속한 심사절차 진행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난 민 과
1066	2016. 5. 27.	소년선도 보호 지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키한 정비(제34조)	법 질 서 선 진 화 과
1067	2016. 5. 30.	보호관찰소 신병 관련 업무 처리 규정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상의 구인된 대상자 등 신병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을 훈령으로 격상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안정적인 신병 관리 규정 마련	보호관찰과
1068	2016. 6. 2.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위원회 규정	○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촉 기준과 연임제한 규정 마련	외 국 인 정 책 과
1069	2016. 6. 10.	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 감호업무 지침	○ 보호소년등에 이탈사고 발생시 조치 매뉴얼 개정(제135조의5 별표9)	소 년 과
1070	2016. 6. 10.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재검토키한(2016.6.12) 도래에 따라 기한 재설정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체류관리과
1071	2016. 7. 1.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 한 지침	○ 수용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명칭을 병행사용하기 위해 제정	범 죄 예 방 기 획 과
1072	2016. 7. 1.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규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키한 정비(제7조)	보호법제과
1073	2016. 7. 11.	치료감호소 감호 업무지침	○ 보호법제과 내부 지침으로 소 내규로 제정·운영 중인 ‘감호업무준칙’을 훈령으로 격상·제정 ○ 수용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방법 구체화 및 감호 보조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 경비원 규정 신설 등 피치료감호자 수용 관리 강화	보호법제과

번호	일자	제목	주요 골자	비고
1074	2016. 7. 20.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정보화업무 추진체계 확립·개선 ○ 정보화분야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 자원관리(EA: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규정 추가 ○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업무 폐지	정 보 화 담 당 관 실
1075	2016. 7. 26.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보호외국인 도주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관련 일부 보완사항 규정 ○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직원 인권교육 계획 수립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안전한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심리상담사 등의 심리상담 등 근거 마련	이민조사와
1076	2016. 8. 11.	법무부 여성아동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 위원 연임제한 및 해촉기준 마련	여 성 아 동 인 권 과
1077	2016. 8. 12.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개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신설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신설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행복민원 센 터)
1078	2016. 9. 12.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훈령의 유효기간을 삭제 (2017.4.30.→삭제)	국 적 과
1079	2016. 10. 15.	교도관 예절 규정	○ 교정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6급 보직 과장 삭제 및 교정관 추가 ○ 정부의전편람의 공통용어 사용 및 재검토 기한 연장	교정기획과
1080	2016. 10. 24.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 「청탁금지법」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정비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의 절차 규정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적 내용을 반영	감 사 담 당 관 실
1081	2016. 11. 29.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외국인 불법고용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고용주의 범위를 확대	이민조사와

번 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082	2016. 12. 19.	교정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	○ 교정기관 지휘체계 및 현장 정책집행 기능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교정기획과
1083	2016. 12. 20.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폐지된 기관·부서명을 반영 ○ 중간성과평가 규정 정비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정 책 성 과 관 리 팀)
1084	2016. 12. 22.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사관 자격 시험 직전 조사관자격인정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사관자격 인정심의회 정기회의를 반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	보호법제과
1085	2016. 12. 26.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대통령훈령 제33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정비 등	보호관찰과
1086	2016. 12. 30.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육아휴직 허용 요건 및 기간 확대, 기타 휴직 허용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창 조 행 정 담 당 관 실
1087	2016. 12. 30.	수용자 급식관리 위원회 운영지침	○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기능 변경(급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급식관리위원회 기능 변경(식단 및 그 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급식관리위원회 중 지소의 용어 및 간사 변경	복 지 과

2. 예 규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04	2016. 1. 4.	교정위원 운영 지침	○ 교정위원 활동분야별 자격 요건 정비 ○ 회비미납을 해촉 사유에서 제외 ○ 교정기관 출입 시 관계법규 준수 강조	사 회 복 귀 과
1105	2016. 1. 4.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가족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족에 대한 입증가능서류 및 증표 확대 ○ 가족접견실 이용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사 회 복 귀 과
1106	2016. 1. 7.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 절차 및 정비 지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정비	법 무 심의관실
1107	2016. 1. 8.	분류처우 업무 지침	○ 치료감호 종료 후 교정시설에 재수용된 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 마련 ○ 무기수형자에 대한 정기 인성검사 제도 도입 등 수형자 분류처우 제도의 미비점 보완	분 류 심 사 과
1108	2016. 1. 12.	교정시설 경비 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중간처우시설에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추가 ○ 중간처우 대상자에 ‘형기종료 예정자’ 추가	분 류 심 사 과
1109	2016. 1. 21.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 건강검진 실시 횟수 및 의무관 실시 규정 정비 ○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관리 규정 정비 ○ 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 규정 보완	의 료 과
1110	2016. 1. 25.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	소 년 과
1111	2015. 5. 11.	법무부 공증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지침	○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 무 과
1112	2016. 2. 11.	교도작업 운영 지침	○ 개방지역 및 외부기업통근 작업장 조·위로금 지급방식 개선 ○ 위탁업체에서 금지물품 반입시 계약 해지·중단 근거 명시	직 업 훈 련 과
1113	2016. 2.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직영작업자(기술숙련자)에 대한 작업장려금 인상	직 업 훈 련 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14	2016. 3. 11.	가석방 업무지침	○ 개선의 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기준 일부 조정 ○ 외국인을 보호사범에서 제외 ○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개정	분 류 심 사 과
1115	2016. 4. 1.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집중인성교육과정 통합 및 재편성 ○ 석방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제외대상자 신설	사 회 복 귀 과
1116	2016. 4. 14.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부처 명칭 변경 및 “정부입법지원시스템” 개설토인한 시스템 명칭 변경 등 반영 ○ 소관 법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시 보고 기한 등을 “국무회의 규정”에 맞게 정비	법 무 심의관실
1117	2016. 4. 22.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 지급 업무 처리지침	○ 사전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고,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국 가 송 무 과
1118	2016. 4. 22.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 배상심의회 위촉 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철차 및 직무윤리 서약철차를 마련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며, 존속기한을 설정	국 가 송 무 과
1119	2016. 4.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	○ 제명을 띄어쓰기 한 형태로 변경하고, 존속 기한을 설정	국 가 송 무 과
1120	2016. 5. 2.	비상 대기 숙소 관리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복 지 과
1121	2016. 6. 17.	순회점검반 운영 지침	○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 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교 정 기 획 과
1122	2016. 6. 17.	휴가일수 계산 자체기준 지침	○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 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교 정 기 획 과
1123	2016. 7. 1.	교 정 직 공 무 원 임용시험의 체력 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교 정 기 획 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24	2016. 7. 4.	분류처우 업무 지침	○ 작업 또는 교육하지 않는 자의 소득점수 부여 및 평가의 문제점 보완 ○ 벌금 미납자에 대한 처우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분 류 심 사 과
1125	2016. 7. 4.	치료감호소 자문 위원회 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정비(제11조)	보 호 법 제 과
1126	2016. 7. 26.	민영교도소 운영 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 운영경비 중 다음연도 이월 사용경비에 대하여 “이월조서” 작성 및 이월된 금액과 그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운영경비 집행결과에 포함 ○ “일할계산”을 “날 수대로 계산”으로 용어정비 ○ 지침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분 류 심 사 과
1127	2016. 9. 1.	분류센터 운영 지침	○ 분류전담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위험군 수형자의 과학적 선별과 관리 및 처우방안을 제시하며, 필요 시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	분 류 심 사 과
1128	2016. 9. 21.	특별사법경찰관 리 지명절차 등 에 관한 지침	○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재설정	형 사 기 획 과
1129	2016. 9. 26.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 지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 찰 담 당 관
1130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비공개)		
1131	2016. 10. 21.	국 적 업 무 처 리 지침	○ 현행 국적 심사업무 위임 규정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국 적 과
1132	2016. 10. 31.	수용관리 업무 지침	○ 장소변경접견 관련 규정 개정 ○ 스마트접견 관련 규정 신설	보 안 과
1133	2016. 11. 04.	감사윤리강령 운영지침	○ 감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감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	감 찰 담 당 관

번 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134	2016. 12. 23.	교 정 직 공 무 원 임용시험의 체력 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교 정 기 획 과
1135	2016. 12. 29.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조정된 수용구분 현행화 ○ 개별법령에 근거, 입소 및 이송 관련 규정 신설 ○ 형기계산 관련 대법원 결정 등 반영 ○ 수용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보 안 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 신 처	비 고
1. 6.	2016년 교도작업 운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달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생산성 증대, 생산기반 정비, 참여업체와의 협력 강화, 작업장 안전, 교도작업 홍보를 통해 교도작업 내실화 추진	무	직 업 훈 련 과
1. 15.	관광상륙허가제 시행지침 개정(안) 시달	○ 출장심사를 통한 검증 대신 승객 하선 과정에서 여권을 판독하여 본인 여부 확인, 출항 시에는 교부한 여권 사본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심사 종료(시행일 : '16. 1. 25.)	기	출 입 국 심 사 과
1. 18.	2016년도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시달	○ 수형자, 구인업체 등 수용자 중심의 취업· 창업 지원 정책 추진 및 유관기관 등 외부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 활성화로 취업· 창업 지원 내실화 추진	무	직 업 훈 련 과
1. 18.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통합운영지침 개정 시달	○ 외국인 유형별 상이한 교육시간을 표준화 ○ 민간 운영기관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보망 사용권한 부여	기	이 민 통 합 과
1. 20.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심사 관련 지시	○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자녀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시 중국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국가의 국민은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 감정결과서를 제출받아 심사	기	체 류 관 리 과
1. 26.	안전등급 미흡 시설물 긴급 보수·보강 지시	○ 안전등급이 미흡한 교정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 방안 시달	무	복 지 과
1. 27.	감염병 관리 철저 지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관리방안 시달	무	의 료 과
2. 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류민원 혼잡 해소 대책 송부	○ 만성적인 민원창구 혼잡 해소를 위해 방문예약제 확대,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체류민원 서류 간소화, 직원 친절도 제고 등 대책 공지	기	체 류 관 리 과
2. 5.	교정시설 수용생활 환경 개선 추진 계획 시달	○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믿음의 법치실현, 보건위생 증진 및 인권보호 계획 시달	무	복 지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 신 처	비 고
2. 15.	체류민원 혼잡해소를 위한 유학생 관리방안 지시	○ 신학기 개학시기(3월, 9월) 민원혼잡 해소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신청 시 온라인 또는 단체 접수만 허용	기	체 류 관 리 과
2. 15.	201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시달	○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자의 고충해소, 의무적 참여 대상자 명시 ○ 체류자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분화	기	이 민 통 합 과
2. 16.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철저 지시	○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및 환자관리방안 시달	무	의 료 과
2. 16.	지카바이러스 방지 관련 입국심사 강화 지시	○ 입국심사 중 감염 유사증상을 보이는 사람 또는 남미 등 발병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로서 검역을 받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관할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도록 안내	기	출 입 국 심 사 과
2. 16.	제9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지자체 등 주관의 이민자 관련 각종 행사·축제를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주간'과 연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행사를 기획·개발하도록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2. 23.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관련 업무 지시	○ 일반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관련 자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규정 신설 업무 지시	기	국 적 과
3. 2.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시행	○ 난치성 결핵의 국내 유입방지 및 체류 관리를 위해 결핵고위험국가(18개) 국민 등이 장기사증 등 민원신청 시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화	기 외교부 질병 관리본부	체 류 관 리 과
3. 21.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개정 시달	○ 우리나라 경유 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선진 5개국(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입국사증 소지자 가운데 일본 개별사증 소지자 제외(시행일 : '16. 5. 1.)	기	출 입 국 심 사 과
3. 23.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 시행	○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는 조치 시행에 따라 소속기관에 관련 세부사항 지시	기	이 민 조 사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 신 처	비 고
3. 24.	사증발급 심사강화 지시	○ 이슬람무장세력 등 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테러지원국가 출신 및 테러지원국가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여행자에 대한 사증심사 강화	기 외교부	체 류 관 리 과
4. 5.	5월 '가정의 달' 관련 가족 관계 회복프로그램 추진 지시	○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 접견 적극 실시 ○ 수형자 가족을 위한 교정시설 참관 실시	무	사 회 복 귀 과
4. 5.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심사 철저 지시	○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의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 실시	기	이 민 통 합 과
4. 6.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실시 지시	○ 관련 규정에 따른 소방 훈련 실시 및 소방 안전 종합 점검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4.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시	○ 휴식 및 식사 시간 관련 운영지침 준수 ○ 출결관리 철저 및 실태점검 등 실시 ○ 교육 시 부적절한 내용의 예시나 표현 사용 금지	기	이 민 통 합 과
4. 21.	재외동포(F-4)의 체류지 입증서류 간소화 지시	○ 재외동포(F-4) 자격자 중 주된 체류지가 해외인 경우 체류기간연장 시 체류지입증 서류 제출 면제	기	체 류 관 리 과
5. 2.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시달	○ 주말반 1일 수업시간 제한 완화(8시간 수업 허용) ○ 주말반 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제한 완화	기	이 민 통 합 과
5. 9.	현장 학습 관련 안전사고 예방 지시	○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금지 및 감독 ○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청결 교육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교육	기	이 민 통 합 과
5. 24.	하절기 보호외국인 위생 등 안전관리 철저 지시	○ 하절기 식중독, 감염병 및 장마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 위생관리 철저, 감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보호시설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기	이 민 조 사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 신 처	비 고
5. 25.	여름철 식중독 예방활동 철저 지시	○ 여름철 빈번한 식중독 예방 계획과 위생적인 급식 제공 방안 시달	무	복 지 과
6. 3.	간이귀화 규정 적용 대상 및 기간 산정 시 업무처리 방안 시달	○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대상자 범위 및 국내 거주기간 관련 통일된 기준 정립	기	국 적 과
6. 20.	하계성수기 특별 출입국 심사대책 수립 및 보고 지시	○ 하계 성수기 기간 출입국자 증가에 따른 심사 지체, 대기시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출입국심사대책 수립 지시	기	출 입 국 심 사 과
7. 4.	다문화가정 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국민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지시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국민심사대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대상자 에게 적극 홍보	기	출 입 국 심 사 과
7. 5.	입국불허 외국인에 대한 송환절차 지시	○ 입국불허 외국인 중 송환 거부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강제퇴거 명령, 자발적 송환 희망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송환 집행	기	출 입 국 심 사 과
7. 19.	영주(F-5)자격 변경허가 관련 심사 지시	○ 영주자격 변경허가 심사적체 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신속한 영주권 민원처리 독려	기	체 류 관 리 과
8. 5.	폭염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운영 관련 지시	○ 연일 전국적인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사전평가 시행 시 냉방시설 최대한 가동, 비상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 연락망 구축 등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8. 29.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 철저 지시	○ 유행성 눈병 환자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및 환자관리방안 시달	무	의 료 과
9. 13.	재정착 난민 대상 사전 평가 실시 지시	○ 재정착 난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자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 사전평가 실시	기	이 민 통 합 과
9. 19.	재외동포(F-4) 국내 거소 신고자 지문 및 얼굴정보 등 수집 지시	○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개정으로 9. 30.부터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문 등 정보 수집 의무화	기	체 류 관 리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 신 처	비 고
9. 23.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귀화 신청 수수료 면제 지시	○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피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동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귀화 신청 수수료 면제 지시	기	국 적 과
9. 27.	위기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 서비스 전면시행계획 시달	○ 이혼 위기, 자녀양육 곤란 등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긴급전화사용, 가족접견 허가, 전문가 상담 알선 등 필요한 지원 시행	무	사 회 복 귀 과
9. 29.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 시달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대상 확대 및 인천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 자격과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자격 일치	기	출 입 국 심 사 과
10. 11.	단속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적법절차 준수 철저	○ 불법체류자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	기	이 민 조 사 과
10. 20.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지시	○ '16.9.30.부터 체류지변경신고, 사실증명 등의 위임사무 처리기관이 읍·면·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차질 없이 위임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0. 28.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관련 심사 철저 지시	○ '16.11.1.부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과 관련하여 출국승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사전안내 철저	기	출 입 국 심 사 과
10. 31.	사무소별 핫라인 담당자 전화응대 철저 지시	○ 1345콜센터와 사무소별 핫라인 담당자 간 전화연결이 어려워 민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자 교육 등 신속한 전화응대 독려	기	체 류 관 리 과
11. 4.	2017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지시	○ 소속기관별로 운영기관 모집 홍보 및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심사 등 실시 후 운영기관 선정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수 신 처	비 고
11. 11.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적정한 소송지휘 지시	○ 적절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행정청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 행사를 지시	소송 수행 검찰청	국 가 송 무 과
11. 16.	자립형교도작업 개선계획 시달	○ 자립형 교도작업 도입 취지에 충실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개선방안 시달	무	직 업 훈 련 과
11. 17.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시달	○ 점진적 훈련 인원 확대 및 출소 후 취업과 연계 가능한 직업훈련 운영방안 시달	무	직 업 훈 련 과
12.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사증· 체류지침 제정 알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절차 간소화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지침 시행일 : 2017. 1. 9.)	기 외교부 평창조직위	체 류 관 리 과

Ⅲ. 장관 연설문

연설문 목록

- 2016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 믿음의 법치 학술대회 축하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법무부·프로농구연맹 업무 협약식
- 제26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 공익신탁 증서 전달식
- 제53회 법의 날 기념사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개회사
-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제9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사
- 법사랑 서포터스 수료·위촉식
- 마을변호사 정책현장 방문
-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
-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농구장 기증식·농구단 출범식
- 콘텐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문체부 MOU 체결
-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출간식
- 부산솔로몬로파크 개청식
-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 제27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이전 개청식
- 여주교도소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
- 2016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축하
- 제5회 아시아 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행사
- 제3회 범죄피해자를 돕는 걷기대회 다령 행사
- 제10회 한국법률가 대회
- 제71주년 교정의 날
-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 제51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임사
- 2016 올해의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식
- 2016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 2016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 법무부 블로거기자 해단식, 위촉식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개소식

○ 2016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I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II

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 국가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된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세계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의 결과, ‘G20
구조개혁 모범국가’로 선정되었고, 국가
신용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법무·검찰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 심화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의미 있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배려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준법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정 분야도 집중인성교육을 전면적
으로 실시하고, ‘스마트폰 화상 점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어우러져 ‘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며, 지금
까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II

법무가족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려운 고비마다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는 관행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힘차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서 점차 뒤쳐질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은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이득을 취해온 모든 불법을 엄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재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조그마한 빈틈도 우리의 헌법가치를 지켜내는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나 세력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불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건은 확립된 기준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벌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을 동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부패인식 지수가 여전히 낮고, 최근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거악 척결에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믿음을 확산

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난 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성 대상 강력 범죄와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자를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대응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또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 안전지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형자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미래를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합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정비 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확충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범죄 피해자지원 서비스도 계속 확대해 나갑시다.

최근에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부터 “취재를 하면서 법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습니다. 국민이 법의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알리고,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자주 찾아가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있어 어제보다 향상된 오늘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도록 합시다.

무릇 청렴한 공직자라면 공과 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적인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일상 업무 속에서도 도전적인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서로 돕고 응원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V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결국 더 위대한 성공을 위한 비밀스러운 발판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법치’를 뿌리내리려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올해는 ‘원숭이’ 해 중에서도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붉은 원숭이’는 지혜의 상징이면서 또한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열정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가면 장애가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초석인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 갑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4.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공감하고, 협업을 약속해주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성수 인천광역시 부시장님, 이흥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경로당을 기꺼이 내주신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곳 만석동은 소설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부터 정미소와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이 지친 몸을 누이는 숙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난민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경제 개발기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낡은 환경 속에 대부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만 남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가로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하나하나 밝게 비추듯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에 대한 세심한 법률적 도움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활기찬 마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행복한 팽이부리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세계적인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Hundert Wasser)는 “나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 함께 꿈을 꾸면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공감할 때 함께 꿈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터전이 함께 꿈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IV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3.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믿음의 법치 학술대회 축하

I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학생 여러분을 마주하고 보니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지 않고 마치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선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경연대회를 준비한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윤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I

참가자 여러분!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세상은 구성원들 사이의 수많은 약속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하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믿음, 법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국민이 믿고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안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III

학생 여러분!

‘법은 우리들의 보호자이다’, ‘법은 작은 사람들을 위함이다’, ‘법은 나를 이끌어주는 반석이다’. 작년에 열린 「법무부 29초 영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의 의미입니다.

오늘 대회가, 참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선에서도 좋은 법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4.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I

친애하는 교정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은 겨울잠을 자던 생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활기찬 출발을 시작하는 3월의 따스한 봄날에 교정기관장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국 교정

기관장 회의입니다.

지난 해 업무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 운영 방침과 법무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아울러 교정행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I

교정기관장 여러분!

작년 한 해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를 근절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려 노력하였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공익신탁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집중인성교육과 개별 처우의 전면 시행으로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였고,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 선별·관리를 위한 분류 센터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직업훈련과정 개선과 취업지원 강화를 통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도 주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수용자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접견실 등에서 좀 더 편안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격진료시스템 확대 운영과 4개 지방청별 정신보건센터 구축 완료 등 지난해 교정행정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Ⅲ

교정기관장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 국제유가하락과 금융시장불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과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교정기관장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돌아올 우리의 이웃입니다.

출소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가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도 유지·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은 수용생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삶의 기반입니다.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관계가 해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실질적 교정교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모토로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집중인성교육 수료자의 정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범률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집중인성교육 등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실질적 교정교화 프로그램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적극 개발하여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재범 방지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과 원칙에 의한 교정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로서 국민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부정부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형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의 실천만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만 육천 명 교정조직의 화합과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은 전통적으로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 아래 인화와 단결의 끈끈한 조직문화를 보여 왔습니다.

이런 조직의 모습은 수형자 교정교화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한 결과라 생각

합니다.

본부와 일선 그리고 상하 직원 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교정조직이 더욱 공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근무환경과 직원복지 개선으로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교정기관장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수형자 교정교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교정사고 예방과 직원복무기강 확립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전제이자 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의가 교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장관으로서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11.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법무부·프로농구연맹 업무협약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농구 6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챔피언 결정전을 앞 둔 뜻깊은 날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클린 스포츠 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같이해 주신 김영기 총재님을 비롯한 프로농구연맹 임원 여러분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배려, 법질서 문화 확산을 위해 흔쾌히 홍보대사를 수락해 주신 추송균 감독님, 양동근, 허웅 선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프로농구는 1997년, ‘영원한 승부, 뜨거운 감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이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 통합의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클린바스켓센터’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프로농구연맹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구인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농구는 구기 종목 중에서도 경기 진행이 빠르고, 몸싸움 등 신체접촉도 많은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112쪽 50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경기규칙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칙은 경기를 원활히 진행시키고, 흥미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경기가 엉망이 되고 정정당당이라는 스포츠의 대원칙이 흔들리며, 경기의 흥미도 떨어지게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질서가 지켜져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가 되고, 국가도 발전하게 됩니다.

III

앞으로 법무부는 선수와 심판, 구단 관계자들에 대한 법교육과 경기장 내의

에서의 캠페인 등을 통해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믿음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농구연맹도 취약계층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고, 법질서 존중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실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이 손을 맞잡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오늘의 다짐이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IV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기 총재님과 프로농구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17.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26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5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공익법무관들은 법률구조와 국가송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과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여러분은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공익법무관 여러분 !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국민 신뢰에 기초한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송무 일선과 법률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II

첫째,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송무는 위헌정당해산심판, 과거사 소송, 국고손실 환수소송, 세월호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인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가송무 업무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한 헌법가치를 항상 업무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적인 송무 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적 법률자문 활동에도 역점을 두어 법치행정을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데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범죄로 인한 고통이 더욱 가중됩니다.

법은 목욕탕같이 따뜻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법의 문턱을 낮추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준수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이자 병역을 대체하여 공공의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의무복무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공익법무관들의 비행이 물의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공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한 층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IV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

대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높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사이사이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습득한 법률지식만으로 해결해 내기 어려운 사건들도 종종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 나가면서 법조인으로서의 마디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말은 바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다시 한 번 공익법무관 임용을 축하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5.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걸음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률, 의료,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들어선 봄기운처럼, 이민자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지도 어느새 10년이 흘렀고, 올해는 총 인구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민자는 심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테러 의심자가 적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민과 이민자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갓 발을 들여놓은 초기 이민자를 위해서는 체류자격별로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체류 이민자를 위해서는 전국 300개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민자 네트워크’와 ‘자원 봉사자’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서 국민의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책도 이민자가 국민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도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민자들이 타지에서 삶의 터전을 알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법무부 외국인정책의 비전이 전국 각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아낌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달 앞으로 찾아온 ‘세계인의 날’을 위해 각 지역에서 기념행사를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8.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김현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위원직을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제5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제6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2005년에 발족한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활발한 심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문제,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문제, 학대아동 보호문제 등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법무부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정책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11.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공익신탁 증서 전달식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님,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조균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개인 차원의 해법을 넘어 국가와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범죄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무관심 속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등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보호기금의 한계 등의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입니다.

III

공익신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기부하는 “스마일 공익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지원하는 대상자들도 여러 이유로 지원이 어려웠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대 피해자 등 총 3명에게 향후 1년간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도 “스마일 공익신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이 웃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Ⅳ

끝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0.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53회 법의 날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법의 존엄성과 ‘법의 지배’가 지니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제53회 법의 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 깊은 날을 맞아,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우리나라는 해방 후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기간에 걸친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의나 적법 절차 보다는 표면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는 성숙되지 않은 시민 의식과 부적절한 관행으로 이어져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는 법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선진 대한민국의 완성은 기약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자, 사회의 안전판인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에 진정한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이에 법무 · 검찰은 ‘믿음의 법치’ 구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켜낸 헌법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유지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엄단하여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구조적 부정부패, 공적비리를 척결하고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이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듯한 울타리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확대 등 법률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법이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따듯한 엄마 품 같은 역할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통해 국민의 행복이 더욱 증진된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법이 국민들의 분쟁과 갈등의 해소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한층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IV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국민 누구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준법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법조인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법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 함께 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법’과 ‘정의’는 같은 연원을 가진 단어로서 동일한 것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을 위해 ‘법이 정의롭게’ 집행될 때 국민은 ‘법’을 신뢰하고, ‘법’은 권위를 얻으며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살아 숨쉬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법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 진정한 선진 법치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V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아름다운 봄꽃처럼 행복이 만개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5.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종태 센터장님, SK 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 부사장님, 그리고 벤처기업 대표님들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한 창조경제를 일으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중소기업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벤처·중소기업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담당관을 파견하여, 올해 3월까지 1년간 1892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위하여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현재 103개 기업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벤처·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대전지방검찰청을 특허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였고, 금년에는 특허수사 자문관을 신규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벤처·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법률지원단 여러분의 도움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도 벤처·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며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 4. 29.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개최사

I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에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UNCITRAL 아태사무소 주아우히베이루 소장님, HccH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님,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님과 국제거래법학회 김갑유회장님과 IBA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UNCITRAL 아태사무소 운영과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천시 전성수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II

올해는 UNCITRAL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UNCITRAL은 국제상거래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거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반세기 동안 UNCITRAL이 이룬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법의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것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III

이번 포럼은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와 교육자가 함께 모여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물품매매,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법교육 등 무역 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IV

대한민국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16.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안양교도소 직원 및 경기재난안전본부 항공대, 안양소방서, 동안경찰서 등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재난관리 매뉴얼 제정, 법무시설 재난안전점검,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수용거실 내 화재감지기 설치 등 시설 안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재난사고에 취약하고,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숙달 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반복 실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의 합동훈련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정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제 상황에 맞춘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통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철 국회의원님, 이필운 안양시장님 등 유관 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양교도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18.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9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사

I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나경원 의원님,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을 비롯하여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국적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세계인이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II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은 지난 2007년에 기념일로 제정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이었으나, 10년이 흐른 지금은 두 배로 늘어나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사회통합 등 세계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 받고,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Ⅲ

정부는,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정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든든한 믿음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한국을 방문할 때 편히 오갈 수 있도록, 일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동 출입국심사를 모든 등록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체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를 확대 시행 하여 체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우수인재의 영주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기능인력과 동포의 장기체류 요건도 완화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 지원 정책을 시행 하겠습니다.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든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한국의 기초 질서와 체류 자격별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의 초기적응을 돕겠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경제 교육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스스로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이민자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착난민 제도를 통해 어려운 처지의 난민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IV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200개 국가, 200만 세계인과 함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선물 받은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창조와 혁신이 새 시대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지금,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씨앗을 창조와 혁신으로 꽃피우고, 세계인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과 배려라는 양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의 주역이 되는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20.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법사랑 서포터스 수료·위촉식

I

법사랑 서포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초록의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계절입니다.

활력 넘치고, 열정 가득한 법사랑 서포터스 여러분과 마주하니 젊음의 향기가 더욱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년 간 법질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8기 서포터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9기 서포터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I

8기 서포터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준법문화 확산과 믿음의 법치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준법 캠페인, 벽화 그리기, 우범지역 실태파악 및 환경 개선 건의, 탈북·다문화 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뜻 깊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확립하고, 준법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Ⅲ

9기 서포터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준법의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준법 수준은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 법교육 사업,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지혜가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심의 법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 합니다.

Ⅵ

서포터스 여러분!

그리스 후기 희극작가인 메난드로스는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명약, 그것은 진심에서 오는 배려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어린 배려가 행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V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31.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마을변호사 정책현장 방문

I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그 동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마을변호사들이 경기도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염태영 수원

시장님, 정찬민 용인시장님, 채인석 화성시장님, 곽상욱 오산시장님,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법을 모르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1,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지금은 전국 모든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들은 읍면 현장까지 먼 길을 달려 주민들과 직접 상담하기도 했고, 사소한 다툼부터 심각한 분쟁까지 원만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마을 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가지며 생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마을변호사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III

작년 9월 전라북도 지역에서 최초로

지방변호사회, 검찰청, 지자체가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 후, 많은 지역 변호사들이 참여해주었고, 실제 상담 사례, 분쟁 해결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지와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과 함께 하는 오늘 업무협약은 경기도민들의 법률복지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IV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이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옛말처럼, 청년변호사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경험을 쌓아나간다면,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법무부에서 개최한 29초 영화제에서 ‘대한민국 법은 우리들의 보호자이다’라는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나를

보호해 주는 법'이라는 법의 참다운 기능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

I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에 올해로 34회를 맞는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님, KBS 한국방송공사 박희성 시청자 본부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오랜 기간 교정현장에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묵묵히 땀 흘려

오신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그리고 따스한 인간애와 희생정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순자(荀子) 권학편(勸學編)에 보면 '적수성연(積水成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연못이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의 노고가 비록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차곡 차곡 채워지고 한데 모여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에게 희망의 바다가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욱 밝혀주는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III

법무부는 이러한 교정가족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수용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용자 가족접견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과 감동의 교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용자 접견, 알코올 사범 및 아동학대사범 치료프로그램, 영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형자 교정 교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중간처우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향적인 교정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노력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한결같은 믿음과 정성을 쏟는 교정가족 여러분의 진심이 새 삶을 준비하는 수용자들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자리매김할 때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IV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정행정은 사회방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 형사사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정교화 정책으로 출소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범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믿음의 법치'를 통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V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순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전국의 교정가족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3.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고봉중 • 고등학교(서울소년원) 농구장
기증식 • 농구단 출범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이 빛나고 새로운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클린 스포츠 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함께 하시고, ‘푸르미 농구단’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멋진 경기장을 마련해주신 김영기 총재님을 비롯한 프로농구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여러분 !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명으로 꼽히는 카림-압둘자바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압둘자바는 “간단합니다. 리바운드를 제압하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바운드는 우리 팀이나

상대팀이 슛에 실패해 놓친 공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때 다시 한 번 공격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새로운 기회가 경기를 제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구는 각종 규칙을 지키며 팀워크를 발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농구팀의 일원으로서 정정당당이라는 스포츠 대원칙에 따라 규칙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익혀 ‘진정한 승자’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III

내외 귀빈 여러분 !

앞으로 법무부는 정정당당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통해 법질서 준수에 대한 믿음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법질서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실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IV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도록 협조해주신 김영기 총재님을 비롯한 프로농구 연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2.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콘텐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문체부 MOU 체결

I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이곳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 협업, 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오늘의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김종덕 장관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창조벤처단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입주기업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신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대표께서 계약 관계 같은 기초적인 법률 지식조차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으니, 법률적인 지원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기업들이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법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법무담당관을 파견해서 문화와 법률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 법무부가 보유한 법률지원 인프라와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1년 간 1,800여 건을 법률 자문한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하겠습니다.

Ⅲ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같은 법제도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치열한 정책 현장에서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이 직면한 법적, 제도적인 장벽을 해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양 부처가 힘을 모아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중재를 활성화하고, 분쟁해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교정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을 통해 범죄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Ⅳ

내외 귀빈 여러분, 법무부는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문화콘텐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기업 지원, 스포츠 분쟁 해결, 재범자 사회복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틀을 뛰어넘는 문화와 법률의 협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30.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출간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 파견 1주년의 결과물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가 발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문제 대응이 미흡한 창업·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들이 창업의 최전선인 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 1년 넘게 법률지원을 하고, 그 결과물로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II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신산업의 창출과 ICT 융복합을 통하여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해현경장(解弦更長)’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줄을 풀어서 고쳐 매어야 하듯이 제도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새롭게 개혁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가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기술에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III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해답이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규제를 개혁하고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하여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경제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가며, 법률지원 및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창조경제의 열기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V

현장에서의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담당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출간식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 7. 7.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부산솔로몬로파크 개청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남풍이 그리운 계절 7월에, 대한민국 법교육의 산실로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솔로몬로파크의 개청을 위해 큰 힘을 보태주신 서병수 부산시장님, 전재수 의원님, 박민식 前 의원님, 백종현 부산시의회 의장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님, 이채문 부산지방법변호사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청식을 갖기까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님, 송영수 자녀안심 국민재단 이사장님, 창원지역 법사랑연합회 위원님들,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연합회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내외 귀빈 여러분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광복 이후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저력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그 신뢰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에 대한 존중, ‘법의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이루기 위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을 익히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 개관한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한 해 관람객이 20만명을 넘어 서서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교육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개청하는 부산 솔로몬로파크 역시 부산·영남권에 선진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민주시민 의식과 배려의 정신을 기르는 법교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III

내외 귀빈 여러분 !

영국의 시인 와이스틴 휴 오든(W.H. Auden)은 “법은 사랑처럼(Law Like Love)”이라는 유명한 시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마다 법에 대해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서, 농부들은 절기를 정해주는 태양으로, 성직자들은 설교를 위한 경전으로, 재판관들은 판결을 위한 기준으로 법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은 평소에는 그 존재를 알기 어렵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이므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도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을 통해 사랑처럼 따뜻한 법치 사회,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법치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IV

개청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8.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I

전국의 법사랑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조준희 YTN 사장님,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님,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법문화 확산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 계시는 법사랑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오늘 영예로운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존경하는 법사랑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400여 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5,900여 명의 학생에게 2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1,000여 명의 출소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원 하고, 탈북·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로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III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법사랑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단순한 양적·

물적 성장을 넘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범죄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그 동안 쉽고 재미있는 법교육을 위한 법체험 테마파크 운영,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 지속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이신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 창의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보호,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의 분야에서는 여러분의 파스한 보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하да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봉사를 기대합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만드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도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15.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27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I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첫 해 21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이제는 그 30배인 600명이 넘게 되었고, 업무 영역과 근무 기관도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익법무관들은 국가송무와 법률구조

분야에서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적인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최전선에서도 중요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I

공익법무관 여러분 !

오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송무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인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가송무 업무에 있어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한 헌법가치를 중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인 법치행정을 위해 사전 예방적인 법률 자문도 역점을 두어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준수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이자 병역을 대체하는 의무복무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공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Ⅲ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

지금까지 습득한 법률지식만으로 해결해 내기 어려운 사건들도 종종 접하게 될 것입니다.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 성의지본 재어신독(誠意之本 在於愼獨)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바른 몸가짐으로 매사에 성의를 다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률한 모습을 보니 말은 바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다시 한 번 공익법무관 임용을 축하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25.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I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후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 하기 위하여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들의 애국 정신을 값지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II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여러분의 선조이신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께 선열의 공적에 민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특별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우리 국적을 찾아 드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III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도발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국민은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올바른 안보의식과 역사인식을 갖추는 것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유구한 문화를 세계와 교류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런 나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처럼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도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0.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이전 개청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전 개청식에 참석해주신 이철우 국회의원님, 김장주 경상북도 부지사님,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님, 박보생 김천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김천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구본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 관광의 중심이자 자연과 조화된 삼산이수(三山二水)의 명품도시인 김천혁신도시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전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I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우리나라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은 1942년 사법보호회를 시작으로 70여 년의 기간 동안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며 현재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그동안 숙식제공, 경제원호라는 기초적인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심리상담,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출소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출소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접, 영농, 기계조립 기술교육원을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고용 협력기업’을 발굴하여 연계하였고, 사후관리, 가족관계회복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무보호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내 자원봉사자 여러분, 기업, 유관기관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 또한 출소자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과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II

친애하는 공단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앞으로 공단은 새로운 김천시대를 맞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출소자 사회복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고전인 순자(荀子)의 수신(修身)편에는 ‘양농불위(良農不爲) 수한불경(水旱不耰)’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밭을 갈지 않는 법이 없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민심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8.

법무부 장관 김 현 응

○ 여주교도소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2016년 을지연습 합동 방호 훈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주교도소 직원들과 육군 55사단, 여주시청,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전 63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북한은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예측

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에 국가중요시설인 교정기관에서
유사시 예상되는 적의 도발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고, 교정기관의 안정적인 수용
관리가 가능 하도록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합동 훈련을 계기로 유관
기관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시 비상대비능력의 향상과 국가 안보
역량의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호 육군55사단장님, 양복완 경기도
부지사님, 원경희 여주시장님 등 여러
유관 기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22.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

I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중재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중재제도가 우리나라 산업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호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님,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지성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김재원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실장님, 각 세션의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국내·외 전문가
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눈부신 속도로 국제화, 다원화되고 있고, 분쟁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재는 기존 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현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중재산업이 활성화되어 다수의 국제 중재 사건이 유치될 경우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중재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기업법제 및 분쟁 해결 제도를 갖추고 있고,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유능한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세계 유수의 국내·외 기업들이 각축하는 세계 11위 규모의 내수 시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III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되어, 지난 50년간 국내 유일의 상설 상사 중재기관으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6년 120달러에서 2015년 2만8,400달러로 증가할 만큼 성장하였지만,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재산업의 가치 및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8일 중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금년부터 대한상사 중재원에 국제중재 사건 유치 및 국제 홍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재 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 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법률서비스 기관으로서 세계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IV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재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중재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국제중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분쟁 사건에 대한 원스톱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중재센터를 건립하는 등 물적 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후발 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나 스포츠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재를 육성하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콘퍼런스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29.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2016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I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 보호기관장 여러분!

‘준법문화 확산’에서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보호기관의 영역은 어느 때보다 넓어지고 있고, 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보호기관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

보호기관장 여러분!

지금까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특정범죄자 관리, 사회

봉사 국민공모제, 소년원 출원생 희망 드림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관리센터 출범,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소년원·치료감호소 시설현대화사업,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등 많은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I

전국의 보호기관장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평소 범죄예방 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생각해온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서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개포동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강력범죄는 단 한 건의 사건만으로도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

합니다.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및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용·관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료감호소의 인적·물적 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각 지역 국립정신병원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는 경미 범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16년 12월 시행되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문화의 확산은 법교육 및 법질서 실천 운동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 법문화를 구현함으로써 민음의 법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특히, 보호관찰소는 2016년 7월부터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법문화진흥센터'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지역 셉테드 사업 지원,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사랑하는 보호기관장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보호기관장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축사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개설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하창우 협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변협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청년 법조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I

남북이 통일되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인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독일의 통일 직후인 1992년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북한의 법제와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남북 법제의 통합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과 통일법 전문가의 저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III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통일 이후의 통합은 '법률의 통합'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의 관심과 준비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통일과정의 법적 혼란을 줄이고 통합에 수반되는 법적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첫 번째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난 2년간 230여 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였고, 올해에도 60여 명의 법조인들이 적극 참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열 분께서 '북한의 사법제도',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 '북한의 시장화' 등에 대해 훌륭한 강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IV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여러분이 통일법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7.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5회 아시아 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사

I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은 10월 역동적인 도시

서울에서 ‘제5회 아시아 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컨퍼런스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UNCITRAL 아태사무소 주아우히베이루 소장님,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님, ICC 국제중재재판소 알렉시 무어 소장님, 그리고 서울국제중재센터 신희택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I

올해는 UNCITRAL과 대한상사중재원이 함께 창립 50주년을 맞는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그동안 UNCITRAL은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 거래 활성화 및 분쟁 해결에 지대하게 공헌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정(法定) 상설 중재기관으로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두 기관이 이룬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II

나아가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50년 동안 국제중재 분야에서 일궈낸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중재의 효율성과 정당성, 중재의 전문가 활용 방안, 중재 언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간의 열띤 논의가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ADR의 다음 반세기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을 그려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IV

대한민국 법무부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2.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행사

I

존경하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0년이면 ‘회갑’을 맞이한 것인데, 회갑은 ‘자신이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빛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동안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평생을 헌신하신 곽배희 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II

잘 아시다시피, 고(故) 이태영 선생님께서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이념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계승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이들의 편에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과 ‘호주제’ 폐지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의 전환’을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350만여 건의 무료 법률상담과 1만여 건의 소송구조를 통해,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률계몽교육’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그 가정의 행복찾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곽배희 소장님, 고(故)이태영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III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가치 실현을 위해, 여성권의 회복과 가정문화 발전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면도 있고, 보완·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함은 물론,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률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이 축적된 경험과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예산과 인력 등 가능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V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한 애정과 신념으로 출발하였던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신념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2.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3회 다링 행사

I

화창한 가을 주말, 바쁜 일정에도 범죄 피해자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제3회 다링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갑식 범죄 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남산은 예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한양의 안산(案山)'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범죄피해자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II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고,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법률적 지원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적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민간의 노력과 역량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애쓰고 계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직원, 그리고 삼성에스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III

'다링(DaRing)'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아, 소외된 피해자의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걸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함께 웃는 내일을 희망'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IV

끝으로 오늘 행사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산의 가을 정취 속에서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5.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10회 한국 법률가 대회

I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가들이 모여 법학과 실무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인 한국법률가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박병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가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법학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동아시아는 고대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법(法)이라는 단어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보듯이 각국의 법률 분야 교류도 오랜 기간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 동아시아는 북핵, 지역 분쟁 등 안보 문제와 글로벌 경제 주도권 경쟁 등으로 그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 테러, 질병, 난민 등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 공통의 과제들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잠재된 긴장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를 통한 공동의 번영을 열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법의 조화로운 발전은 상생과 협력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명한 동아시아 법률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법의 조화와 통일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는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신과 전자 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형사사법정보화, 전자소송, 전자어음, 전자공증 같은 법률 제도 전자화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 분야 순위에서 매년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전수해 줄 만큼 민·상사 법제, 분쟁해결 시스템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 하기에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니다.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법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국가제도약을 위해서는 그 초석인 법질서 확립도 시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사회,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은 우리 법률가들에게 인식과 발상의 대대적인 전환과 또 한 번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몇몇 법률가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가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 역량을 모두 모아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부도 법률가들이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발맞춰 나가고, 사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V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이번 법률가대회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법률가의 사명을 되새겨 보고, 미래 사회 법률가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0.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71주년 교정의 날

I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교정의 날입니다.

뜻깊고 즐거운 날을 맞이하여 교정 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의 교정이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전·현직 교정공무원 여러분과 교정 참여인사 여러분께도 경의를 포함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 해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I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법선거와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였습니다.

4대 사회악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국민들의 범죄불안을 해소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집중인성교육과 수형자 개별처우의 전면 실시로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였고, 노동시장에서 선호하는 직업훈련 실시와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로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도 주었습니다.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여 국민 편의를 크게 증진하였으며, 가석방 제도의 공정한 운영으로 형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믿음의 법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Ⅲ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그동안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 부진과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경제 범죄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정시설 수용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또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대책을 시행하여 범죄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근무를 통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수형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직원만이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고, 국민도 행복

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 행복한 교정을 통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갑시다.

IV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7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신념으로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통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교정참여인사여러분께서도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교정가족 및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8.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2016년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공모전 주제가 “성폭력 처벌은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는 따뜻하게”였는데,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기 계신 수상자 분들은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호소력 있는 그림으로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폭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모전이,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 11. 10.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51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I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온 세상을 수놓은 가을, 법치의 요람인 이곳 법무연수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의 큰 잔치인 「제51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 경기단체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법무연수원과 교정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그 동안 본연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무도를 연마하여,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단 여러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1회 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문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불굴의 상무정신과 함께 패어플레이를 통해 교정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교정 조직이 보여주고 있는 불굴의 상무정신과 끈끈한 동료애는 교도관 무도대회의 덕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이 같은 훌륭한 교정문화를 공유하고 교정발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III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그동안 교정행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수형자를 단순히 가두어 두는 소극적 형 집행에서 벗어나 ‘사람을 바꾸는’ 적극적 교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집중인성교육과 개별처우 등 수형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경비시스템과 인터넷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IT기술을 교정행정에 접목하여 계호인력을 절감하고 국민편의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저는 교정행정 분야에서 이뤄낸 발전과 성과가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최근에는 심리치료를 신설하여 중독성·습벽성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용자 정신·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며,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IV

오늘의 주인공이신 선수단 여러분!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단지 승패만을 결정짓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출전하는 선수와 소속 기관의 선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1.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I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막바지에 역사가 살아 숨쉬는 빗고을 광주에서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병호 광주광역시 부시장님, 조세철 광주광역시 시의회 부의장님, 권삼 31사단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신축과 이전 개청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교정시설들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 분산형 구조로 건축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인 지열을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 역시 교정시설 건축에 있어 우리의 새로운 의지가 반영되어 신축되었습니다.

광주교도소는 1971년 7월 동명동에서 문흥동으로 이전하였고, 2015년 10월 19일 수용인원 1,500명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추어 삼각동으로 다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광주교도소 신축 이전으로 수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용자 인권보호·처우 개선과 함께 수형자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신축된 광주교도소는 지역사회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였기에 건축 과정부터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으며, 과학적인 수용관리 시스템, 무인 전자경비시스템, 무인 접견관리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의 과학화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첨단 교정시설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교도소는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광주교도소는 교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Ⅳ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법무부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는데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지만, 교정시설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형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돕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 우리 부의 교정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교도소 신축 과정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청식이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8.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갑식 범죄 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구정희 부산 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민식 前 의원님, 백종현 부산광역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올해로 어느덧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범죄피해자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아픔을 나누고 그들과 동행하는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문화 항구 도시 부산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부산이 대양과 대륙을 이어주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 해양도시인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Ⅲ

내외 귀빈 여러분!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고,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종래 형사사범은 범죄자의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 전통적 형사 사범의 무대 뒤편에 머물러 있던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안정적인 틀을 갖추었고, 명실 공히 형사사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Ⅳ

내외 귀빈 여러분

법무부는 그 동안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인권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치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와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누구든지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이 공동체로서 함께 동행 할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열정과 경륜을 가진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V

얼마 전 ‘동기 없는 범죄’로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부터 감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에 시달리던 그 분은 따뜻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의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사랑은,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주는 사람도, 모두 치유 받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이 홀로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따뜻한 사랑 안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신념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법무부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VI

마지막으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사랑을 전하시는 전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가족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와 부산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5.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김현응 법무부장관 이임사

친애하는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장관으로서 1년 5개월가량 봉직한 법무부를 떠납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잘 알아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되어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직을 결심하기 까지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옳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Ⅲ

전국의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 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히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법무·검찰은 국가 존립의 근간인 ‘법질서 확립’을 이루어 낼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굳게 지키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각계의

요청이 빈발하는 등 쉽게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세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 그 동안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법무·검찰에게 주어진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오직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공정하고 바르게 법집행을 해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1990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27년간 공직생활의 소중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 동안 경향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멋진 사람들이 모여 근무하는 이곳 법무·검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정진과 성공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6. 11. 29.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2016 올해의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식

I

사랑하는 보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원 교사와 보호관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보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의 교사상」과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식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II

먼저, 오늘 「올해의 교사」와 「비전 보호관찰인」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은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I

보호가족 여러분!

법무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치료명령제도 도입,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법 교육 확대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들은 여러분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소년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뒷받침될 때 보다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소년원생,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당연히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따뜻해지고 살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어린 노력과 헌신이 대상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호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겠습니다.

IV

친애하는 보호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자신과 주변을 돌아 」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8.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2016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국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여러분
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경향 각지와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내·외 업무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활발한
토의를 거쳐 내실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본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
테러방지와 승객 안전을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완비하고, 내·외국
민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대상 확대와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비자영사업무에 있어서도 비자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 출입국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준 결과
입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여러분!
최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의 흔들림이나
업무 공백 없이 충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첫째, 국경관리 강화와 체류질서 확립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현 시국을 악용한 국제테러분자 등의 입국 가능성에 대비하여 입국규제자에 대한 검색과 여권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등 범법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연 초에 발생한 공항만 밀입국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보안업무를 촘촘히 살피고,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경계 근무도 한층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근래에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법무부 공무원의 소홀한 업무처리와 불법적인 행위가 몇 차례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직무태만, 복무기강 해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한 현재의 국정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 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대한 관리감독 등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직장 문화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공직사회가 침체되어 있는 만큼, 항상 말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에게 아낌 없는 격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간부들이 솔선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더 많이 소통하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혼란한 정국 까지 겹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이웃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여러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든 직원이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발휘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업무에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는 본부와 일선이 상호 교감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외공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5.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2016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오늘, 2016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올 한 해, 초일류 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민음의 법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민음의 법치’는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 해소와 더불어,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항상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동안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건관계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늘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헌신하였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이 사회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소년보호시설의 소년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문신제거 기술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재범방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정성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법치에 대한 믿음을 불어일으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분발과 헌신이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가족 분들께서도 수상자들이 모범적인 법무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6.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법무부 블로그기자 해단식,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이창재입니다.

올 한 해, 법무정책 홍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8기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기 기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 대회의장은 8기 기자들이 법무부 블로그기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곳입니다.

1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모인 지금, 아마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블로그기자로서의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시간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끝까지 성실하게 활동하여 오늘 우수활동증명서를 받은 24명의 기자는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 덕분에 법무부의 정책홍보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쉽게 소통하는 방법, 국민을 향해 한 발 나아가는 방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여러분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과 다음 우수블로그 6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정책은 그 특성 상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범죄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무부의 기본정책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무정책이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로,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위촉되는 9기 기자들도 법무부 블로그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책 홍보에 힘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이 곳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더 많은 성과와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8기 기자 여러분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9기 기자들의 위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개소식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서울서부 스마일센터를 개소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공상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장님,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님, 박홍섭 마포구청장님과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손상을 입은 분들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입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아홉 개의 스마일센터가 설치되었고, 오늘 열 번째로 서울서부 스마일센터가 개소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듯, 서울서부 스마일센터가 열 번째로 개소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지역에 하나의 스마일센터만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마포에 서울서부스마일 센터가 개소되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I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고, 그 동안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고, 10개의 스마일센터가 설치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12년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근무할 때,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어, 지금의 발전된 모습에 소회가 남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전주 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일센터에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였고, 또 다른 분은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니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범죄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소를 되찾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IV

법무부는 올해 수원과 서울서부 스마일 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까지 18개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지역 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범죄는 예고 없이, 어느 날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지 운이 없는 경우’로 치부하여서는 안되며,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안전한 울타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의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V

오늘 서울서부 스마일센터의 개소를 위해 애써주신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 연합회장님과 임기영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님,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전해지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8.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창 재

Ⅳ.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權)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濤)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璉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曹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濤)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裴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植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翺起)	1979. 12. 14. ~ 1980. 5. 21.	
29~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37	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熺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喜)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1988~)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權)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植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중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鉉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峻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정무차관 사무차관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璉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裴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환(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垌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선(金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환(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珪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裴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珪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005. 5. 2. 정책홍보 관리실로 개편 2008. 2. 29. 기획조정실로 개편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희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曹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옥(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景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 법무실장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법무국 신설
2	대	김민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3	대	홍진기(洪璉基)	1950. 4. 1. ~ 1954. 2. 17.	1967. 4. 10. 법무실로 개편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炯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9	대	김중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峻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 검찰국장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신설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환(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裴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鉉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喜)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중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 보호국장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신설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	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僣)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중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桃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峻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 신설
2	대	김중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방직
3	대	조영곤(曹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욱(奉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검 사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방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방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중(張仁鍾)	2015. 3. 16. ~	개방직

○ 교정국장

대	순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행정국 신설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1962. 5. 21. 교정국으로 개편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14	대	김윤근(金潤謹)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직무대리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검사장급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일반직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燾)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정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일반직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신설 검사장급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鉉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熺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曹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字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중(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峻)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字鉉)	2016. 5. 23. ~	검사장

V.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2016. 12. 31. 기준)

1. 본 부(5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령일	직 위	성 명	발령일
장 차 관 비 서 관	金賢雄 李昌宰 鄭然喆	2015. 7. 9. 2015. 12. 24. 2015. 8. 31.	비 상 안 전 기 획 관	金晩河	2014. 1. 1.
장 관 정 책 보 좌 관	蔡珍煥 朱慧珍	2015. 8. 17. 2015. 2. 25.	행 정 사 무 관	李康采	2013. 7. 29.
감 찰 관	張仁鍾	2015. 3. 16.	기 획 재 정 담 당 관	李相洵	2016. 1. 1.
감 찰 담 당 관	徐榮敏	2016. 1. 13.	서 기 관	崔相懺	2016. 7. 4.
검 사	金度完	2015. 2. 25.	"	金珍燮	2013. 12. 4.
검 찰 사 무 관	孫尙煜	2016. 1. 27.	행 정 사 무 관	李濬碩	2015. 4. 7.
"	崔鐘必	2013. 7. 29.	"	洪周伶	2014. 7. 21.
"	曹旻鎬	2015. 8. 31.	창 조 행 정 담 당 관	崔理錫	2016. 1. 1.
교 정 관	鄭 鎭	2015. 1. 19.	서 기 관	趙五行	2016. 7. 4.
감 사 담 당 관	文權点	2016. 7. 4.	행 정 사 무 관	韓帝迕	2015. 1. 1.
서 기 관	金鍾官	2016. 1. 1.	"	梁東圭	2016. 11. 30.
"	金政福	2015. 1. 1.	"	朴箱烈	2016. 4. 5.
"	李漢植	2015. 8. 3.	시 설 담 당 관	金鍾泰	2014. 12. 31.
행 정 사 무 관	李東勳	2014. 7. 11.	시 설 서 기 관	曹錄煥	2014. 12. 31.
"	權泰成	2015. 1. 1.	시 설 사 무 관	鄭秉澤	2011. 4. 20.
"	金範映	2015. 1. 1.	"	金昌燮	2015. 8. 3.
"	金英南	2016. 7. 4.	"	金永採	2016. 12. 23.
시 설 사 무 관	裴聖龍	2014. 9. 15.	"	嚴東哲	2014. 11. 12.
운 영 지 원 과 장	柳志重	2016. 7. 4.	공 업 사 무 관	姜東憲	2015. 4. 7.
서 기 관	金洙徹	2015. 1. 1.	"	李亨燮	2014. 11. 12.
행 정 사 무 관	鄭東桓	2014. 7. 21.	정 보 화 담 당 관	姜秉鴻	2014. 11. 12.
"	辛漢憲	2012. 7. 2.	기 술 서 기 관	洪淳玆	2012. 5. 7.
"	李相榮	2015. 4. 7.	"	周琅根	2015. 8. 3.
시 설 사 무 관	林嘆卓	2016. 12. 23.	"	徐仁錫	2016. 1. 1.
대 변 인	金廣洙	2015. 2. 25.	전 산 사 무 관	陳瑀錫	2012. 12. 17.
홍 보 담 당 관	韓正珍	2013. 9. 1.	"	辛秉默	2015. 8. 3.
서기관(일반임기제)	宋基泰	2015. 9. 29.	"	李潤周	2016. 4. 5.
행 정 사 무 관	高嘆錫	2016. 12. 22.	정 책 성 과 관 리 팀 장	姜義坤	2016. 7. 4.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李相雨	2014. 5. 1.	행 정 사 무 관	金에오	2015. 8. 24.
기 획 조 정 실 장	權益煥	2015. 12. 24.	"	金容甲	2016. 5. 24.
정 책 기 획 관	金泰福	2016. 7. 1.	행 복 민 원 센 터 장	金尙權	2013. 4. 1.
검 사	朴恩惠	2016. 8. 31.	시 설 사 무 관	崔海圭	2014. 9. 15.
검 사	宋圭榮	2016. 1. 27.	형 사 사 법 공 통 시 스템 연 단 장	李正洙	2016. 1. 13.
			검 사	鄭普泳	2016. 1. 27.
			전 산 사 무 관	金玩烈	2010. 12. 22.
			"	金奉友	2016. 5. 2.
			보 호 사 무 관	金鎭五	2016. 1. 1.

직 위	성 명	발령일	직 위	성 명	발령일
법무실장	金浩徹	2015. 12. 24.	검사	金倖進	2016. 1. 27.
법무심의관	洪承郁	2016. 1. 13.	행정서기관(일반임기제)	李奎哲	2015. 11. 16.
검사	曹旻佑	2016. 1. 27.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裴權秀	2016. 2. 17.
"	鄭知所	2015. 2. 25.	전문임기제나급	金孝宣	2015. 1. 26.
"	朴良浩	2015. 2. 25.	전문임기제나급	車慶珍	2016. 1. 1.
"	李始侓	2015. 2. 25.	법조인력과장	李榮載	2016. 1. 13.
"	金炫佑	2016. 1. 27.	검사	金丞杰	2015. 8. 27.
검찰사무관	孫柱根	2015. 2. 16.	검찰사무관	尹錫仁	2016. 8. 29.
법무과장	權純汀	2016. 1. 13.	"	安泰星	2016. 8. 29.
검사	金琪勳	2015. 2. 25.	행정사무관	金弘俊	2011. 7. 29.
"	曹英姬	2016. 1. 27.	"	崔永萬	2016. 5. 24.
검찰수사서기관	李仁柱	2016. 2. 22.	"	李昇恒	2015. 4. 7.
검찰사무관	李在浩	2015. 8. 31.	검찰국장	安兌根	2015. 2. 11.
국제법무과장	丘尙燁	2016. 1. 13.	사법연수원부원장	趙垠奭	2015. 12. 24.
검사	盧先均	2014. 2. 5.	검찰과장	李善旭	2015. 2. 25.
"	崔泰銀	2014. 2. 5.	검사	高泌亨	2016. 1. 13.
"	金志彦	2015. 2. 25.	"	任世鎭	2014. 2. 5.
"	蘇正秀	2015. 8. 27.	"	羅夏那	2015. 2. 25.
검찰사무관	丁海燐	2016. 8. 29.	"	羅熙錫	2016. 1. 27.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申殷瑛	2014. 7. 14.	검찰수사서기관	韓生一	2016. 2. 22.
"	柳美里	2014. 11. 17.	"	朴公雨	2015. 8. 31.
"	崔 초	2016. 10. 4.	검찰사무관	金東煜	2015. 2. 16.
국가송무과장	李尙昱	2016. 1. 13.	형사기획과장	朴世鉉	2016. 1. 13.
검사	姜兌勳	2016. 8. 31.	검사	安東建	2016. 1. 27.
"	金恩美	2015. 2. 25.	"	張峻豪	2016. 1. 27.
검찰수사서기관	許喆安	2016. 8. 29.	검찰수사서기관	鄭安鎭	2016. 8. 29.
검찰사무관	金圭河	2015. 8. 31.	검찰사무관	白相洪	2015. 8. 31.
"	金漣仟	2016. 8. 29.	"	丁永運	2016. 2. 22.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柳政旼	2016. 4. 1.	공안기획과장	鄭鎭宇	2016. 1. 13.
통일법무과장	朱祥鎔	2015. 2. 25.	검사	金泰勳	2015. 2. 25.
검사	徐京源	2015. 2. 25.	"	崔洙逢	2016. 1. 27.
"	李泰協	2016. 8. 31.	"	宋奉駿	2015. 8. 31.
"	崔鏞普	2016. 1. 27.	검찰사무관	姜義求	2015. 8. 31.
검찰사무관	鄭圭烈	2014. 2. 24.	"	金光洙	2015. 8. 3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李琬莢	2016. 4. 1.	국제형사과장	李昌洙	2016. 1. 13.
상사법무과장	李鎭琇	2016. 1. 13.	검사	金兌炯	2015. 2. 25.
검사	蔡熹滿	2016. 1. 27.	"	申都旭	2015. 2. 25.

직 위	성 명	발령일	직 위	성 명	발령일
사	金亨遠	2016. 1. 27.	보 호 관 찰 과 장	李炯再	2015. 11. 2.
검 찰 사 무 관	朴蔭雨	2014. 8. 4.	서 기 관	李法虎	2015. 3. 30.
"	朴原伯	2013. 7. 29.	보 호 사 무 관	姜信源	2016. 7. 18.
형 사 법 제 과 장	卞弼建	2016. 1. 13.	"	成奉虎	2015. 8. 31.
검 사	徐孝沅	2015. 2. 25.	"	金求會	2016. 7. 18.
"	金相玟	2015. 2. 25.	"	洪性學	2016. 7. 18.
"	申熙英	2016. 8. 31.	특정범죄자관리과장	李泰源	2015. 11. 2.
검 찰 사 무 관	黃世一	2015. 2. 16.	서 기 관	梁顯圭	2015. 8. 31.
"	尹炳得	2016. 2. 22.	보 호 사 무 관	金秉培	2015. 6. 15.
범 죄 예 방 정 책 국 장	李相虎	2015. 12. 24.	"	閔惠熙	2015. 8. 31.
범 죄 예 방 기 획 과 장	黃秉柱	2016. 1. 13.	"	姜映旭	2016. 1. 1.
검 사	宋濬求	2015. 2. 25.	인 권 국 장	權政勳	2016. 1. 13.
"	崔鍾必	2016. 1. 27.	인 권 정 책 과 장	李魯公	2016. 1. 13.
보 호 사 무 관	李承旭	2013. 1. 28.	서 기 관	趙商民	2016. 7. 4.
"	吳相燮	2013. 10. 1.	행 정 사 무 관	金裕浩	2016. 11. 1.
"	趙廷湔	2014. 1. 13.	검 찰 사 무 관	金聖凡	2013. 7. 29.
"	金忠燮	2016. 1. 1.	행 정 사 무 관	車裕眞	2011. 6. 10.
법 질 서 선 진 화 과 장	楊重鈺	2016. 1. 13.	사 무 관	吳侑珍	2012. 2. 13.
검 사	崔娜瑛	2015. 8. 27.	"	金鍾壹	2014. 7. 28.
"	李尙勳	2016. 1. 27.	인 권 구 조 과 장	文成仁	2016. 1. 13.
보 호 사 무 관	尹鉉鳳	2015. 8. 31.	검 사	鄭迦珍	2016. 1. 27.
검 찰 사 무 관	玄 臨	2014. 2. 24.	서 기 관	朴鍾權	2015. 4. 7.
행 정 사 무 관	羅智仁	2013. 12. 16.	검 찰 사 무 관	崔賢太	2016. 2. 22.
"	許泰九	2015. 8. 3.	행 정 사 무 관	徐惠珠	2014. 9. 22.
보 호 법 제 과 장	朴贊祿	2016. 1. 13.	인 권 조 사 과 장	韓濟熙	2016. 1. 13.
검 사	文芝善	2015. 2. 25.	검 사	許志勳	2016. 1. 27.
검 찰 사 무 관	崔洙鐘	2015. 8. 31.	검 찰 사 무 관	張 福	2014. 8. 4.
보 호 사 무 관	全相昊	2016. 1. 1.	"	李昌竣	2016. 2. 22.
보 호 사 무 관	權銀娥	2015. 1. 12.	여성아동인권과장	高敬順	2016. 1. 13.
보 호 사 무 관	曹亨燮	2016. 1. 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金熙坤	2016. 8. 27.
소 년 과 장	李泳晁	2016. 3. 7.	행 정 사 무 관	金孝玟	2016. 5. 24.
서 기 관	尹龍範	2012. 1. 30.	검 찰 사 무 관	潘俊成	2015. 2. 16.
보 호 사 무 관	李憲求	2014. 1. 13.	교 정 본 부 장	金學成	2016. 7. 1.
"	金芝秀	2016. 7. 18.	교 정 정 책 단 장	俞炳喆	2016. 9. 12.
"	金仁洙	2016. 1. 1.	보 안 정 책 단 장	尹在興	2016. 9. 12.
행 정 사 무 관	金景洙	2015. 1. 1.	교 정 기 획 과 장	崔帝榮	2016. 9. 12.
			서 기 관	韓泰煥	2016. 1. 25.

직 위	성 명	발령일	직 위	성 명	발령일
교 정 관	朴罔琰	2015. 9. 30.	출입국기획과장	金榮根	2015. 8. 10.
"	趙炳珠	2015. 8. 3.	서 기 관	李德龍	2016. 7. 20.
"	許萬赫	2015. 9. 30.	출입국관리사무관	文壽龍	2015. 8. 31.
"	李廷容	2016. 1. 25.	"	金炳哲	2016. 7. 20.
"	琴鏞鳴	2016. 9. 12.	"	李相達	2012. 7. 23.
"	崔在佑	2016. 9. 12.	"	金才楠	2016. 7. 20.
직업훈련과장	朴柄駟	2016. 9. 12.	출입국심사과장	安奎錫	2016. 7. 20.
교 정 관	韓天龍	2014. 1. 13.	서 기 관	金泰守	2016. 7. 20.
"	鄭惠利	2015. 8. 3.	출입국관리사무관	羅賢雄	2014. 7. 14.
행정사무관	李竣瑞	2016. 2. 29.	"	安東寬	2014. 7. 14.
사회복지과장	李彦淡	2016. 9. 12.	체류관리과장	李東輝	2016. 8. 22.
서 기 관	徐秀原	2016. 9. 12.	출입국관리사무관	李文漢	2013. 7. 29.
교 정 관	宋鎭洙	2016. 9. 12.	"	李承賢	2015. 8. 10.
"	金晟昊	2015. 8. 3.	"	殷基範	2016. 2. 17.
"	金光熙	2016. 9. 12.	"	金旼勳	2016. 2. 17.
복지과장	禹熙慶	2016. 9. 12.	이민조사과장	李東權	2014. 7. 7.
교 정 관	沈載東	2016. 3. 14.	출입국관리사무관	高錫坤	2012. 1. 20.
행정사무관	趙始衡	2015. 1. 1.	"	尹相龍	2015. 8. 10.
시설사무관	吳成根	2015. 8. 3.	"	金斌振	2014. 7. 14.
보안과장	金珍求	2016. 9. 12.	"	李相翰	2016. 7. 20.
교 정 관	許德煥	2016. 9. 12.	이민정보과장	金度均	2016. 2. 17.
"	徐豪成	2015. 8. 3.	출입국관리사무관	李卜行	2016. 2. 17.
"	張元載	2015. 8. 3.	"	林先峰	2016. 7. 20.
분류심사과장	鄭英珍	2016. 9. 12.	외국인정책과장	金守男	2016. 2. 17.
서 기 관	梁元東	2016. 9. 12.	서 기 관	吉康默	2016. 7. 20.
교 정 관	安泳三	2016. 3. 14.	출입국관리사무관	具本俊	2013. 1. 28.
"	裴敬錫	2014. 9. 29.	"	李在炯	2016. 7. 20.
의료과장	金度亨	2016. 9. 12.	"	朴濟晟	2016. 2. 25.
교 정 관	朴大澈	2016. 9. 12.	국적과장	朴相旭	2015. 10. 26.
"	朴基柱	2016. 9. 12.	출입국관리사무관	崔文禎	2016. 7. 20.
심리치료과장	朴振悅	2016. 9. 12.	"	金鎭成	2013. 7. 29.
교 정 관	曹官成	2016. 9. 12.	"	金基永	2013. 7. 29.
"	徐輔均	2016. 9. 12.	이민통합과장	陸承焄	2016. 7. 20.
행정사무관	金秉天	2016. 9. 12.	출입국관리사무관	李翠庚	2015. 1. 1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金宇鉉	2016. 5. 23.	"	李浩遠	2016. 2. 17.
출입국정책단장	張世根	2016. 7. 13.	"	朴眞洙	2016. 7. 20.
국적·통합정책단장	李弼營	2016. 4. 1.	"	金泰亨	2016. 2. 17.
			난민과장	河勇國	2016. 1. 27.
			출입국관리사무관	具炳謨	2015. 3. 7.
			"	李正美	2016. 1. 27.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령일
원 장	검 사	김 희 관(金熙官)	2015. 12. 24.
기 획 부 장	검 사	이 명 재(李明宰)	2015. 12. 24.
교정연수부장	고 위 공 무 원	정 유 철(鄭有哲)	2016. 9. 12.
연 구 위 원	검 사	김 진 숙(金辰淑)	2016. 1. 13.
		김 희 준(金熙準)	2016. 1. 13.
		박 윤 해(朴潤海)	2016. 1. 13.
		한 동 영(韓東榮)	2016. 1. 13.
		안 영 규(安永圭)	2016. 1. 13.
		류 장 만(柳長萬)	2014. 4. 28.
기 획 과 장	검 사	이 시 원(李時源)	2016. 1. 13.
검 사 교 수	검 사	안 권 섭(安權燮)	2016. 1. 13.
		이 철 희(李喆熙)	2016. 1. 13.
		박 승 환(朴勝煥)	2016. 1. 13.
		우 남 준(禹南準)	2016. 1. 13.
		김 윤 섭(金潤燮)	2016. 1. 13.
		안 종 오(安種五)	2015. 2. 25.
		전 현 민(全鉉珉)	2016. 1. 13.
		김 윤 희(金允姬)	2015. 2. 25.
		김 명 운(金溟雲)	2015. 2. 25.
		김 정 진(金楨珍)	2015. 2. 25.
총 무 과 장	서 기 관	천 정 훈(千政熏)	2016. 1. 1.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이 영 철(李永哲)	2015. 8. 31.
교정연수과장	서 기 관	김 영 식(金榮植)	2016. 9. 12.
교정훈련과장	서 기 관	김 정 열(金貞烈)	2016. 7. 4.
시설관리팀장	서 기 관	이 석 재(李錫宰)	2015. 8. 3.
용인분원장	검 사	이 영 주(李英珠)	2016. 1. 13.
대외연수과장	검 사	김 웅(金 雄)	2016. 1. 13.
운영지원과장	검찰수사서기관	배 길 문(裴吉文)	2016. 8. 29.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 찰 총 장	金秀南	2015.12.02.
차 장 검 사	金周賢	2015.12.24.
기 획 조 정 부 장	尹雄傑	2015.12.24.
반 부 패 부 장	朴正植	2015.12.24.
형 사 부 장	朴均澤	2015.12.24.
강 력 부 장	朴珉約	2015.12.24.
공 안 부 장	鄭点植	2015.02.11.
공 판 송 무 부 장	金海洙	2015.12.24.
과 학 수 사 부 장	金榮大	2015.12.24.
검 찰 부 장	鄭炳晙	2016.06.13.
범 죄 정 보 기 획 관	鄭銖峯	2016.01.13.
범 죄 정 보 1 담 당 관	李榮祥	2016.01.13.
범 죄 정 보 2 담 당 관	韓廷和	2016.01.13.
대 변 인	金煦坤	2016.01.13.
정 책 기 획 과 장	孫準晟	2016.01.13.
정 보 통 신 과 장	具滋賢	2015.02.25.
수 사 지 휘 과 장	金南佑	2016.01.13.
수 사 지 원 과 장	辛應碩	2016.01.13.
형 사 1 과 장	韓奭履	2016.01.13.
형 사 2 과 장	姜知聲	2016.01.13.
조 직 범 죄 과 장	朴在億	2016.01.13.
마 약 과 장	金泰權	2016.01.13.
피 해 자 인 권 과 장	金南順	2016.01.13.
공 안 기 획 장	高 興	2016.01.13.
공 안 1 과 장	林 炫	2016.01.13.
공 안 2 과 장	金裕喆	2016.01.13.
공 안 3 과 장	宋 岡	2016.01.13.
공 판 송 무 과 장	安孝禎	2016.01.13.
과 학 수 사 기 획 관	安晟秀	2016.01.13.
과 학 수 사 1 과 장	朴哲雄	2016.01.13.
과 학 수 사 2 과 장	邢振輝	2016.01.13.
디 지 털 수 사 과 장	申英植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이 버 수 사 과 장	梁碩祚	2016.01.13.
검 찰 1 과 장	曹基龍	2016.01.13.
검 찰 2 과 장	羅贊基	2016.01.13.
국 제 협 력 단 장	權純哲	2015.02.25.
검 찰 연 구 관	李 龍	2016.01.13.
"	呂煥燮	2016.01.13.
"	權純範	2016.01.13.
"	朴賢哲	2016.01.13.
"	朴祥振	2016.01.13.
"	姜成龍	2016.01.13.
"	金炯奭	2016.01.13.
"	朴洽鎭	2016.01.13.
"	徐植旼	2016.01.13.
"	朴赫洙	2016.01.27.
"	千奇弘	2016.01.27.
"	安炯完	2016.01.27.
"	李喜東	2016.01.27.
"	裴盛訓	2016.01.27.
"	尹炳竣	2016.01.27.
"	朴台顥	2016.01.13.
"	周慙嗽	2016.01.27.
"	李成植	2016.01.27.
"	李東彦	2016.01.27.
"	權裕植	2016.01.27.
"	李光石	2016.01.27.
"	鄭守辰	2016.01.27.
"	姜世顯	2016.01.27.
"	金侖宣	2016.01.27.
"	申太勳	2016.01.27.
"	李勝亨	2016.01.27.
"	李燦揆	2016.01.27.
"	丁光洙	2016.01.27.
"	金永男	2016.08.31.
"	李俊昊	2016.01.27.
"	金志容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梁熙天	2016.06.13.
운영지원과장	李甲洙	2016.08.29.
집행과장	洪鉉基	2016.08.29.
검찰총장실	朴泳緒	2015.12.02.
수사지원과	林承哲	2016.08.29.
디지털수사과	金正浩	2016.02.22.
운영지원과	李濟童	2014.08.04.
관리과장	鄭東晋	2015.08.31.
검찰연구관실	郭明圭	2015.02.16.
감찰 1 과	吳萬玉	2015.08.31.
감찰 2 과	金默鎮	2016.08.29.
비상안전담당관	柳春烈	2012.03.28.
정보통신서기관	邊興九	2015.02.16.
정보통신서기관	高成順	2014.02.2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朴性載	2015.12.24.
차장검사	車京煥	2015.12.24.
형사부장	李明淳	2016.01.13.
공판부장	吳自誠	2016.01.13.
송무부장	金昌熙	2016.01.13.
감찰부장	安秉翼	2016.01.13.
검사	申培植	2016.01.13.
"	白淳鉉	2015.02.25.
"	朴垞模	2015.03.16.
"	崔永權	2016.01.13.
"	李學成	2016.01.13.
"	金鎬榮	2016.01.13.
"	河宗鐵	2015.02.25.
"	宋承燮	2014.01.16.
"	皇甫仲	2014.01.16.
"	朴民鎬	2015.02.25.
"	吳圭珍	2016.01.13.
"	梁普承	2014.01.16.
"	申殷澈	2016.09.05.
"	朴鍾基	2014.07.26.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魏聖雲	2013.04.23.
"	郭圭洪	2014.01.16.
"	林采源	2014.01.16.
"	金永泰	2014.01.16.
"	鄭盛允	2014.01.16.
"	崔尙燾	2015.02.25.
"	李在九	2014.01.16.
"	李善勳	2015.02.25.
"	高錫洪	2016.01.13.
"	朴東辰	2016.01.13.
"	姜信燁	2016.01.13.
"	房峰燾	2016.01.13.
"	崔昌鎬	2016.01.13.
"	玉善棋	2014.01.16.
"	朴哲完	2015.02.25.
"	金鎬鈺	2015.02.25.
"	李秀澈	2014.01.16.
"	金基文	2016.01.13.
"	李重霽	2014.01.16.
"	白種宇	2015.02.25.
"	金龍昇	2016.01.13.
"	孫峻鎬	2015.02.25.
"	李柱壹	2015.02.25.
"	李鍾根	2016.01.13.
"	朴鎔浩	2013.04.23.
"	金熙準	2016.01.13.
"	朴文洙	2015.02.25.
"	韓東榮	2016.01.13.
"	李洸敏	2013.04.23.
"	河忠憲	2016.01.13.
"	金己俊	2016.01.13.
"	崔吉秀	2016.01.13.
"	朴奎殷	2016.01.13.
"	李盛潤	2015.02.25.
"	崔鉉奇	2016.08.31.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趙南寬	2016.01.13.
"	金在龜	2016.01.13.
"	鄭智泳	2016.08.31.
"	朴斗淳	2016.01.13.
"	金載勳	2015.02.25.
"	金炫采	2016.01.13.
"	全錫洙	2016.01.13.
"	金 薰	2015.08.27.
"	金忠瀚	2014.01.16.
"	崔容碩	2015.02.25.
"	金炳求	2016.01.13.
"	尹載弼	2016.01.13.
"	尹春九	2016.01.13.
"	韓東勳	2016.01.13.
사 무 국 장	高晚相	2016.08.16.
총 무 과 장	權泰均	2016.08.29.
사 건 과 장	全德鎭	2016.08.29.
관 리 과 장	姜甲晉	2015.08.31.
소송사무제1과장	李云淵	2016.08.29.
소송사무제2과장	金泰鎰	2016.02.22.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 사 장	李永烈	2015.12.24.
제 1 차 장 검 사	盧承權	2015.12.24.
제 2 차 장 검 사	李廷會	2016.01.13.
제 3 차 장 검 사	李東烈	2016.01.13.
형 사 1 부 장 검 사	沈雨廷	2015.02.25.
형 사 2 부 장 검 사	李喆熙	2016.01.13.
형 사 3 부 장 검 사	金厚均	2016.01.13.
형 사 4 부 장 검 사	申子容	2016.01.13.
형 사 5 부 장 검 사	崔基植	2016.01.13.
형 사 6 부 장 검 사	裒鏞元	2016.01.13.
형 사 7 부 장 검 사	鄭淳信	2016.01.13.
형 사 8 부 장 검 사	韓雄在	2016.01.13.
조 사 1 부 장 검 사	李進東	2016.01.13.
조 사 2 부 장 검 사	鄭喜元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여성아동조사부장검사	李定炫	2016.01.13.
총 무 부 장 검 사	朴志英	2016.01.13.
공 안 1 부 장 검 사	金宰玉	2016.01.13.
공 안 2 부 장 검 사	李晟圭	2016.01.13.
공공형사부장검사	朴宰輝	2016.01.13.
외 사 부 장 검 사	姜智植	2016.01.13.
공 판 1 부 장 검 사	裒龍贊	2016.01.13.
공 판 2 부 장 검 사	金志容	2016.01.13.
공 판 3 부 장 검 사	黃鍾根	2016.01.13.
특 수 1 부 장 검 사	李沅석	2016.01.13.
특 수 2 부 장 검 사	金錫佑	2016.01.13.
특 수 3 부 장 검 사	崔誠桓	2016.01.13.
특 수 4 부 장 검 사	趙在彬	2016.01.13.
강 력 부 장 검 사	李龍一	2016.01.13.
참단범죄수사1부장검사	孫榮培	2016.01.13.
참단범죄수사2부장검사	李權洙	2016.01.13.
공장가래조사부장검사	李準植	2016.01.13.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	朴璨浩	2016.01.27.
부 장 검 사	金贊中	2016.01.13.
"	朱映奐	2016.01.13.
"	李明信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鄭珍溶	2016.01.13.
"	張東喆	2015.02.25.
"	李桂漢	2016.01.13.
"	金兌垠	2016.01.13.
"	李宣赫	2016.01.13.
"	金德坤	2016.01.13.
"	李榮男	2016.01.13.
"	車淳吉	2016.01.13.
"	高洞坤	2016.01.13.
"	尹中鉉	2016.01.13.
"	金英逸	2016.01.13.
"	張城熏	2016.01.13.
"	李太日	2016.01.13.
"	朴晟燾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부 장) 검 사	金石潭	2016.01.13.
"	柳國樑	2016.01.13.
"	金玟炯	2016.01.13.
"	朴性玟	2016.01.13.
"	全俊喆	2016.01.13.
"	金漢祚	2016.01.13.
"	徐政湜	2016.01.13.
"	金昌珍	2016.01.13.
"	孫佑昌	2016.01.13.
"	林昌國	2016.01.13.
"	許仁碩	2016.01.13.
"	金祐奭	2016.01.13.
"	盧珍英	2016.01.13.
"	金星東	2016.01.13.
"	金皓三	2016.01.13.
"	徐唱元	2016.01.13.
"	吳世榮	2016.01.13.
"	陳正吉	2016.01.13.
검 사	安炳洙	2014.02.05.
"	李泳揆	2016.01.27.
"	崔仁相	2013.02.28.
"	潘宗郁	2014.08.29.
"	金炯錫	2014.02.05.
"	具兌妍	2015.02.25.
"	卞秀良	2015.02.25.
"	金香連	2015.02.25.
"	宋詩鏞	2014.02.05.
"	金容子	2016.01.27.
"	崔任烈	2016.01.27.
"	崔榮娥	2014.02.05.
"	黃宇璉	2014.02.05.
"	丁龍煥	2014.02.05.
"	權尙大	2015.02.25.
"	林歲虎	2016.01.27.
"	崔昌玟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蔓欽	2016.01.27.
"	金原鉉	2016.01.27.
"	金洙燮	2015.02.25.
"	李坤胡	2016.01.27.
"	趙柱衍	2015.02.25.
"	韓眞喜	2014.08.29.
"	閔永炫	2014.08.29.
"	金京槿	2013.02.28.
"	金承彦	2013.02.28.
"	梁善順	2015.08.27.
"	李知炯	2016.01.27.
"	金政煥	2014.08.29.
"	金洛賢	2015.02.25.
"	龍聖鎭	2016.01.27.
"	朴奎炯	2015.02.25.
"	金鍾佑	2015.02.25.
"	張俊浩	2015.02.25.
"	崔明奎	2013.02.28.
"	李東均	2015.02.25.
"	崔倅寬	2013.02.28.
"	車帆濬	2015.02.25.
"	申俊浩	2016.01.27.
"	李東源	2015.08.27.
"	朴大範	2016.01.27.
"	孫儼旻	2016.01.27.
"	金奉俊	2016.01.27.
"	金玆我	2016.01.27.
"	閔庚鎬	2013.08.26.
"	柳竟弼	2015.02.25.
"	朴建昱	2016.01.27.
"	權玆有	2013.02.28.
"	辛昇祐	2015.02.25.
"	金泳吾	2015.02.25.
"	鞠相佑	2015.02.25.
"	安晟熙	2012.07.26.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洪完喜	2016.01.27.
	"	李正培	2014.02.05.
	"	許 準	2014.08.29.
	"	羅懿燁	2015.02.25.
	"	崔大健	2016.01.27.
	"	金龍植	2014.02.05.
	"	姜旼廷	2016.08.31.
	"	權善英	2015.02.25.
	"	權那元	2016.01.27.
	"	吳起燦	2016.01.27.
	"	閔丙權	2016.01.27.
	"	姜尙默	2016.01.27.
	"	林吉燮	2014.02.05.
	"	許誠桓	2016.01.27.
	"	吳世文	2015.02.25.
	"	崔在俊	2014.02.05.
	"	陳昊植	2015.02.25.
	"	任彬彬	2015.02.25.
	"	洪晟準	2016.08.31.
	"	朴鎭成	2016.01.27.
	"	李承勳	2014.02.05.
	"	金志榮	2015.02.25.
	"	金泰見	2014.02.05.
	"	車尙祐	2014.02.05.
	"	金益洙	2015.08.27.
	"	張榮洙	2014.02.05.
	"	李義燦	2013.02.28.
	"	秋義晶	2014.02.05.
	"	金宰禾	2016.01.27.
	"	宋延恩	2016.01.27.
	"	金保成	2016.01.27.
	"	李秉柱	2016.01.27.
	"	許 勳	2015.02.25.
	"	魚寅成	2015.02.25.
	"	洪龍和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正局	2015.02.25.
	"	金潤龍	2016.01.27.
	"	李相睦	2016.01.27.
	"	李承學	2015.02.25.
	"	尹琇楨	2016.01.27.
	"	李在晚	2015.02.25.
	"	朴鍾宣	2015.02.25.
	"	李豪錫	2015.02.25.
	"	李治炫	2016.01.27.
	"	金正勳	2013.02.28.
	"	朴建永	2015.02.25.
	"	李相赫	2015.02.25.
	"	林演珍	2014.02.05.
	"	張眞英	2014.02.05.
	"	鄭現娃	2013.08.26.
	"	朴香徹	2014.02.05.
	"	崔鍾赫	2015.02.25.
	"	金正玉	2016.01.27.
	"	金起炫	2015.02.25.
	"	徐載殖	2016.01.27.
	"	沈亨錫	2014.02.05.
	"	韓相潤	2016.01.27.
	"	印 勳	2016.01.27.
	"	鄭一權	2014.02.05.
	"	金昌燮	2016.01.27.
	"	金가람	2016.01.27.
	"	崔在洵	2014.02.05.
	"	崔斗憲	2016.01.27.
	"	張大圭	2014.02.05.
	"	李元模	2015.08.27.
	"	宋旼徑	2016.01.27.
	"	鄭芝泳	2014.02.05.
	"	徐成牧	2016.01.27.
	"	張有剛	2014.02.05.
	"	全秀珍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姜容默	2016.01.27.
	"	曹 哲	2015.02.25.
	"	秋昌賢	2015.02.25.
	"	金容帝	2015.02.25.
	"	李東根	2015.02.25.
	"	金柱錫	2015.02.25.
	"	陳乙宗	2016.01.27.
	"	鄭宇俊	2015.02.25.
	"	金錫焄	2015.02.25.
	"	辛相祐	2015.02.25.
	"	趙常圭	2015.02.25.
	"	李周炫	2015.02.25.
	"	金榮伸	2016.01.27.
	"	張麗美	2015.02.25.
	"	尹孝善	2015.02.25.
	"	洪熙英	2015.02.25.
	"	趙雅羅	2016.01.27.
	"	金兌謙	2016.01.27.
	"	金勁穆	2016.01.27.
	"	崔亨圭	2016.01.27.
	"	朴榮植	2016.01.27.
	"	李裁源	2016.01.27.
	"	金炳昱	2016.01.27.
	"	韓康一	2016.01.27.
	"	金成勳	2016.01.27.
	"	柳時棟	2016.01.27.
	"	金珉呈	2016.01.27.
	"	全哲鎬	2016.01.27.
	"	李先基	2016.01.27.
	"	河逸秀	2016.01.27.
	"	黃那英	2016.01.27.
	"	朴採願	2016.01.27.
	"	鄭鍾元	2015.04.01.
	"	鄭盛斗	2015.04.01.
	"	李玄珍	2016.03.02.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閔庚元	2016.04.01.
	"	朴魯山	2016.04.01.
	"	車炳坤	2016.04.01.
	"	丁鍾憲	2015.02.25.
	"	河知秀	2015.02.25.
	"	黃海哲	2015.02.25.
	"	金秀炫	2015.02.25.
	"	金玟秀	2016.03.02.
	"	金素英	2016.02.01.
	"	崔先希	2016.02.01.
	"	吳宰絃	2015.02.25.
사	무 국 장	任元柱	2016.08.16.
총	무 과 장	申鉉聖	2016.08.29.
사	건 과 장	尹振雄	2016.08.29.
집	행 제 1 과 장	全炳烈	2016.02.22.
집	행 제 2 과 장	金在燮	2016.08.29.
피	해 자 지 원 과 장	金榮一	2016.08.29.
수	사 제 1 과 장	權寧俊	2015.08.31.
범	죄 정 보 과 장	朴元赫	2015.08.31.
수	사 제 2 과 장	尹在淳	2016.08.29.
조	사 과 장	梁又德	2015.08.31.
조	직범죄수사과장	郭大奎	2016.08.29.
마	약 수 사 과 장	崔 鎭	2016.08.29.
공	판 과 장	盧熙東	2016.02.22.
검	사 직 무 대 리	朴在云	2015.08.31.
	"	朴永範	2016.02.22.
	"	曹宇鉉	2016.08.29.
	"	金炳善	2016.08.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奉 旭	2015.12.24.
차	장 검 사	吳仁瑞	2016.01.13.
형	사 1 부 장 검 사	金東柱	2016.01.13.
형	사 2 부 장 검 사	申成植	2016.01.13.
형	사 3 부 장 검 사	金志憲	2016.01.13.
형	사 4 부 장 검 사	金玉煥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 사 5 부 장 검 사	周容完	2016.01.13.
형 사 6 부 장 검 사	成尙憲	2016.01.13.
공 판 부 장 검 사	鄭圭永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都尙範	2016.01.13.
"	金潤燮	2015.02.25.
"	李知玃	2016.01.13.
"	李準植	2016.01.13.
"	劉賢貞	2016.01.13.
"	朴泰玄	2016.01.13.
검 사	金廷勳	2015.02.25.
"	孔鳳淑	2015.02.25.
"	崔源錫	2015.02.25.
"	文炫喆	2012.02.20.
"	李周泳	2014.02.05.
"	金相顯	2016.01.27.
"	鄭太元	2015.02.25.
"	金南勳	2014.08.29.
"	權邦文	2015.02.25.
"	魏秀鉉	2015.02.25.
"	金基龍	2015.02.25.
"	朴俊映	2016.01.27.
"	安昶柱	2015.02.25.
"	李允姬	2016.01.27.
"	南修娟	2016.01.27.
"	李尙勳	2014.02.05.
"	金仁淑	2015.02.25.
"	洪尙徹	2015.02.25.
"	李世元	2015.02.25.
"	崔芝賢	2014.08.14.
"	金美志	2016.01.27.
"	鄭効玟	2016.01.27.
"	吳相淵	2016.01.27.
"	林嬰琅	2016.01.27.
"	金珉庭	2015.02.25.
"	安在昱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承哲	2016.01.27.
"	車東鎬	2015.04.01.
"	陳세언	2015.04.01.
"	姜弦昊	2016.04.01.
"	金秀吉	2016.04.01.
"	林載雄	2016.08.01.
"	梁在憲	2015.02.25.
"	金必守	2015.02.25.
"	申珠稀	2015.02.25.
"	金旼姬	2015.02.25.
"	河龍萬	2016.03.02.
"	元相煥	2016.03.02.
"	金해슬	2016.02.01.
"	元敬禧	2016.02.01.
"	鄭惠羅	2016.05.02.
"	全和貞	2016.05.02.
"	朴師儀	2016.01.27.
사 무 국 장	金鎮宇	2015.08.31.
총 무 과 장	趙東奎	2016.02.22.
사 건 과 장	洪永權	2016.02.22.
집 행 과 장	金永憲	2016.02.22.
공 판 과 장	梁東炯	2016.02.22.
조 사 과 장	朴炯碩	2016.08.29.
수 사 과 장	李連盛	2015.08.31.
검 사 직 무 대 리	康貴楠	2016.10.01.
"	金度錫	2015.08.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鎮模	2015.12.24.
제 1 차 장 검 사	趙商喆	2016.01.13.
제 2 차 장 검 사	曹宰涓	2016.01.13.
형 사 1 부 장 검 사	宋奎鍾	2016.01.13.
형 사 2 부 장 검 사	高敏碩	2016.06.10.
형 사 3 부 장 검 사	朴興俊	2016.01.13.
형 사 4 부 장 검 사	吳賢哲	2016.01.13.
공 판 부 장 검 사	金炫辰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5부장검사	朴勝大	2016.01.13.
형사6부장검사	姜正錫	2016.01.13.
금융조사1부장검사	徐奉揆	2016.01.13.
금융조사2부장검사	朴吉培	2016.01.13.
(부부장)검사	權敬日	2016.01.13.
"	鄭熙道	2016.01.13.
"	許正	2016.01.13.
검사	趙相元	2015.02.25.
"	金愚	2015.02.25.
"	姜錫喆	2013.02.28.
"	秋慧胤	2014.02.05.
"	李應鐵	2016.01.27.
"	洪碩基	2016.01.27.
"	申東原	2016.01.27.
"	河信旭	2015.02.25.
"	朴炫奎	2014.02.05.
"	曹娥羅	2015.08.27.
"	俞沃根	2014.02.05.
"	尹垣基	2016.08.31.
"	張在完	2014.02.05.
"	趙庸祐	2015.02.25.
"	朴基太	2016.01.27.
"	崔清浩	2016.01.27.
"	崔善瓊	2014.02.05.
"	李宗益	2016.08.31.
"	李晉鏞	2015.02.25.
"	金志諤	2015.02.25.
"	奇老星	2016.01.27.
"	崔熙貞	2015.02.25.
"	張仁鎬	2015.02.25.
"	孫恩英	2015.02.25.
"	李貞和	2016.01.27.
"	李先女	2015.02.25.
"	鄭仙帝	2016.01.27.
"	申基煉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朴지나	2014.02.05.
"	車敬子	2015.02.25.
"	許允僖	2015.02.25.
"	方俊盛	2015.02.25.
"	李政勳	2016.01.27.
"	金珉廷	2016.01.27.
"	朴祥姬	2016.01.27.
"	徐民錫	2015.02.25.
"	禹萬祐	2015.02.25.
"	崔유리	2016.01.27.
"	崔修銀	2015.02.25.
"	李旻珉	2015.02.25.
"	高아라	2015.02.25.
"	申賢萬	2016.01.27.
"	金銀貞	2016.01.27.
"	金世稀	2016.01.27.
"	金智恩	2016.01.27.
"	許廷銀	2015.02.25.
"	權英周	2015.02.25.
"	李受眞	2015.02.25.
"	李羅英	2016.01.27.
"	趙顯雄	2015.04.01.
"	韓檯光	2016.04.01.
"	金漢俊	2016.04.01.
"	全聖桓	2016.08.01.
"	朴芝演	2015.02.25.
"	朴珉勳	2015.02.25.
"	徐東寅	2015.02.25.
"	金衍守	2015.02.25.
"	盧永鎭	2016.03.02.
"	朴英雨	2016.03.02.
"	沈奇昱	2016.03.02.
"	朴東峻	2016.02.01.
"	李惠珍	2016.05.02.
"	朴慧眞	2016.05.02.

직 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鄭然翼	2016.02.22.
총무과장	金平煥	2016.02.22.
사건과장	趙顯哲	2015.08.31.
집행과장	李承哲	2016.02.22.
조사과장	李 憲	2016.08.29.
수사과장	李吉載	2015.08.31.
공판과장	徐熙錫	2016.08.29.
검사직무대리	李相男	2016.12.26.
"	鄭勝元	2015.05.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金五洙	2015.12.24.
차장검사	邊昶勳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盧正煥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崔容熏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吳永信	2016.01.13.
형사제4부장검사	崔盛弼	2016.01.13.
형사제5부장검사	梁仁哲	2016.01.13.
형사제6부장검사	朴起東	2016.01.13.
공판부장검사	蔡錫賢	2016.01.13.
(부부장)검사	金郁垞	2016.01.13.
"	申交任	2016.01.13.
"	崔盛國	2016.01.13.
"	權宰煥	2016.01.13.
"	金源學	2016.01.13.
검사	陳賢一	2016.01.27.
"	全倫慶	2013.02.28.
"	金度延	2014.02.05.
"	朴志容	2016.01.27.
"	黃壽淵	2016.01.27.
"	柳孝濟	2016.01.27.
"	崔在雅	2014.08.25.
"	鞠 元	2015.02.25.
"	金銀慶	2016.01.27.
"	千大元	2015.02.25.
"	朴順愛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李珠熙	2014.02.05.
"	金明玉	2013.02.28.
"	任斗煥	2016.01.27.
"	河竣皓	2016.01.27.
"	鞠 眞	2016.08.31.
"	金美守	2016.01.27.
"	郭桂姪	2015.02.25.
"	鄭美蘭	2016.01.27.
"	裴相玟	2015.02.25.
"	李京錫	2016.01.27.
"	李志英	2015.02.25.
"	李慈璟	2014.02.05.
"	嚴永旭	2016.01.27.
"	李柱勳	2016.01.27.
"	任志洙	2016.01.27.
"	朴賢圭	2014.02.05.
"	崔荷淵	2014.02.05.
"	許善珠	2016.01.27.
"	黃寶永	2015.02.25.
"	金味宣	2016.01.27.
"	申丙宇	2015.04.01.
"	吳昇煥	2015.04.01.
"	金胤鎭	2016.04.01.
"	權五璋	2016.04.01.
"	安寅秀	2015.02.25.
"	安和妍	2015.02.25.
"	安希卿	2015.02.25.
"	權珉廷	2015.02.25.
"	徐敏羽	2016.03.02.
"	金東敏	2016.03.02.
"	姜旼廷	2016.02.01.
"	鄭主喜	2016.02.01.
"	朴元英	2016.05.02.
"	李惠媛	2016.05.02.
"	朴鍾鎬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李榮鎬	2016.02.22.
총무과장	李洪龍	2015.08.31.
사건과장	朴舜雨	2016.02.22.
집행과장	奇性鎬	2015.08.31.
조사과장	高錫鎭	2016.02.22.
공판과장	崔先奎	2015.08.31.
검사직무대리	朴相樂	2015.01.20.
"	吳宗熙	2015.08.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孔相勳	2015.12.24.
차장검사	尹喜植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姜蟹暈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金哲秀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高開碩	2016.01.13.
형사제4부장검사	金鉉善	2016.01.13.
형사제5부장검사	金度均	2016.01.13.
공판부장검사	金成文	2016.01.13.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邊哲亨	2016.01.13.
(부부장)검사	金成勳	2016.01.13.
"	鄭惟美	2016.01.13.
"	金恩心	2016.01.13.
검사	鄭在賢	2016.01.27.
"	張潤台	2015.08.27.
"	朴勝煥	2016.01.13.
"	朴柱誠	2015.02.25.
"	朴庭儀	2014.02.05.
"	趙映贊	2014.02.05.
"	李峻東	2016.01.27.
"	朴成珉	2016.01.27.
"	孫正賢	2014.02.05.
"	權純基	2015.02.25.
"	權讚赫	2016.01.27.
"	崔美和	2015.02.25.
"	鄭熙선	2015.08.27.
"	趙允鐵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	李圭原	2015.02.25.
"	裴哲晟	2015.02.25.
"	朴允姬	2016.08.31.
"	吳善姬	2015.02.25.
"	韓演奎	2014.02.05.
"	鄭秀正	2016.01.27.
"	崔惠璟	2014.02.05.
"	洪貞蓮	2015.02.25.
"	李周玟	2015.08.27.
"	宋寅豪	2015.02.25.
"	王善珠	2016.01.27.
"	黃善玉	2015.02.25.
"	崔根榮	2016.01.27.
"	金玟貞	2014.02.05.
"	鄭佳媛	2016.01.27.
"	金志殷	2016.08.31.
"	金炫秀	2015.02.25.
"	禹玉英	2015.02.25.
"	李周珩	2015.04.01.
"	朴宰成	2016.04.01.
"	呂한울	2016.04.01.
"	朴貞宣	2015.02.25.
"	金夏英	2015.02.25.
"	吳興植	2015.02.25.
"	任丁彬	2015.02.25.
"	高鉉昱	2016.03.02.
"	權다송이	2016.03.02.
"	李徽素	2016.02.01.
"	曹受延	2016.05.02.
"	金珍榮	2016.05.02.
"	申秉宰	2015.02.25.
"	李壽天	2015.02.25.
사무국장	姜鎭求	2016.08.16.
총무과장	李恩相	2016.02.22.
사건과장	金承賢	2016.0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직 위	성명	발령일
집행과장	宋羽燮	2016.08.29.	검사	金다래	2016.08.31.
조사과장	李圭錫	2015.02.16.	"	張世眞	2015.02.25.
수사과장	白文浩	2016.08.29.	"	李大憲	2015.02.25.
공판과장	羅相弼	2016.08.29.	"	全世貞	2015.02.25.
(의정부지방검찰청)			"	金孝珍	2015.02.25.
검사장	趙嬉珍	2015.12.24.	"	尹仁植	2016.01.27.
차장검사	李仲熙	2016.01.13.	"	崔慧卿	2016.07.27.
형사제1부장검사	張基錫	2016.01.13.	"	吳大健	2016.01.27.
형사제2부장검사	黃銀永	2016.01.13.	"	李承炫	2016.08.31.
형사제3부장검사	權珖鉉	2016.01.13.	"	李惠美	2015.02.25.
형사제4부장검사	李奉禎	2016.01.13.	"	梁益準	2016.01.27.
형사제5부장검사	申昇熙	2016.01.13.	"	姜賢貞	2016.01.27.
공안부장검사	徐聖昊	2016.01.13.	"	金鑒正	2014.02.05.
공판송무부장검사	柳政元	2016.01.13.	"	張阿糧	2014.02.05.
(부부장)검사	李星一	2016.01.13.	"	金泰希	2015.02.25.
"	金鳳鉉	2016.01.13.	"	李承泌	2016.01.27.
"	鄭光壹	2016.01.13.	"	李穗定	2016.01.27.
"	金鍾徹	2016.01.13.	"	金台浩	2016.01.27.
"	尹成賢	2016.01.13.	"	金恩慧	2016.01.27.
검사	林恩貞	2015.09.07.	"	金恩貞	2016.01.27.
"	李坤炯	2015.02.25.	"	金祐中	2015.04.01.
"	高鎭源	2014.08.29.	"	許秀珍	2016.01.27.
"	金恩美	2015.02.25.	"	申基昌	2016.04.01.
"	李東原	2014.02.05.	"	宋亨振	2016.04.01.
"	崔竣豪	2016.01.27.	"	具宰演	2015.02.25.
"	朴慧永	2015.02.25.	"	金娟熙	2015.02.25.
"	曹喜英	2015.02.25.	"	呂才英	2015.02.25.
"	趙容珮	2014.02.05.	"	柳喜敬	2016.03.02.
"	金成苑	2013.02.28.	"	金東輝	2016.02.01.
"	林藝珍	2016.01.27.	"	許成好	2016.05.02.
"	李貞旼	2016.01.27.	"	河 나	2016.05.02.
"	吳美鏡	2016.01.27.	사무국장	尹得榮	2016.08.16.
"	申載弘	2015.02.25.	총무과장	金龍雲	2015.08.31.
"	金尙俊	2016.01.27.	사건과장	白潤煜	2016.02.22.
"	吳昔炫	2015.08.27.	집행과장	張柄仁	2016.0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金取冠	2015.08.31
공 판 송 무 과 장	金峻鎬	2016.02.22.
(고 양 지 청)		
지 청 장	權五成	2016.01.13.
차 장 검 사	魯禎妍	2016.01.13.
부 장 검 사	柳 燮	2016.01.13.
"	宋然奎	2016.01.13.
"	朴載現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尹席主	2016.01.13.
"	金世漢	2016.01.13.
검 사	金帝星	2015.02.25.
"	河在武	2016.01.27.
"	許修真	2014.02.05.
"	鄭普泳	2014.02.05.
"	金海中	2015.02.25.
"	趙은수	2015.02.25.
"	朴健榮	2015.02.25.
"	李大成	2015.02.25.
"	李正浩	2015.02.25.
"	崔倫旻	2015.02.25.
"	劉知妍	2016.08.31.
"	李昌熙	2016.01.27.
"	金有那	2016.08.31.
"	黃景媛	2015.02.25.
"	高銀實	2015.02.25.
"	楊鎭善	2015.02.25.
"	朴芝英	2015.02.25.
"	趙範鎭	2015.04.01.
"	李善美	2015.02.25.
"	孫延我	2015.02.25.
"	嚴庠竣	2016.01.27.
"	李雄熙	2016.08.01.
"	崔大虎	2016.01.27.
"	鄭京眞	2016.01.27.
"	朴振德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안나	2015.02.25.
"	高斗成	2016.03.02.
"	河보람	2016.03.02.
"	車旼炯	2016.05.02.
"	朴導民	2016.04.01.
사 무 국 장	金成洙	2016.08.29.
총 무 과 장	崔大鎭	2015.08.31.
사 건 과 장	田貴鉉	2016.02.22.
집 행 과 장	金泰坤	2016.08.29.
수 사 과 장	鄭泰雲	2016.08.29.
(인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今魯	2015.12.24.
제 1 차 장 검 사	李興洛	2016.01.13.
제 2 차 장 검 사	黃義守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安範鎭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邊昶範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崔昌鎬	2016.01.13.
형사제4부장검사	李貞勳	2016.01.13.
형사제5부장검사	鄭大正	2016.01.13.
공판송무부장검사	朴恩貞	2016.01.13.
공 안 부 장 검 사	尹相皓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金亨根	2016.01.13.
강 력 부 장 검 사	朴相鎭	2016.01.13.
외 사 부 장 검 사	金鍾範	2016.01.13.
부 장 검 사	李承永	2015.02.25.
"	吳廷敦	2015.02.25.
(부 부 장) 검 사	崔仁鎬	2014.07.21.
"	裴唱大	2016.01.13.
"	申乘浩	2015.01.06.
"	李濟榮	2015.02.25.
"	趙大豪	2016.01.13.
"	朴仁羽	2016.01.13.
"	朴柱鉉	2016.01.13.
"	李映準	2016.01.13.
"	羅昌洙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楨珍	2015.02.25.
	"	河澹美	2016.01.27.
	"	裴文基	2016.01.27.
	"	劉相旼	2015.02.25.
	"	李英彰	2015.02.25.
	"	李政雨	2016.01.27.
	"	孫晉郁	2014.02.05.
	"	趙萬來	2015.02.25.
	"	李完熙	2015.08.27.
	"	金桐熙	2015.02.25.
	"	李一揆	2016.01.27.
	"	金 中	2014.02.05.
	"	金亨元	2015.02.25.
	"	鄭赫濬	2015.02.25.
	"	孫尙希	2014.02.05.
	"	金秀潁	2016.01.27.
	"	孫貞淑	2014.02.05.
	"	嚴宰祥	2016.01.27.
	"	李京植	2016.01.27.
	"	曹永成	2015.02.25.
	"	朴鍾善	2015.02.25.
	"	韓尙亨	2016.01.27.
	"	金相文	2014.02.05.
	"	崔昭延	2015.08.27.
	"	朴先民	2015.02.25.
	"	潘 智	2012.07.26.
	"	房志炯	2015.02.25.
	"	金成泰	2015.02.25.
	"	高永河	2013.02.28.
	"	金韶賢	2015.02.25.
	"	李旻和	2016.01.27.
	"	曹洙榮	2016.01.27.
	"	李潤九	2016.01.27.
	"	李煥羽	2016.01.27.
	"	李政珉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崔允僖	2014.02.05.
	"	金智潤	2016.01.27.
	"	金芝蓮	2014.02.05.
	"	李秀賢	2016.01.27.
	"	黃晟雅	2016.01.27.
	"	宋明眞	2016.01.27.
	"	金亨燮	2015.02.25.
	"	金炫宇	2016.01.27.
	"	任하나	2015.02.25.
	"	宋惠淑	2016.01.27.
	"	金知慧	2015.02.25.
	"	朴京花	2015.02.25.
	"	文定信	2015.02.25.
	"	高明我	2015.02.25.
	"	尹 景	2014.08.29.
	"	崔賢珠	2016.01.27.
	"	朴금빛	2016.01.27.
	"	金熙松	2016.01.27.
	"	許泰勳	2016.01.27.
	"	金春成	2016.01.27.
	"	李秀環	2016.01.27.
	"	黃湖釋	2016.01.27.
	"	金秀姬	2016.01.27.
	"	鞠陽根	2016.01.27.
	"	李定娥	2014.02.05.
	"	尹基瑄	2015.04.01.
	"	金智勳	2015.04.01.
	"	朴奇雄	2016.03.02.
	"	趙晉庸	2016.04.01.
	"	柳義埈	2016.04.01.
	"	金東炫	2016.08.01.
	"	元世貞	2015.02.25.
	"	金炫璟	2015.02.25.
	"	李東祐	2015.02.25.
	"	金承美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相墩	2016.03.02.
"	鄭世演	2016.03.02.
"	金正和	2016.03.02.
"	閔庚宰	2016.02.01.
"	梁孝承	2016.05.02.
"	金素煥	2016.05.02.
"	元姬貞	2015.02.25.
사 무 국 장	李正範	2016.08.16.
총 무 과 장	李炯奉	2016.02.22.
사 건 과 장	高李柱	2016.08.29.
집 행 과 장	安東鮮	2016.02.22.
조 사 과 장	徐鎭泰	2015.08.31.
수 사 과 장	徐鎭鶴	2016.02.22.
마 약 수 사 과 장	裴敬煥	2016.08.29.
공 판 송 무 과 장	朴時重	2014.08.04.
검 사 직 무 대 리	崔星圭	2016.12.12.
"	金東圭	2016.02.22.
(부 천 지 청)		
지 청 장	李完揆	2016.01.13.
차 장 검 사	金俊淵	2016.01.13.
부 장 검 사	朴昭瑛	2016.01.13.
"	崔永云	2016.03.14.
"	金孝鵬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李俊燁	2016.01.13.
"	金載溟	2016.01.13.
"	黃聖然	2016.01.13.
"	孔太究	2016.01.13.
"	金載夏	2016.01.13.
검 사	丁芝榮	2016.01.27.
"	申惠軫	2016.01.27.
"	趙祉殷	2015.02.25.
"	韓尙勳	2015.02.25.
"	姜貞英	2015.02.25.
"	黃盛玟	2014.02.05.
"	金炯傑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韓智嫻	2015.02.25.
"	徐民珠	2015.02.25.
"	段靜麗	2015.02.25.
"	金妍姝	2015.02.25.
"	李姿英	2016.01.27.
"	金智娟	2015.02.25.
"	殷宗郁	2016.01.27.
"	金한울	2015.04.01.
"	許 政	2016.01.27.
"	金榮俊	2016.04.01.
"	宋潤相	2016.01.27.
"	高炳茂	2016.08.01.
"	金炤定	2016.01.27.
"	金正善	2015.02.25.
"	曹在燧	2015.02.25.
"	吳光一	2016.03.02.
"	吳自妍	2016.03.02.
"	鄭智源	2016.05.02.
사 무 국 장	魏亨良	2016.08.29.
총 무 과 장	蘇 雄	2016.08.29.
사 건 과 장	金東浩	2015.08.31.
집 행 과 장	朱雄一	2016.08.29.
수 사 과 장	鄭燦勳	2015.08.31.
(수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申裕澈	2015.12.24.
제 1 차 장 검 사	李憲相	2016.01.13.
제 2 차 장 검 사	李炫哲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李泰承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李善鳳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朴鍾根	2016.01.13.
형사제4부장검사	李種根	2016.01.13.
공판송무부장검사	姜亨旻	2016.01.13.
공 안 부 장 검 사	鄭映學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宋庚鎬	2016.01.13.
강 력 부 장 검 사	姜鍾憲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장 검 사	白欖河	2015.02.25.
"	許相九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白龍夏	2016.01.13.
"	安美英	2016.01.13.
"	金範起	2016.01.13.
"	裴成孝	2016.01.13.
"	李炳錫	2016.01.13.
"	尹喆玟	2016.01.13.
"	金炯秀	2015.02.25.
"	鄭孝三	2016.08.08.
"	金甫炫	2016.01.13.
검 사	鄭景墳	2016.01.27.
"	金溟雲	2013.02.28.
"	任大赫	2014.02.05.
"	金潤候	2016.01.27.
"	元智愛	2015.02.25.
"	金廷憲	2016.01.27.
"	洪甫佳	2014.02.05.
"	梁東偶	2015.02.25.
"	金秀桓	2014.02.05.
"	李靜雨	2016.01.27.
"	柳光烈	2015.08.27.
"	李 春	2016.01.27.
"	俞禎濤	2016.01.27.
"	鄭永洙	2013.02.28.
"	鄭源斗	2015.02.25.
"	林有慶	2015.02.25.
"	黃賢娥	2015.02.25.
"	鄭有利	2014.08.29.
"	鄭 玪	2015.08.27.
"	張永一	2016.01.27.
"	金周眩	2013.02.28.
"	高은별	2016.01.27.
"	龍泰昊	2015.02.25.
"	李泰淳	2016.08.31.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貞華	2015.02.25.
"	朴寅佑	2015.02.25.
"	金虎庚	2016.01.27.
"	崔正民	2015.02.25.
"	李俊憲	2013.02.28.
"	金賢祐	2015.02.25.
"	崔聖謙	2016.08.31.
"	金恩正	2016.01.27.
"	金載煥	2016.01.27.
"	許容準	2016.01.27.
"	金希娟	2014.02.05.
"	崔相勳	2014.02.05.
"	丁貞旭	2016.01.27.
"	金智雅	2016.08.31.
"	李智恩	2014.02.05.
"	金 珍	2015.02.25.
"	金東奎	2015.02.25.
"	崔麗蓮	2015.02.25.
"	洪志睿	2015.02.25.
"	姜逸民	2015.02.25.
"	李承炫	2015.02.25.
"	梁栽榮	2015.02.25.
"	金眞姬	2016.08.31.
"	田惠賢	2015.02.25.
"	文芝妍	2015.02.25.
"	金柚奈	2015.02.25.
"	李義俊	2016.01.27.
"	安大熙	2016.01.27.
"	金正勳	2016.01.27.
"	金貞宣	2016.01.27.
"	李芙蓉	2014.02.05.
"	金榮敏	2015.04.01.
"	李鍾元	2015.04.01.
"	李受行	2016.03.02.
"	姜政旭	2016.04.01.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安洪均	2016.04.01.
"	李한별	2016.08.01.
"	高建永	2015.02.25.
"	鄭다은	2015.02.25.
"	羅彗允	2015.02.25.
"	李廈英	2016.03.02.
"	金多樂	2016.02.01.
"	金範埰	2016.05.02.
"	崔智允	2016.05.02.
사 무 국 장	崔相煥	2016.02.22.
총 무 과 장	張晶皓	2016.02.22.
사 건 과 장	元應福	2016.02.22.
집 행 과 장	金晶奉	2016.02.22.
조 사 과 장	金峰奭	2016.02.22.
수 사 과 장	李康允	2016.08.29.
검 사 직 무 대 리	裴乙燮	2016.08.29.
"	李喆守	2016.08.29.
"	元鐘植	2015.08.31.
(성 남 지 청)		
지 청 장	李起錫	2016.01.13.
차 장 검 사	李料奉	2016.01.13.
부 장 검 사	盧相吉	2016.01.13.
"	明点植	2016.01.13.
"	崔憲滿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金明石	2016.01.13.
"	文暎權	2016.01.13.
검 사	李世珍	2015.08.27.
"	李政烈	2016.01.27.
"	吳宗烈	2012.02.20.
"	林仙和	2015.02.25.
"	朴貞暖	2015.02.25.
"	朴鍾敏	2014.02.05.
"	徐榮培	2015.02.25.
"	姜銀善	2014.02.05.
"	權載皓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金洙	2015.02.25.
"	南哲佑	2015.02.25.
"	金東律	2015.02.25.
"	張송이	2014.02.05.
"	劉새롬	2015.08.27.
"	趙正福	2016.01.27.
"	盧庚垠	2015.02.25.
"	崔한나	2015.02.25.
"	金俊燁	2015.04.01.
"	金惠主	2015.02.25.
"	安智英	2015.02.25.
"	吳信煥	2016.04.01.
"	玄昇錄	2016.01.27.
"	金世顯	2016.01.27.
"	高麗珍	2014.02.05.
"	金祿元	2016.01.27.
"	李字禧	2015.02.25.
"	都龍民	2015.02.25.
"	申義浩	2016.03.02.
"	梁瑞洵	2016.03.02.
"	鄭智熙	2016.05.02.
"	朴宣河	2016.05.02.
사 무 국 장	李海根	2016.08.29.
총 무 과 장	辛戊承	2016.08.29.
사 건 과 장	金惠慶	2016.08.29.
집 행 과 장	丁海榮	2016.08.29.
수 사 과 장	崔東淳	2015.02.16.
검 사 직 무 대 리	全孝洙	2015.02.16.
(여 주 지 청)		
부 장 검 사	金泰勳	2016.01.13.
검 사	丁炫升	2015.08.27.
"	申東桓	2013.02.28.
"	金한민	2014.02.05.
"	俞炳國	2015.02.25.
"	鄭潤式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昇柱	2015.02.25.
"	李宗珉	2015.02.25.
"	趙素寅	2016.01.27.
"	權佳姬	2015.02.25.
"	李政奎	2016.01.27.
사 무 과 장	金雄容	2015.08.31.
수 사 과 장	李東英	2016.08.29.
(평 택 지 청)		
지 청 장	全康鎭	2016.01.13.
부 장 검 사	安瑩駿	2016.01.13.
부 장 검 사	姜壽山那	2016.01.13.
검 사	安竣奭	2016.01.27.
"	金 建	2015.02.25.
"	吳振世	2015.02.25.
"	吳智錫	2015.02.25.
"	申憲燮	2016.01.27.
"	琴明媛	2015.02.25.
"	黃瑱先	2015.02.25.
"	林相圭	2015.02.25.
"	吳承恩	2015.02.25.
"	李性樺	2015.02.25.
"	李少玄	2015.02.25.
"	朴奎南	2016.01.27.
"	權槿歡	2016.01.27.
"	金슬아	2016.01.27.
"	邊在恩	2016.01.27.
사 무 과 장	崔用一	2016.02.22.
수 사 과 장	奇鏞度	2016.08.29.
(안 산 지 청)		
지 청 장	裴城範	2016.01.13.
차 장 검 사	金炳炫	2016.01.13.
부 장 검 사	金淵坤	2016.01.13.
"	李基宣	2016.01.13.
"	金英翼	2016.01.13.
"	羅炳勳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부 장) 검 사	金完圭	2016.01.13.
"	李丞浩	2015.02.25.
"	尹卿元	2016.01.13.
"	柳千烈	2016.01.13.
"	李德珍	2016.01.13.
"	安鍾五	2015.02.25.
검 사	朴光炫	2014.02.05.
"	金俊燮	2016.01.27.
"	崔賢喆	2015.02.25.
"	俞芝衍	2013.02.28.
"	愼金宰	2016.01.27.
"	姜好俊	2015.02.25.
"	盧貞玉	2016.01.27.
"	丁維宣	2016.01.27.
"	尹素賢	2015.02.25.
"	趙宰鐵	2016.01.27.
"	韓文赫	2016.01.27.
"	李東炫	2014.02.05.
"	金秀珉	2016.01.27.
"	任銀晶	2014.02.05.
"	李知恩	2015.02.25.
"	鄭先哲	2016.01.27.
"	崔庸熙	2016.01.27.
"	崔銘洙	2016.01.27.
"	韓承鎭	2015.04.01.
"	曹圭雄	2016.08.31.
"	李炯錫	2016.03.02.
"	尹基馨	2016.04.01.
"	朴慶世	2016.01.27.
"	金承坤	2016.02.01.
"	金守志	2016.01.27.
"	朱映宣	2015.02.25.
"	陳아름	2015.02.25.
"	黃斗坪	2015.02.25.
"	李恩貞	2016.03.02.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咸惠薰	2016.05.02.
"	金鍾旻	2016.05.02.
"	金淑正	2015.02.25.
사 무 국 장	方善培	2016.08.29.
총 무 과 장	文福男	2016.02.22.
사 건 과 장	蔡義洙	2016.08.29.
집 행 과 장	張鐘喆	2015.08.31.
수 사 과 장	權善基	2015.08.31.
검 사 직 무 대 리	金昌洙	2016.02.22.
(안 양 지 청)		
지 청 장	金嘆鐘	2016.01.13.
차 장 검 사	全亨根	2016.01.13.
부 장 검 사	李秀權	2016.01.13.
"	程軫基	2016.01.13.
"	金春洙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全桂廣	2015.02.25.
검 사	鄭星賢	2015.02.25.
"	郭英煥	2016.01.27.
"	馬秀烈	2014.02.05.
"	姜善珠	2015.02.25.
"	崔在萬	2015.02.25.
"	鄭在信	2015.02.25.
"	金美問	2016.01.27.
"	金昇基	2016.01.27.
"	李尙珉	2016.01.27.
"	金慶年	2016.01.27.
"	金寶美	2016.01.27.
"	卓東完	2015.04.01.
"	金甫徑	2015.02.25.
"	南相吾	2016.04.01.
"	成珍永	2016.01.27.
"	金祐廷	2014.04.16.
"	全佑鎭	2015.02.25.
"	朴亨健	2016.03.02.
"	朴嘉喜	2016.02.01.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度希	2016.05.02.
"	鄭修禧	2016.05.02.
사 무 국 장	許 變	2016.08.29.
총 무 과 장	金泰縣	2016.05.12.
사 건 과 장	崔源緒	2016.05.11.
집 행 과 장	朴熙相	2016.08.29.
수 사 과 장	裴恩鎬	2016.08.29.
(춘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崔鍾元	2015.12.24.
차 장 검 사	朴桂賢	2016.01.13.
부 장 검 사	張鳳文	2016.01.13.
"	全映俊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金志妍	2016.01.13.
"	金希京	2016.01.13.
검 사	李卜鉉	2016.01.27.
"	李蕙恩	2015.02.25.
"	南桂植	2015.02.25.
"	尹나라	2014.02.05.
"	庾晶鉉	2015.02.23.
"	安美賢	2016.01.27.
"	崔辰嫻	2015.02.25.
"	韓銀智	2016.01.27.
"	林賢哲	2016.04.01.
"	崔準桓	2016.01.27.
"	元宣雅	2015.02.25.
"	鄭壹斗	2015.02.25.
"	李琰纁	2016.03.02.
사 무 국 장	梁興守	2016.02.22..
총 무 과 장	徐榮鐘	2015.08.31.
사 건 과 장	金學相	2016.08.29.
수 사 과 장	金浩珉	2016.08.29.
(강릉지청)		
지 청 장	朴成鎭	2016.01.13.
부 장 검 사	李政峯	2016.01.13.
검 사	陳鍾圭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朴贊榮	2015.02.25.
"	安世濬	2016.01.27.
"	金首謙	2015.02.25.
"	朴智元	2015.02.25.
"	趙倫卿	2016.01.27.
"	吳燃澤	2016.01.27.
"	金常範	2016.01.27.
"	姜秀熹	2016.01.27.
사 무 과 장	魏在洪	2016.08.29.
수 사 과 장	柳廷落	2015.02.16.
(원 주 지 청)		
지 청 장	金賢哲	2016.01.13.
부 장 검 사	尹振容	2016.01.13.
검 사	金亨遠	2012.02.20.
"	李建杓	2014.02.05.
"	金辰雨	2015.02.25.
"	李康宇	2016.01.27.
"	劉在根	2015.02.25.
"	張智煥	2015.02.25.
"	金賢智	2015.02.25.
"	鄭敏熙	2016.01.27.
"	柳柱賢	2016.01.27.
"	文淑英	2016.01.27.
사 무 과 장 (代)	張秉喆	2016.12.27.
수 사 과 장	張秉喆	2015.08.31.
(속 초 지 청)		
지 청 장	金洋洙	2016.01.13.
검 사	申承昊	2014.02.05.
"	金世官	2016.01.27.
"	南旻佑	2015.02.25.
"	宋成光	2016.01.27.
사 무 과 장	崔炳善	2016.02.22.
(영 월 지 청)		
지 청 장	金泰佑	2016.01.13.
검 사	俞宗建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朴相宣	2015.02.25.
"	全孝坤	2016.01.27.
"	鄭 赫	2015.02.25.
사 무 과 장	盧鎮喆	2016.08.29.
(대전고등검찰청)		
검 사 장	金康旭	2015.12.24.
차 장 검 사	金基東	2015.02.11.
검 사	鄭現太	2016.01.13.
"	鄭明鎬	2014.01.16.
"	林武永	2016.01.13.
"	姜吉柱	2016.01.13.
"	李光珍	2016.01.13.
"	安永圭	2016.01.13.
"	高秉民	2016.01.13.
"	金成烈	2015.02.25.
"	尹錫悅	2016.01.13.
"	徐洪紀	2016.01.13.
"	金種七	2016.01.13.
사 무 국 장	具滋翊	2015.08.31.
총 무 과 장	朴相郁	2016.08.29.
사 건 과 장	金泰庚	2016.02.22.
(대전지방검찰청)		
검 사 장	安相燾	2015.12.24.
차 장 검 사	高基榮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金官正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田盛元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李炳昊	2016.01.13.
공 판 부 장 검 사	陳載仙	2016.01.13.
공 안 부 장 검 사	朴振源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文泓性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芮世民	2014.01.16.
"	朴炳謨	2016.01.13.
"	趙爽泳	2015.02.25.
"	李桓基	2016.01.13.
"	金炯錄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鄭在勳	2016.01.13.
		李宗珉	2016.01.27.
		金昌洙	2015.02.25.
		李俊範	2016.08.31.
		金振滿	2015.02.25.
		金皓駿	2016.01.27.
		金一權	2015.02.25.
		張允瑛	2014.08.29.
		權性熙	2016.08.31.
		李晟範	2016.01.27.
		金載南	2016.01.27.
		權乃建	2016.08.31.
		呂京珍	2014.02.05.
		朴慶澤	2014.02.05.
		尹元一	2015.02.25.
		朴 徹	2013.02.28.
		金瀛斌	2015.02.25.
		崔受京	2015.02.25.
		金廷恩	2016.07.01.
		洪楨娟	2015.02.25.
		孫秀珍	2015.02.25.
		崔秀智	2014.02.05.
		金旻晶	2015.02.25.
		宋姃旼	2015.02.25.
		李弦錫	2016.01.27.
		黃允宣	2015.02.25.
		辛芝那	2016.01.27.
		金瑞賢	2015.04.01.
		李宰杓	2016.01.27.
		朴宣映	2015.02.25.
		潘泳起	2016.04.01.
		朴建泰	2016.04.01.
		崔智恩	2014.02.05.
		金炫坤	2016.01.27.
		李聖職	2016.08.01.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金珂沿	2015.02.25.
		金址樹	2015.02.25.
		洪등불	2016.03.02.
		金正潤	2016.05.02.
		李知恩	2016.05.02.
		洪容浚	2016.01.27.
		金永昌	2015.08.31.
		朴榮奎	2016.02.22.
		鄭基成	2016.08.29.
		柳廣福	2016.08.29.
사	무 국 장	趙義坤	2015.08.31.
		尹致鎬	2016.08.29.
		金鎮雄	2015.02.16.
		(홍 성 지 청)	
		金伶奎	2016.01.13.
		金成勳	2016.01.13.
		李榮振	2016.01.27.
		石洙旼	2016.01.27.
		李昇雨	2015.02.25.
		金熙東	2015.02.25.
검	사	愼恩廷	2015.02.25.
		梁貴浩	2016.01.27.
		李信愛	2016.01.27.
		金天奎	2015.08.31.
		李鐘澈	2015.08.31.
		(공 주 지 청)	
		洪終姬	2016.01.13.
		趙鐘敏	2016.01.27.
		孫精賢	2015.02.25.
		申起容	2015.02.25.
사	무 과 장	李承宰	2016.08.29.
		(논 산 지 청)	
		朴廣培	2016.01.13.
		柳濟民	2016.01.27.
		郭重旭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張有那	2015.02.25.
사 무 과 장	金裕昌	2016.08.29.
(서 산 지 청)		
지 청 장	魏在千	2016.01.13.
부 장 검 사	李載昇	2016.01.13.
검 사	成大雄	2015.02.25.
"	秋螢濤	2015.02.25.
"	金英植	2016.01.27.
"	鄭德採	2015.02.25.
"	金銀吾	2015.02.25.
"	崔芝叡	2015.02.25.
"	宋佳炯	2016.01.27.
"	趙慧旼	2016.01.27.
사 무 과 장	林承照	2016.02.22.
수 사 과 장	姜永珍	2016.02.22.
(천 안 지 청)		
지 청 장	車孟麒	2016.01.13.
차 장 검 사	李成熙	2016.01.13.
부 장 검 사	朱鎮澈	2016.01.13.
"	鄭玉子	2016.01.13.
"	許丁穗	2016.01.13.
검 사	曹碩奎	2016.01.27.
"	李効眞	2015.02.25.
"	李侑眞	2015.08.27.
"	元新惠	2015.08.27.
"	張惠永	2014.08.29.
"	洪丞賢	2014.02.05.
"	蔡良姬	2016.01.27.
"	金相賢	2013.02.28.
"	李銖暢	2015.02.25.
"	車昊東	2014.02.05.
"	徐慧善	2014.08.29.
"	朴培熙	2016.08.31.
"	鄭聖憲	2015.02.25.
"	朴庠勇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鄭先熙	2014.02.05.
"	李宣和	2014.02.05.
"	金哲淳	2015.02.25.
"	閔琇漢	2015.02.25.
"	林秀玟	2015.02.25.
"	蔡弼圭	2016.01.27.
"	金珉我	2016.01.27.
"	李相厚	2016.08.01.
"	高銀珍	2016.03.02.
"	金鉉昌	2016.02.01.
"	金多賢	2016.05.02.
"	金鐘鎬	2016.01.13.
사 무 과 장	李東鎭	2016.02.22.
집 행 과 장	李炯根	2016.08.29.
수 사 과 장	李鍾學	2015.08.31.
(청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宋寅澤	2015.12.24.
차 장 검 사	金石載	2016.01.13.
부 장 검 사	申明浩	2016.01.13.
"	朴奉熙	2016.01.13.
"	李炯官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金 鉉	2016.01.13.
"	陳哲珉	2016.01.13.
"	朴夏英	2016.01.13.
검 사	禹基烈	2013.08.26.
"	趙南喆	2015.02.25.
"	成祥旭	2016.01.27.
"	李相錄	2015.02.25.
"	張惠榮	2015.02.25.
"	李侑宣	2014.02.05.
"	張旭桓	2016.01.27.
"	金秉徹	2015.02.25.
"	林智妍	2014.02.05.
"	鄭惠丞	2015.02.25.
"	玄東佶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裴志勳	2015.02.25.
"	崔祐赫	2015.02.25.
"	洪石基	2015.02.25.
"	李在涓	2015.02.25.
"	梁僑錫	2015.04.01.
"	許世珍	2016.01.27.
"	鄭玟旭	2016.04.01.
"	金慈恩	2015.02.25.
"	全有敬	2015.02.25.
"	金智惠	2016.03.02.
"	朴鍾葉	2015.02.25.
"	朴美英	2016.01.27.
"	李鮮和	2016.01.27.
사 무 국 장	李聖範	2016.08.16.
총 무 과 장	洪承謨	2016.02.22.
사 건 과 장	金雲祥	2016.02.22.
집 행 과 장	鄭泰容	2016.02.22.
수 사 과 장	金春鎬	2016.08.29.
검 사 직 무 대 리	朴武烈	2016.02.22.
(총 주 지 청)		
지 청 장	李泰炯	2016.01.13.
부 장 검 사	宋吉大	2016.01.13.
검 사	李允煥	2015.02.25.
"	咸載元	2016.01.27.
"	崔恩美	2015.02.25.
"	洪海淑	2015.02.25.
"	崔甲鎭	2016.01.27.
"	昔東賢	2016.01.27.
"	愼芝媛	2016.01.27.
사 무 과 장	金正烈	2016.02.22.
(제 천 지 청)		
지 청 장	閔奇鎬	2016.01.13.
검 사	林讚美	2015.02.25.
"	羅相敦	2015.02.25.
"	洪銅基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과 장	李昌熙	2016.08.29.
(영 동 지 청)		
지 청 장	全陽碩	2016.01.13.
검 사	陳慶燮	2015.02.25.
"	崔榮俊	2016.01.27.
사 무 과 장	金東輝	2016.02.22.
(대구고등검찰청)		
검 사 장	尹甲根	2015.12.24.
검 사	丁滿鎭	2016.01.13.
"	孫淳燦	2014.01.16.
"	李鍾大	2016.01.13.
"	權桃郁	2015.02.25.
"	金容柱	2015.02.25.
"	金泰光	2016.01.13.
"	林龍奎	2016.01.13.
"	朴順哲	2016.01.13.
"	沈在桂	2014.01.16.
"	趙鍾泰	2016.01.13.
사 무 국 장 (代)	朴天洪	2016.12.28.
총 무 과 장	朴天洪	2016.08.29.
사 건 과 장	朴元吉	2016.02.22.
(대구지방검찰청)		
검 사 장	全賢垞	2015.12.24.
제 1 차 장 검 사	金周原	2016.01.13.
제 2 차 장 검 사	李周炯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申昊澈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李碩植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金榮俊	2016.01.13.
형사제4부장검사	金周弼	2016.01.13.
여성아동조사부장검사	申銀善	2016.01.27.
공 판 부 장 검 사	金仙花	2016.01.13.
공 안 부 장 검 사	金 信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裴鍾赫	2016.01.13.
강력부장검사	李鎭鎬	2016.01.13.
부 장 검 사	朴章佑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부 장) 검 사	朴錫宰	2016.01.13.	검 사	李智慧	2015.02.25.
"	鄭淵憲	2016.01.13.	"	鄭宇成	2014.02.05.
"	李映林	2016.01.13.	"	吳昌洺	2016.01.27.
"	朴基鍾	2016.01.13.	"	李賢珠	2015.02.25.
"	崔鍾武	2016.01.13.	"	金방글	2015.02.25.
"	柳東昊	2016.01.13.	"	金美榮	2016.01.27.
"	崔智錫	2016.01.13.	"	朴成煜	2015.02.25.
"	姜承熙	2016.01.13.	"	柳承辰	2015.02.25.
검 사	崔斗泉	2013.08.26.	"	宋旻霞	2015.02.25.
"	李禎燮	2015.08.27.	"	姜和連	2015.02.25.
"	段成翰	2014.02.05.	"	薛秀峴	2015.02.25.
"	愼之菡	2015.02.25.	"	白尙垞	2016.01.27.
"	朴順培	2015.02.25.	"	丁桐鉉	2016.01.27.
"	金昇鎬	2015.02.25.	"	李娃淵	2016.01.27.
"	金敏娥	2016.01.27.	"	徐知元	2016.01.27.
"	具美玉	2015.02.25.	"	金泰燁	2015.04.01.
"	李承惠	2015.02.25.	"	宋泰沅	2015.04.01.
"	崔娜瑛	2015.08.27.	"	俞光善	2016.03.02.
"	鄭明媛	2015.02.25.	"	裴官成	2016.01.27.
"	李世喜	2013.02.28.	"	朴重華	2016.04.01.
"	金鎮皓	2015.02.25.	"	李宰沅	2016.04.01.
"	金準先	2012.02.20.	"	金承妍	2015.02.25.
"	扈丞鎭	2014.02.05.	"	宋炫卓	2015.02.25.
"	金姬英	2016.01.27.	"	裴韓鎭	2016.03.02.
"	金智淑	2016.01.27.	"	劉丞晉	2016.03.02.
"	金政煥	2015.02.25.	"	姜仁先	2016.02.01.
"	鄭大熙	2016.08.31.	"	朴惠珍	2016.05.02.
"	孫明枳	2015.02.25.	사 무 국 장	卜斗奎	2016.08.16.
"	趙晟允	2015.02.25.	총 무 과 장	尹炳鉉	2016.02.22.
"	金南秀	2013.02.28.	사 건 과 장	朴武善	2016.08.29.
"	李琪瑛	2016.01.27.	집 행 과 장	尹榮右	2016.08.29.
"	李槿貞	2015.02.25.	수 사 과 장	河錫模	2016.02.22.
"	黃允載	2016.01.27.	조 사 과 장	徐光允	2015.08.31.
"	宋漢燮	2014.02.05.	공 판 과 장	林京眞	2016.02.22.
"	全榮雨	2014.02.05.	검 사 직 무 대 리	崔榮根	2016.08.29.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직 무 대 리	安鵬翼	2016.08.29.
(대구서부지청)		
지 청 장	張瑛洙	2016.01.13.
차 장 검 사	崔瓊奎	2016.01.13.
부 장 검 사	朴聖根	2016.01.13.
"	金載浩	2016.01.13.
"	李鍾赫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徐奉何	2016.01.13.
검 사	白承周	2015.02.25.
"	皇甫炫希	2014.02.05.
"	金琪昀	2014.02.05.
"	金銀河	2016.01.27.
"	金知泳	2015.02.25.
"	成秉奎	2016.01.27.
"	文智碩	2016.01.27.
"	羅永旭	2015.02.25.
"	申美良	2015.02.25.
"	李智娟	2016.08.31.
"	郭錦禧	2014.02.05.
"	金倫廷	2013.02.28.
"	申恩植	2015.02.25.
"	徐宰熙	2014.02.05.
"	文承泰	2015.02.25.
"	崔成圭	2016.01.27.
"	李桃熙	2014.02.05.
"	文成根	2015.04.01.
"	楊滄旭	2016.02.01.
"	李喜星	2016.04.01.
"	全伶卿	2016.01.27.
"	張智哲	2015.02.25.
"	金喜眞	2015.02.25.
"	崔滋允	2016.05.02.
"	金奎完	2016.05.02.
사 무 국 장	金東錫	2016.08.29.
총 무 과 장	金光烈	2016.0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건 과 장	金正昊	2015.08.31.
집 행 과 장	金明圭	2016.08.29.
수 사 과 장	李泰得	2016.08.29.
(안동지청)		
지 청 장	李定桓	2016.01.13.
검 사	金昊炫	2015.02.25.
"	姜眞旭	2015.02.25.
"	朴宰勳	2016.01.27.
"	南昭禎	2015.02.25.
"	羅敏榮	2015.02.25.
사 무 과 장	權相日	2016.02.22.
수 사 과 장	金在坤	2016.08.29.
(경주지청)		
지 청 장	金 勳	2016.01.13.
부 장 검 사	玉成大	2016.01.13.
검 사	柳朱泰	2016.01.27.
"	柳京煥	2015.02.25.
"	李슬기	2016.01.27.
"	李虎宰	2015.02.25.
"	南志旻	2015.02.25.
"	李俊錫	2016.01.27.
"	趙智賢	2016.01.27.
사 무 과 장	金三述	2016.08.29.
수 사 과 장	金宰弘	2016.02.22.
(포항지청)		
지 청 장	金鴻昌	2016.01.13.
부 장 검 사	尹源祥	2016.01.13.
"	金敬祐	2016.01.13.
검 사	朴相洙	2015.02.25.
"	朴榮相	2015.02.25.
"	宋秀淵	2013.02.28.
"	韓周東	2016.01.27.
"	崔誠竣	2016.01.27.
"	金廷衍	2014.02.05.
"	羅소라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洪敏裕	2015.02.25.
"	金喚錫	2015.02.25.
"	鄭正和	2016.01.27.
"	孫有彬	2016.01.27.
"	金書永	2016.01.27.
사 무 과 장	金映辰	2016.08.29.
집 행 과 장	崔泳壽	2016.08.29.
수 사 과 장	韓玄大	2016.02.22.
(김 천 지 청)		
지 청 장	李溶民	2016.01.13.
부 장 검 사	李喆鎬	2016.01.13.
"	金明洙	2016.01.13.
검 사	李壽珍	2015.02.25.
"	宋燦雨	2015.02.25.
"	朴在浩	2016.01.27.
"	尹信明	2015.02.25.
"	沈在鉦	2015.02.25.
"	具世熹	2015.02.25.
"	宋玟株	2015.02.25.
"	李京雅	2016.01.27.
"	鄭素英	2016.01.27.
"	朴晟玄	2016.01.27.
사 무 과 장	具英漢	2016.08.29.
수 사 과 장	林炳靑	2015.08.31.
(상 주 지 청)		
지 청 장	崔在珉	2016.01.13.
검 사	文載雄	2015.02.25.
"	崔珉俊	2016.01.27.
"	金光洛	2016.01.27.
사 무 과 장	金宗基	2016.08.29.
(의 성 지 청)		
검 사	朴倫錫	2016.01.13.
"	張竣赫	2015.02.25.
"	裴奭熙	2016.01.27.
사 무 과 장	權宰暎	2016.0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영 덕 지 청)		
지 청 장	李東洙	2016.01.13.
검 사	申泳三	2016.01.27.
"	金京岍	2015.02.25.
사 무 과 장	金鍾喆	2016.08.29.
(부산고등검찰청)		
검 사 장	文武一	2015.12.24.
검 사	朴吉龍	2015.02.25.
"	李濟官	2016.01.13.
"	李在德	2015.02.25.
"	柳源根	2016.01.13.
"	劉一錫	2016.01.13.
"	朴贊日	2016.01.13.
"	柳斗烈	2015.02.25.
"	李鍾具	2016.01.13.
"	尹重棋	2016.01.13.
"	朴哲完	2014.01.16.
"	朴在映	2016.01.13.
"	禹勝倍	2016.08.31.
사 무 국 장 (代)	金鵬會	2016.12.31.
총 무 과 장	金鵬會	2016.02.22.
사 건 과 장	鄭炳玉	2016.08.29.
(부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黃喆奎	2015.12.24.
제 1 차 장 검 사	宋三鉉	2016.01.13.
제 2 차 장 검 사	尹大鎭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鄭承冕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柳炳斗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朴億洙	2016.01.13.
형사제4부장검사	金正浩	2016.01.13.
형사제5부장검사	魏聖國	2016.08.09.
공 판 부 장 검 사	南相寬	2016.01.13.
공 안 부 장 검 사	白宰明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任寬燦	2016.01.13.
강 력 부 장 검 사	鄭鍾和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외 사 부 장 검 사	金度亨	2016.01.13.
부 장 검 사	金忠宇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柳長萬	2014.04.28.
"	崔盈禕	2016.01.13.
"	金容彬	2016.01.13.
"	李朱亨	2015.02.25.
"	權奇大	2015.02.25.
"	朴賢珠	2016.01.13.
"	李健領	2016.01.13.
"	徐仁善	2016.01.13.
"	任乘徹	2016.01.13.
검 사	林鍾弼	2013.08.26.
"	金熏榮	2015.02.25.
"	嚴熙竣	2014.02.05.
"	金公珠	2016.01.27.
"	金亨柱	2015.02.25.
"	曹弘用	2015.02.25.
"	張少英	2015.02.25.
"	崔宰鳳	2015.08.27.
"	崔佑榮	2015.02.25.
"	金泳喆	2013.02.28.
"	河東雨	2016.01.27.
"	韓基植	2015.02.25.
"	金尙均	2016.01.27.
"	金載赫	2015.02.25.
"	柳南敬	2014.02.05.
"	申承熙	2016.01.27.
"	徐賢旭	2014.02.05.
"	金玲美	2015.02.25.
"	金希映	2015.08.27.
"	蘇昶範	2016.01.27.
"	朴大煥	2014.02.05.
"	金瑛俊	2016.01.27.
"	鄭和俊	2016.01.27.
"	金鎭赫	2012.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姜聖基	2014.02.05.
"	金民九	2016.01.27.
"	孫智惠	2014.08.29.
"	具玟技	2014.08.29.
"	朴修民	2014.02.05.
"	鄭令西	2012.02.20.
"	南大主	2015.02.25.
"	張鎭成	2015.02.25.
"	金宗煜	2015.02.25.
"	黃珍娥	2013.02.28.
"	林豐成	2015.02.25.
"	吳珉載	2013.02.28.
"	金珍用	2015.02.25.
"	徐廷和	2015.02.25.
"	李周龍	2015.02.25.
"	李朱喜	2015.02.25.
"	李世鍾	2016.01.27.
"	權寧必	2016.01.27.
"	蘇在煥	2016.01.27.
"	成斗慶	2016.01.27.
"	金治勳	2014.02.05.
"	朴恩惠	2014.02.05.
"	孫雅智	2016.01.27.
"	姜明薰	2016.01.27.
"	朴信映	2015.02.25.
"	金珉爽	2015.02.25.
"	徐東賢	2015.02.25.
"	林泓錫	2015.02.25.
"	李建雄	2015.02.25.
"	成耆鈺	2015.02.25.
"	權璉起	2016.01.27.
"	趙度俊	2016.01.27.
"	李素娟	2016.01.27.
"	金慧林	2016.01.27.
"	金載雨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林基雄	2015.04.01.
"	申現惠	2015.04.01.
"	文旻泳	2015.02.25.
"	金旻兌	2016.01.27.
"	吳在埰	2016.02.01.
"	朴珍燮	2016.04.01.
"	朴光鎬	2016.04.01.
"	張玲瓏	2014.02.05.
"	全亨埰	2015.02.25.
"	金周惠	2015.02.25.
"	吉善美	2015.02.25.
"	崔德旻	2016.03.02.
"	鄭在娟	2016.03.02.
"	朴아름	2016.02.01.
"	金昌煥	2016.05.02.
"	崔惠眞	2016.05.02.
"	吳禎恩	2016.05.02.
사 무 국 장	金貞玉	2016.02.22.
총 무 과 장	張文燦	2016.08.29.
사 건 과 장	金義坤	2016.08.29.
집 행 과 장 (代)	黃仁宰	2016.12.06.
기 록 관 리 과 장	卞海根	2016.02.22.
조 사 과 장 (代)	劉東昊	2016.10.31.
수 사 과 장	姜正春	2016.08.29.
수 사 지 원 과 장	姜鈞日	2016.08.29.
범 죄 정 보 과 장	具滋承	2016.02.22.
조직범죄수사과장	林煥龍	2015.02.16.
마 약 수 사 과 장	李相敏	2016.02.22.
공 판 과 장	金一東	2016.08.29.
검 사 직 무 대 리	鄭永德	2016.02.22.
(부산동부지청)		
지 청 장	金翰秀	2016.01.13.
차 장 검 사	徐暎受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沈載哲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崔龍圭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趙勇漢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李基榮	2016.01.13.
"	張準熙	2016.01.13.
검 사	朴弘奎	2015.02.25.
"	鄭銀惠	2013.02.28.
"	金知完	2015.02.25.
"	金鎭浩	2015.02.25.
"	金炳文	2016.01.27.
"	崔宇均	2016.01.27.
"	朴城民	2016.01.27.
"	李在涓	2015.02.25.
"	李裕賢	2016.08.31.
"	尹碩煥	2016.01.27.
"	金眞英	2016.01.27.
"	李正賢	2015.02.25.
"	金琿暻	2015.02.25.
"	趙玟逸	2016.01.27.
"	李娜璟	2016.01.27.
"	權炯煜	2016.01.27.
"	李宣始	2016.01.27.
"	梁贊奎	2015.04.01.
"	趙在鶴	2016.04.01.
"	李己明	2015.02.25.
"	柳秀憲	2015.02.25.
"	朴胤相	2016.03.02.
"	李稿銀	2016.03.02.
"	金那英	2016.05.02.
사 무 국 장	許 雄	2016.02.22.
총 무 과 장	李二得	2016.02.22.
사 건 과 장	河相鳳	2015.08.31.
집 행 과 장	元容柱	2016.02.22.
수 사 과 장	鞠泰洪	2015.08.31.
(울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韓璨湜	2015.12.24.
차 장 검 사	崔聖男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검사	金德吉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柳志悅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申炯湜	2016.01.13.
공안부장검사	閔基泓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朴철우	2016.01.13.
(부부장)검사	黃金千	2016.01.13.
"	金晟柱	2016.01.13.
"	姜範求	2016.01.13.
검 사	李光佑	2015.02.25.
"	申大旻	2014.02.05.
"	金台運	2015.02.25.
"	申宗坤	2015.02.25.
"	李榮花	2014.08.29.
"	姜百信	2016.01.27.
"	李相旼	2016.08.31.
"	金妍實	2014.02.05.
"	李東炫	2015.02.25.
"	辛建濤	2015.08.27.
"	朴星旼	2016.01.27.
"	宋永仁	2015.02.25.
"	黃正妊	2015.02.25.
"	宋奉駿	2015.02.25.
"	尹國權	2015.02.25.
"	崔成洙	2015.02.25.
"	邊晉煥	2013.02.28.
"	金俊鎬	2015.02.25.
"	李한울	2016.01.27.
"	金度亨	2014.02.05.
"	李惠現	2016.01.27.
"	宋새봄	2016.01.27.
"	李鎭熙	2015.02.25.
"	金美慧	2015.02.25.
"	金成見	2015.02.25.
"	李周炫	2015.02.25.
"	黃根珠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文鐘培	2015.04.01.
"	林盛洙	2016.04.01.
"	李平和	2016.01.27.
"	文智圓	2016.01.27.
"	文東起	2015.02.25.
"	金叡恩	2015.02.25.
"	元敏榮	2016.03.02.
"	朴昇均	2016.02.01.
"	朴亨哲	2016.05.02.
"	鄭仁惠	2016.05.02.
사무국장(代)	許竣榮	2016.12.26.
총무과장	許竣榮	2016.08.29.
사건과장	申正浩	2016.08.29.
집행과장	鄭義庭	2016.02.22.
공안과장	李國熙	2016.02.22.
수사과장	金斗吉	2016.02.22.
검사직무대리	崔煥卿	2016.08.29.
(창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劉相凡	2015.12.24.
차 장 검 사	朴根範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徐鍾赫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朴官洙	2016.01.13.
공안부장검사	李憲柱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金京秀	2016.01.13.
공판송무부장검사	金龍奎	2016.01.13.
(부부장)검사	禹南準	2016.01.13.
"	朴賢濬	2016.01.13.
"	李宗燦	2016.01.13.
"	金允姬	2016.01.13.
검 사	金元湜	2015.02.25.
"	柳道潤	2016.01.27.
"	金秀珉	2015.02.25.
"	尹재슬	2014.02.05.
"	尹棟煥	2014.02.05.
"	朴哲鏞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張日姬	2015.02.25.
"	朴晉爽	2015.02.25.
"	許成奎	2015.02.25.
"	劉敏鍾	2014.02.05.
"	千憲住	2016.01.27.
"	崔龍洛	2015.02.25.
"	朴智勳	2015.02.25.
"	金禧英	2016.01.27.
"	吳振姬	2016.01.27.
"	金承禹	2016.01.27.
"	曹美敬	2015.02.25.
"	朴 守	2014.02.05.
"	朴逸奎	2016.01.27.
"	朴炯秀	2015.02.25.
"	文宣珠	2016.01.27.
"	徐素喜	2014.02.05.
"	朴勁南	2016.04.01.
"	李鎔楨	2016.01.27.
"	朴珍娥	2015.02.25.
"	崔世允	2016.03.02.
"	金仁仙	2016.02.01.
"	金正賢	2016.05.02.
"	李林杓	2016.01.27.
사 무 국 장	成貞柱	2015.08.31.
총 무 과 장	趙承來	2016.02.22.
사 건 과 장	趙在和	2016.08.29.
집 행 과 장	白鍾一	2016.08.29.
조 사 과 장	朴 巖	2016.08.29.
수 사 과 장	殷熙堅	2016.08.29.
(마 산 지 청)		
지 청 장	許哲豪	2016.01.13.
부 장 검 사	孫錫仟	2016.01.13.
"	安喜俊	2016.01.13.
검 사	徐源翊	2013.02.28.
"	金美恩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朴相凡	2015.02.25.
"	林洪主	2015.02.25.
"	吳俊根	2016.01.27.
"	朴棟主	2015.02.25.
"	李政桓	2015.02.25.
"	閔恩植	2016.01.27.
"	李恩雨	2015.02.25.
"	朴哲良	2016.08.31.
"	朴玟志	2016.01.27.
사 무 과 장	申範秀	2016.02.22.
수 사 과 장	田英培	2016.08.29.
(진 주 지 청)		
지 청 장	金會宗	2016.01.13.
부 장 검 사	沈學鎭	2016.01.13.
"	丁元赫	2016.01.13.
검 사	李銀閔	2015.02.25.
"	權憬浩	2016.01.27.
"	成哉昊	2016.01.27.
"	延濟赫	2015.02.25.
"	宋正範	2015.02.25.
"	朴之英	2015.02.25.
"	李昭娟	2015.02.25.
"	廉浩暎	2016.01.27.
"	車大榮	2016.01.27.
"	朴예珠	2016.01.27.
"	許閔行	2016.01.27.
사 무 과 장	孔承政	2016.08.29.
집 행 과 장	魯幸洙	2015.02.16.
수 사 과 장	鄭富永	2016.08.29.
(통 영 지 청)		
지 청 장	尹榮峻	2016.01.13.
부 장 검 사	金鍾根	2016.01.13.
"	朴光燮	2016.01.13.
검 사	徐志賢	2015.08.27.
"	朴成眞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崔宰賢	2015.02.25.
"	金해밝은	2016.01.27.
"	金나리	2014.02.05.
"	朴한나	2014.02.05.
"	崔鍾卿	2015.02.25.
"	邊竣奭	2015.02.25.
"	洪炫竣	2015.02.25.
"	李洪烈	2015.02.25.
"	金亨哲	2016.01.27.
"	文太權	2016.01.27.
"	鄭允晶	2016.01.27.
사 무 과 장	李相敦	2016.08.29.
수 사 과 장	南大祐	2015.08.31.
(밀 양 지 청)		
지 청 장	崔浩永	2016.01.13.
검 사	金瞳振	2015.02.25.
"	李洪錫	2015.02.25.
"	金賢雄	2016.01.27.
사 무 과 장	金千教	2016.08.29.
(거 창 지 청)		
지 청 장	李昶藍	2016.01.13.
검 사	趙東勳	2016.01.27.
"	張 鎭	2015.02.25.
사 무 과 장	李泰彦	2015.08.31.
(광주고등검찰청)		
검 사 장	吳世寅	2015.12.24.
차 장 검 사	楊富男	2015.12.24.
검 사	金基正	2015.02.25.
"	鄭柄大	2016.01.13.
"	李義景	2016.01.13.
"	洪孝植	2013.04.23.
"	姜呂贊	2014.01.16.
"	鄭容秀	2016.01.13.
"	金 萑	2016.01.13.
"	金大龍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安承振	2016.01.13.
사 무 국 장	李在哲	2016.02.22.
총 무 과 장	金鍾一	2016.08.29.
사 건 과 장 (代)	金鍾一	2016.11.25.
(광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金會在	2015.12.24.
차 장 검 사	具本善	2016.01.13.
형사제1부장검사	全承秀	2016.01.13.
형사제2부장검사	丁珍雄	2016.01.13.
형사제3부장검사	徐正植	2016.01.13.
여성아동조사부장	吳政姬	2016.01.27.
공 안 부 장	李文漢	2016.01.13.
특별수사부장검사	盧萬錫	2016.01.13.
강 력 부 장 검 사	朴榮彬	2016.01.13.
공 판 부 장 검 사	張成哲	2016.01.13.
부 장 검 사	柳宗完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李相吉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田武坤	2016.01.13.
"	千寬英	2016.01.13.
"	具承模	2016.01.13.
"	尹大永	2016.01.13.
검 사	全美花	2015.02.25.
"	曹廣煥	2016.01.27.
"	梁盛弼	2015.02.25.
"	鄭日均	2014.08.29.
"	元炯文	2016.01.27.
"	李長雨	2016.08.31.
"	李芳炫	2015.02.25.
"	林一秀	2016.01.27.
"	柳陳承	2015.02.25.
"	金海敬	2014.02.05.
"	崔馨元	2015.08.27.
"	朴炅燮	2015.02.25.
"	金倫廷	2015.02.25.
"	宋明燮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朴惠蘭	2016.01.27.
"	金喜柱	2015.02.25.
"	丁英珠	2013.02.28.
"	文夏卿	2016.01.27.
"	申熙英	2012.02.20.
"	鄭愚錫	2015.02.25.
"	鄭浚錫	2015.02.25.
"	趙正鎬	2015.02.25.
"	金垠亨	2014.02.05.
"	具珍美	2014.02.05.
"	李垠宙	2016.01.27.
"	宣賢淑	2016.01.27.
"	李尙美	2015.02.25.
"	鄭佻炳	2015.02.25.
"	洪性基	2015.02.25.
"	李珍順	2015.02.25.
"	申妃那	2015.02.25.
"	安盛民	2016.01.27.
"	黃載東	2016.01.27.
"	姜侖辰	2016.01.27.
"	禹在勳	2016.01.27.
"	李韓宗	2015.04.01.
"	張在貞	2015.02.25.
"	林眞徹	2016.04.01.
"	金東稷	2016.04.01.
"	徐아람	2016.01.27.
"	崔해允	2016.01.27.
"	朴禮眞	2015.02.25.
"	金嫦彝	2015.02.25.
"	崔藝元	2016.03.02.
"	都玗志	2016.02.01.
"	羅相顯	2016.05.02.
"	柳晶仁	2016.05.02.
"	禹成榮	2016.01.27.
사 무 국 장	姜聖植	2016.08.16.

직 위	성명	발령일
총 무 과 장	金亨冠	2015.08.31.
사 건 과 장	丁平和	2016.08.29.
집 행 과 장	尹權鎬	2016.08.29.
조 사 과 장	文海植	2016.08.29.
수 사 과 장	尹聖辰	2016.02.22.
공 판 과 장	崔二錫	2016.02.22.
(목 포 지 청)		
목 포 지 청 장	金國一	2016.01.13.
부 장 검 사	金澤均	2016.01.13.
"	李殷彊	2016.01.13.
검 사	金泳周	2015.02.25.
"	柳官模	2014.02.05.
"	趙宰徹	2015.02.25.
"	張榮俊	2015.02.25.
"	南在炫	2016.01.27.
"	姜 現	2015.02.25.
"	金惠敬	2015.02.25.
"	沈基乎	2016.01.27.
"	金秀珉	2016.01.27.
"	李昇勳	2016.01.27.
사 무 과 장	金東龍	2016.08.29.
수 사 과 장	鄭燦先	2016.02.22.
(장 흥 지 청)		
지 청 장	李尙璉	2016.01.13.
검 사	李鍾光	2015.02.25.
"	孫鎔道	2016.08.31.
사 무 과 장	金中根	2016.02.01.
(순 천 지 청)		
지 청 장	文燦哲	2016.01.13.
차 장 검 사	李永基	2016.01.13.
부 장 검 사	白尙烈	2016.01.13.
"	朴英濬	2016.01.13.
"	金鍾五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全鉉珉	2016.01.13.
검 사	蔡洙亮	2016.01.27.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韓台和	2015.02.25.
"	金池蓮	2015.02.25.
"	朴珉喆	2015.02.25.
"	金珍嬉	2016.01.27.
"	千載仁	2016.01.27.
"	李鍾赫	2016.01.27.
"	李承珉	2016.01.27.
"	崔恩英	2015.02.25.
"	申玲敏	2016.01.27.
"	吳興世	2016.01.27.
"	姜顯旭	2015.04.01.
"	具丞基	2016.03.02.
"	金大根	2015.02.25.
"	金智慧	2016.01.27.
"	宋甫炯	2015.02.25.
"	金俊晟	2015.02.25.
"	林炳一	2016.03.02.
"	吳世珍	2016.02.01.
"	張祐赫	2016.05.02.
사 무 국 장	裴鍾闕	2015.08.31..
총 무 과 장	廉仁烈	2016.08.29..
사 건 과 장	金光中	2016.08.29..
수 사 과 장	申承休	2016.02.22..
집 행 과 장	金永澣	2016.02.22.
(해 남 지 청)		
지 청 장	申奉洙	2016.01.13.
검 사	李栗熙	2015.02.25.
"	尹晟鎬	2016.01.27.
"	朴英秀	2016.01.27.
사 무 과 장	吳昀垚	2016.08.29.
(전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張鎬仲	2015.12.24.
차 장 검 사	李炯澤	2016.01.13.
부 장 검 사	金榮基	2016.01.13.
"	李文聖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부 장 검 사	梁東勳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朴惠敬	2016.01.13.
"	姜南守	2016.01.13.
검 사	金善文	2014.02.05.
"	曹斗鉉	2016.01.27.
"	白秀禎	2015.02.25.
"	黃正賢	2016.01.27.
"	李容均	2015.02.25.
"	朴起煥	2015.02.25.
"	崔淳鎬	2016.08.31.
"	安匡鉉	2016.01.27.
"	金宰成	2016.01.27.
"	李承姬	2016.01.27.
"	朴宰平	2016.01.27.
"	黃玲燮	2016.02.01.
"	金鉉書	2016.01.27.
"	李庚宣	2015.02.25.
"	安相炫	2015.04.01.
"	李載仁	2016.04.01.
"	朴敏熙	2014.02.05.
"	鄭巨將	2016.08.01.
"	金荷英	2016.01.27.
"	成仁旭	2015.02.25.
"	趙榮珠	2015.02.25.
"	禹世鎬	2016.03.02.
사 무 국 장	白雲起	2016.08.16.
총 무 과 장	朴貴元	2016.08.29.
사 건 과 장	趙然基	2016.08.29.
집 행 과 장	李殷默	2015.08.31.
수 사 과 장 (代)	金榮圭	2016.12.30.
검 사 직 무 대 리	鄭澤栗	2015.02.16.
(군 산 지 청)		
지 청 장	金炯吉	2016.01.13.
부 장 검 사	申鉉成	2016.01.13.
"	梁建洙	2016.01.13.
검 사	金鍾必	2014.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崔勝煥	2015.02.25.
"	徐聖光	2015.02.25.
"	崔한얼	2016.01.27.
"	黃壽熙	2015.02.25.
"	尹效貞	2014.02.05.
"	申正秀	2015.02.25.
"	徐康源	2015.02.25.
"	李志倫	2015.02.25.
"	鄭璟映	2015.02.25.
"	金버리	2015.02.25.
"	康馨允	2015.02.25.
"	沈彊賢	2016.01.27.
"	崔株源	2016.01.27.
사 무 과 장	朴俊映	2016.02.22..
집 행 과 장	韓在永	2016.02.22.
수 사 과 장	西門潤	2016.08.29.
(정 읍 지 청)		
지 청 장	金永鉉	2016.01.13.
"	張態亨	2015.02.25.
"	李周炫	2016.01.27.
"	韓承勳	2015.02.25.
"	權寅杓	2016.01.27.
사 무 과 장	成贊五	2015.08.31.
(남 원 지 청)		
지 청 장	金寧基	2016.01.13.
검 사	鄭勝元	2016.01.27.
"	金大哲	2015.02.25.
사 무 과 장	梁憲奎	2016.02.22.
(제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李錫煥	2015.12.24.
차 장 검 사	金漢洙	2016.01.13.
부 장 검 사	梁要安	2016.01.13.
부 장 검 사	韓允卿	2016.01.13.
(부 부 장) 검 사	金秀炫	2015.02.25.
"	李炫姬	2016.01.1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李相賢	2016.01.27.
"	朴明姬	2015.02.25.
"	陳惠媛	2015.08.27.
"	孔浚赫	2015.02.25.
"	金昌熙	2016.08.31.
"	張恩希	2015.02.25.
"	朴起兌	2015.02.25.
"	韓大雄	2016.01.27.
"	徐東範	2016.01.27.
"	高侑辰	2016.01.27.
"	朴水晶	2015.02.25.
"	吳寶美	2016.01.27.
"	李善美	2015.02.25.
"	尹智鉉	2015.02.25.
"	崔再皓	2016.03.02.
"	尹午然	2016.02.01.
"	吳슬기	2016.05.02.
사 무 국 장	林上源	2016.02.22.
총 무 과 장	金文坤	2016.02.22.
사 건 과 장	徐昶洙	2016.08.29.
집 행 과 장 (代)	金昊成	2016.12.31.
수 사 과 장	金昊成	2016.02.22.
검 사 직 무 대 리	高殷浩	2014.02.24.
"	鄭南秀	2015.02.16.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趙垠奭	2015.12.24.
교 수	黃鉉德	2015.02.25.
"	金賢洙	2016.01.13.
"	崔盛椀	2016.01.13.
"	權起煥	2016.01.13.
"	梁在赫	2015.02.25.
"	姜大權	2015.02.25.
"	鄭宇植	2016.01.13.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韓榮宣	2016. 1. 25.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張載榮	2015. 8. 31.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李松駿	2015. 8. 24.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朴在鳳	2016. 7. 18.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劉鍾官	2015. 8. 24.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梁奉煥	2016. 1. 1.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金喆浩	2015. 10. 12.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李又權	2016. 7. 18.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金仁娥	2015. 8. 24.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李亨燮	2015. 8. 31.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孫外哲 金已煥 金正烈	2015. 3. 16. 2016. 1. 1. 2016. 7. 18.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金容成	2015. 8. 31.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鄭澤鉉	2016. 1. 1.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成雨濟 沈善玉 洪丁源	2016. 3. 7. 2016. 1. 1. 2016. 1. 1.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崔鐘哲	2016. 1. 1.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李政旻	2015. 8. 3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 구 보 호 관 찰 소 소 행 정 지 원 과 장 관 찰 과 장	朴守煥 공 석 趙宗紀	2016. 3. 7. 2015. 1. 12.	의 정 부 보 호 관 찰 소 고 양 지 소 지 소 장	宋中一	2015. 8. 31.
부 산 보 호 관 찰 소 소 행 정 지 원 과 장 관 찰 과 장	高永鐘 崔成鶴 安 洽	2016. 3. 7. 2016. 1. 1. 2016. 7. 18.	인 천 보 호 관 찰 소 부 천 지 소 지 소 장	金蓍鍾	2016. 1. 1.
울 산 보 호 관 찰 소 소	權奇漢	2015. 8. 31.	수 원 보 호 관 찰 소 성 남 지 소 지 소 장	尹太英	2015. 8. 31.
창 원 보 호 관 찰 소 소	金幸錫	2015. 1. 12.	수 원 보 호 관 찰 소 안 산 지 소 지 소 장	盧根成	2016. 1. 4.
광 주 보 호 관 찰 소 소 행 정 지 원 과 장 관 찰 과 장	姜鎬成 李銀漢 金尙珠	2016. 3. 7. 2016. 1. 1. 2016. 5. 9.	대 전 보 호 관 찰 소 천 안 지 소 지 소 장	盧一錫	2016. 1. 1.
전 주 보 호 관 찰 소 소	崔宇喆	2016. 7. 18.	대 구 보 호 관 찰 소 서 부 지 소 지 소 장	趙成珉	2016. 7. 18.
제 주 보 호 관 찰 소 소	閔根基	2015. 1. 12.	부 산 보 호 관 찰 소 동 부 지 소 지 소 장	韓相益	2015. 1. 12.
위 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 터 장	孫世憲	2016. 3. 7.	광 주 보 호 관 찰 소 순 천 지 소 지 소 장	朴峻哉	2016. 7. 18.
위 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 터 장	權乙植	2015. 1. 12.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직 위	성 명	발령 일	직 위	성 명	발령 일
서울 소년원 원장 행정지원과장 교무과장 의무과장	宋花淑 金龍雲 李容浩 趙泰旭	2016. 2. 15. 2016. 8. 16. 2016. 1. 1. 2012. 5. 16.	청주 소년원장	金成坤	2016. 7. 18.
			안양 소년원장 의무과장	黃啓淵 全振杓	2015. 8. 31. 2009. 9. 14.
			부산 소년원장 교무과장 분류보호과장 의무과장	金正植 金泰燮 安炳景 李炳勳	2015. 8. 31. 2016. 7. 18. 2016. 7. 18. 2008. 9. 1.
			대구 소년원장 교무과장 분류보호과장 의무과장	李星七 鄭成守 李英美 黃善進	2015. 1. 12. 2016. 1. 1. 2016. 1. 1. 2013. 1. 7.
광주 소년원장 교무과장 분류보호과장 의무과장	李榮鎬 徐鎭男 金良坤 鄭吉永	2016. 1. 1. 2016. 1. 1. 2016. 1. 1. 2001. 2. 28.	제주 소년원장	柳秉澤	2016. 1.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교무과장 분류심사과장 의무과장	金仁相 裴鍾相 金世訓 朴廷桓	2015. 11. 2. 2016. 7. 18. 2016. 1. 1. 2011. 4. 8.
대전 소년원장 교무과장 의무과장	李河聲 金一煥 蘇淳哲	2015. 8. 31. 2015. 8. 31. 2010. 8. 12.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廉丁勳	2015. 8. 31.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金澤守	2016. 1. 1.
대전 소년원장 교무과장 분류보호과장 의무과장	吳英熙 李相運 朴鍾國 張裁豪	2016. 7. 18. 2016. 1. 1. 2016. 1. 1. 2012. 11. 1.	치료감호소장 의료부장 행정지원과장 감호과장	崔鍾赫 柳米京 李東煥 金容秀	2016. 1. 15. 2012. 7. 9. 2016. 3. 7. 2016. 7. 18.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崔 兌 源	2016. 10. 11.
검 사	金 泰 憲	2016. 10. 11.
검 사	洪 承 杓	2016. 10. 11.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령 일	직 위	성 명	발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청장	權奇薰	2016. 9. 12.	소장	金千洙	2016. 9. 12.
총무과장	尹吉鉉	2016. 9. 12.	부소장	崔秉錄	2016. 9. 12.
보안과장	河映薰	2016. 9. 12.	총무과장	黃義鎬	2016. 1. 25.
사회복지과장	朴修妍	2016. 9. 12.	보안과장	朴相龍	2016. 9. 12.
분류센터장	崔瓚喜	2016. 9. 12.	의료과장	李俊浩	2009. 2. 17.
			분류심사과장	蔡完植	2016. 3. 14.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청장	金明哲	2016. 9. 12.	소장	金貞善	2016. 9. 12.
총무과장	具池書	2016. 9. 12.	부소장	尹鍾周	2016. 9. 12.
보안과장	金泰洙	2016. 9. 12.	총무과장	李承喆	2016. 9. 12.
사회복지과장	周點淑	2016. 9. 12.	보안과장	全龍熙	2016. 9. 12.
			의료과장	金炅律	2014. 6. 5.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심사과장	鄭炳煥	2016. 9. 12.
청장	柳承晚	2016. 9. 12.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柳琪鉉	2016. 1. 25.	소장	權玟碩	2016. 9. 12.
보안과장	金東允	2016. 1. 25.	부소장	朴三才	2016. 9. 12.
사회복지과장	柳在仁	2016. 9. 12.	총무과장	韓成周	2016. 9. 12.
			보안과장	白金汰	2016. 9. 12.
광주지방교정청			의료과장	朴日雄	2006. 8. 16.
청장	崔康柱	2016. 9. 12.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金春午	2016. 9. 12.	소장	金安植	2016. 1. 25.
보안과장	黃仁培	2016. 9. 12.	부소장	申東潤	2016. 1. 25.
사회복지과장	閔六基	2016. 9. 12.	총무과장	姜燾秀	2016. 9. 12.
			보안과장	金在述	2016. 9. 12.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崔光燮	2005. 11. 7.
소장	洪南寔	2016. 9. 12.	부산구치소		
부소장	尹昌植	2016. 9. 12.	소장	朴皓緒	2016. 09. 12.
총무과장	金一煥	2016. 9. 12.	부소장	都在德	2016. 01. 25.
보안과장	姜郡五	2016. 1. 25.	총무과장	鄭在烈	2016. 09. 12.
의료과장	趙秀鉉	2001. 9. 17.	보안과장	金珍奭	2016. 09. 12.
분류심사과장	徐顯榮	2016. 1. 25.	의료과장	李熙植	2013. 07. 01.
시설과장	金周成	2015. 8. 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 원 구 치 소	李敬植	2016. 9. 12.	여 주 교 도 소	曹基龍	2016. 9. 12.
소 부 소 장	李鉉哲	2016. 9. 12.	의 료 과 장	李瞰圭	2015. 8. 3.
총 무 과 장	張宗善	2016. 9. 12.	부 산 교 도 소		
보 안 과 장	徐珉	2016. 9. 12.	소 장	文炳日	2016. 9. 12.
의 료 과 장	梁承旭	2016. 12. 16.	의 료 과 장	尹鍾哲	2015. 7. 14.
평 택 지 소 장	閔洛基	2016. 9. 12.			
성 동 구 치 소	吳弘均	2016. 9. 12.	의 정 부 교 도 소		
소 부 소 장	曹廣根	2016. 9. 12.	소 장	金東眩	2016. 9. 12.
총 무 과 장	金鐵珉	2016. 9. 12.	의 료 과 장	朱宰虎	2001. 5. 21.
보 안 과 장	金鶴奉	2016. 9. 12.	창 원 교 도 소		
의 료 과 장	金勳	2005. 11. 7.	소 장	辛京又	2016. 9. 12.
인 천 구 치 소	金鍾煜	2016. 9. 12.	의 료 과 장	李承基	2006. 8. 16.
소 부 소 장	洪性千	2016. 9. 12.	순 천 교 도 소		
총 무 과 장	金平根	2016. 9. 12.	소 장	林善河	2016. 7. 1.
보 안 과 장	金南周	2016. 9. 12.	의 료 과 장	朴炆喆	1996. 9. 1.
의 료 과 장	閔亨植	2001. 7. 7.			
서 울 남 부 구 치 소	朴炳龍	2016. 9. 12.	서 울 남 부 교 도 소	俞泰吾	2016. 9. 12.
소 부 소 장	賓相雄	2016. 9. 12.	소 장	李鍾基	2014. 7. 1.
총 무 과 장	姜基千	2016. 9. 12.	의 료 과 장		
보 안 과 장	洪正基	2016. 9. 12.	포 향 교 도 소	鄭雲善	2016. 9. 12.
의 료 과 장	朴鍾民	2016. 9. 26.	소 장	徐輔均	2006. 8. 16.
			의 료 과 장		
천 안 개 방 교 도 소	朴光植	2016. 9. 12.	진 주 교 도 소	柳東白	2016. 1. 25.
소 장	張在球	2005. 11. 7.	소 장	李進喆	2007. 12. 13.
의 료 과 장			의 료 과 장		
화 성 직 업 훈 련 교 도 소	李英姬	2016. 9. 12.	목 포 교 도 소	姜達聲	2015. 8. 3.
소 장	郭延禹	2016. 10. 5.	소 장	姜喆	1990. 6. 26.
의 료 과 장			의 료 과 장		
경 북 북 부 제 1 교 도 소	鄭秉憲	2016. 1. 18.	대 구 구 치 소		
소 부 소 장	李東熹	2016. 3. 14.	소 장	李愚龍	2016. 9. 12.
총 무 과 장	南相伍	2016. 9. 12.	의 료 과 장	李在洸	2005. 11. 7.
보 안 과 장	金王武	2016. 9. 12.	군 산 교 도 소		
의 료 과 장	韓柱燮	2002. 1. 21.	소 장	朴廣來	2016. 1. 25.
시 설 과 장	李明洙	2015. 8. 3.	의 료 과 장	張成龍	2006. 4. 17.
전 주 교 도 소	金承萬	2016. 9. 12.	청 주 교 도 소		
소 장	鄭奉洙	2016. 9. 12.	소 장	吳世鴻	2016. 1. 25.
총 무 과 장	洪淳哲	2016. 9. 12.	의 료 과 장	李炳賢	2013. 1. 1.
보 안 과 장	金學成	2006. 8. 16.			
의 료 과 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 안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盧顯泰 申俊植	2016. 9. 12. 2016. 9. 12.	제 주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任乙化 梁正元	2016. 1. 25. 2016. 12.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의 료 과 장	金東煥 崔昌鶴	2015. 1. 19. 2011. 1. 1.	홍 성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鄭忠薰 尹星老	2016. 9. 12. 1994. 11. 12.
춘 천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朴光琛 李重九	2016. 9. 12. 2015. 1. 19.	서 산 지 소 장	金載益	2016. 9. 12.
원 주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魯埇準 金榮珍	2016. 1. 25. 2015. 4. 13.	경 주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朴熹秀 趙倫徹	2016. 1. 25. 2012. 1. 9.
안 동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李旻雨 공 석	2016. 1. 25.	통 영 구 치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朴民胡 공 석	2015. 8. 3.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 장 의 료 과 장	姜渭福 桂英謫	2016. 9. 12. 2002. 7. 16.	밀 양 구 치 소 소 장 의 료 과 장	鄭 薰 全允湜	2016. 1. 25. 2014. 5. 12.
청 주 여 자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朴泰源 李學龍	2016. 9. 12. 2015. 8. 3.	상 주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鄭昌憲 李都衡	2016. 1. 25. 2014. 6. 26.
김 천 소 년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韓相皓 崔仁煥	2016. 9. 12. 2008. 1. 24.	강 릉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林峰基 金日煥	2016. 9. 12. 2006. 8. 16.
공 주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南俊洛 宋惠貞	2016. 9. 12. 2011. 7. 11.	영 월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吳光云 金健道	2016. 1. 25. 2015. 6. 23.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장 의 료 과 장	閔賢基 鄭萬鎭	2016. 1. 25. 2011. 12. 5.	장 흥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崔圭澈 金喆周	2016. 9. 12. 2010. 11. 8.
울 산 구 치 소 소 장 의 료 과 장	成孟煥 金鍾元	2016. 1. 25. 2009. 7. 20.	해 남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崔國鎭 鄭榮日	2016. 9. 12. 2011. 2. 28.
정 읍 교 도 소 소 장 의 료 과 장	白洪基 金得鍾	2016. 1. 25. 2015. 8. 3.	충 주 구 치 소 소 장 의 료 과 장	金應分 공 석	2016. 9. 12.

7.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	孫弘基 楊次順 崔榮吉 李春龍	2016. 7. 1. 2015. 8. 10. 2016. 7. 20. 2016. 7. 20.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秀東	2015. 8. 10.
지원국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田達秀	2016. 7. 20.
심사국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裴祥業	2016. 2. 17.
총무과장			김포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	黃澤煥	2015. 8.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鐘敏 張熙定 高東基 林辰澤 金鍾協	2016. 7. 13. 2016. 7. 20. 2016. 7. 20. 2016. 2. 17. 2015. 8. 13.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相鎭	2016. 2. 17.
총무과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点子	2015. 8. 10.
관리과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相鎭	2016. 2. 17.
이민특수조사대장			출입국 · 외국인 지원센터 센터장		
출입국정보화센터장	金鍾協	2015. 8. 13.	충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玟洙	2015.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摻俊 李相朗 尹鍾碩	2015. 8. 10. 2016. 2. 17. 2016. 2. 1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李世潤	2015. 8. 10.
관리과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炳列	2016. 7. 20.
이민특수조사대장	尹鍾碩	2016. 2. 17.	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禹錫煥	2016. 2. 17.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공 석		서울남부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	朴相勳	2016. 8. 1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李世潤	2015. 8. 10.	김해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	張永采	2015. 8. 10.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鄭炳列	2016. 7. 2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斗落	2016. 7. 20.
서울남부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	朴相勳	2016. 8. 1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禹鍾均	2016. 7. 20.
김해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장	張永采	2015. 8. 10.	출입국 · 외국인 지원센터 센터장	玄根榮	2015. 8. 1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金斗落	2016. 7. 2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禹鍾均	2016. 7. 20.			

Ⅵ. 인 사

○ 총 관

(2016. 1. ~ 12.)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8,739	2,199	4,863	1,174	503
검 사		1,286	43	1,051	116	76
일 반 직	소 계	7,453	2,156	3,812	1,058	427
	본 부 (연 수 원)	298 (38)	68 (3)	200 (27)	19 (2)	11 (6)
	검 찰 청	2,503	888	1,130	259	226
	보 호 기 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1,084	273	617	116	78
	지 방 교 정 청 (구치소, 교도소)	2,641	659	1,375	513	94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927	268	490	151	18

VII.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16. 1. ~ 12.)

직 급 \ 기 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668	52	22	594
검 찰 총 장	1	-	-	1
검 사	667	52	22	593

○ 일반직

(2016. 1. ~ 12.)

기 관 \ 기 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2,069	16	12	2,041
본 부	503	1	1	501
검 찰 청	616	6	2	608
교 도 소	256	2	2	252
보 호 관 찰 소 소 년 원 치 료 감 호 소	74	1	5	6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592	5	2	585
법 무 연 수 원	28	1	-	27

VIII.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16. 1. 1~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2. 16.	호주	주한 호주 부대사	라비 케왈람	호주의 법률시장 개방 선례 공유 및 우리나라 법률 시장 개방 계획 논의	법무실
2. 22.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부지부장	배리 하사 등 2명	한·미 형사사범공조 업무 협의	검찰국
3. 17.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마이클 최	경제 분야에서 미국 대사관과의 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3. 23.	벨라루스	주한 벨라루스 대사	나탈리아 질레비치	한·벨라루스 법무부간 법무 협력협정 체결 등 교류 협력방안 논의	법무실
3. 23.	호주	외교부 법률국 제재조약조약국적 범죄법률과장	저스틴 브레이스워이트 등 2명	초국가적범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응 공조 증진	검찰국
3. 23.	일본	경찰청 공안과장	마야자와 타다타가 등 5명	한·일 형사사범공조 현안 논의	검찰국
3. 24.	일본	법무성 사무관	다케시 후지타 등 2명	한·일 형사사범공조 현안 논의	검찰국
3. 24.	베트남	노동부 차관	조안 마우 지엵 (Doan Mau Diep)	불법체류자 억제정책, 정보제공등 협조요청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4. 5.	미국	미8군 헌병감	크리스토퍼 와인더	보안과 범집행분과위원회 현안 논의	검찰국
4. 15.	영국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	브래들리 존스 등 2명	한·영 국제형사협력 강화 등 현안 논의	검찰국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4. 26.	카자흐스탄	주한 카자흐스탄 총영사	Gabiden Temirbekov	출입국심사절차 및 정보 제공 등 협조요청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5. 18.	몽골	검찰부총장	갠조릭 고포수렌	한-몽골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범공조 관련 협력 방안 논의	검찰국
6. 6.	몽골	이민청장	D.Bold	몽골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사업 업무협의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6. 7.	대만	국제 및 법집행과 과장	첸수란 (Chen, Su-Lan)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 출입국업무협의 등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6. 10.	미국	IRS(국세청)	데이비드 럼	미국 IRS와 법무부간 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6. 16.	호주	경제참사관	폴 스코필드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7. 4.	영국	경제참사관	멜라니 발로우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7. 7.	오스트리아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엘리자베트 베르타놀리	오스트리아 법무부장관 서한 전달 및 오스트리아 법무부장관의 법무부장관 예방 관련 협의	법무실
7. 19.	영국	런던 금융 특구시 시장	제프리 마운테반스	양국 법률시장의 발전 등 상호 협력방안 논의	법무실
7. 19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줄스 킴	미국 대사관 신임 경제 담당관과 협력방안 등 논의	법무실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7. 26.	미국	미8군 법무실장	유진 에드 보웬 주니어 등 3명	SOFA 처리관련 양측 협의사항 논의	검찰국
8. 5.	태국	태국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	칸차나 파타라초크 (Kanchana Patarachoke)	한국난민법 시행관련 및 불법체류자 관리 등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8. 26.	호주	주한 호주 대사관 경제참사관	폴 스코필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현황, 법률서비스 분야 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9. 19.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형사과장	아디 아샤리 등 3명	한-인도네시아 간 형사 사법분야 협조 방안 논의	검찰국
9. 26.	오스트리아	법무부장관	볼프강 브란트슈테터	양국 법무부 간 우호 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법무실
10. 12.	홍콩	법무부장관	림스키 위안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논의	법무실
11. 21.	아르헨티나	UN 북한인권특별 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 논의	인권국
	세르비아	UN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소냐 비세르코		
	방글라데시	"	사라 후세인		
11. 29.	몽골	사무차관	바야스갈란 공가	한국 전자감독 도입 논의	법정국
12. 1.	미국	LA카운티검찰청 검사장	제키 레이시 등 8명	국외훈련 검사 기관연수 양해각서 체결	검찰국
12. 5.	우크라이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바실 마르마조프	한-우크라이나 일반여권 시증면제협정 관련 논의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16. 1. 1~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27. ~1. 30.	필리핀	ANRIP 컨퍼런스 출장	강민중 출입국관리 주사보	난민과
2. 1. ~2. 5.	미국 (뉴욕)	제64차 UNCITRAL 분쟁해결 실무 작업반 회의	유미리 사무관 외 2	법무실
2. 8. ~2. 12.	미국 (뉴욕)	제29 UNCITRAL 담보 실무 작업반 회의	정지혜 위원 외 1	법무실
2. 13. ~2. 20.	프랑스 (파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 참가	신도옥 검사	검찰국
2. 19. ~2. 25.	페루	APEC 기업인 이동 실무위원회 출장	박병건 출입국관리 주사보 외1	출입국 심사과
2. 20. ~2. 24.	페루 (리마)	APEC 반부패 담당자 회의 참가	구승모 검사	검찰국
2. 26. ~ 2. 28.	페루 (리마)	2016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경제위원회(EC) 회의	채희만 검사	법무실
2. 29. ~3. 4.	미국 (뉴욕)	제33차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실무 작업반 회의	최태은 검사	법무실
3. 1. ~3. 5.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입법부 대상 국제인권역량 강화 사업	이노공 과장 외 1	인권국
3. 10. ~3. 18.	영국, 프랑스	영국 반부패정상회의 사전준비 고위급 회의 및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가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검찰국
3. 14. ~3. 19.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참가	신도옥 검사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3. 14. ~3. 19.	프랑스 (파리)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가	이창재 차관 외 2	검찰국
3. 21. ~3. 25.	일본 (동경)	국제공조수사 실무회의 참석	이용균 검사 외 1	검찰국
3. 21. ~3. 25.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 프로세스(밀입국·인신매매 관련 초국가적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각료급 회의 참석	조희진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1	검찰국
4. 3. ~4. 10.	영국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출장	나현웅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심사과
4. 4. ~4. 8.	미국 (뉴욕)	제26차 UNCITRAL 중소기업 실무 작업반 회의	양리원 위원 외 1	법무실
4. 7. ~4. 8.	프랑스 (파리)	제30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채희만 검사	법무실
4. 7. ~4. 9.	필리핀 (마닐라)	범죄인의 임시인도 기한연장 등 관련 회의를 위한 출장	김태형 검사 외 1	검찰국
4. 14. ~4. 17.	영국 (런던)	영국 반부패정상회의 사전준비 고위급 2차 회의 참석	김형원 검사	검찰국
4. 18. ~4. 21.	카타르 (도하)	UN 기업과 인권 아태지역 포럼	조재철 검사 외 1	인권국
4. 20. ~4. 23.	미국	미국 소년사법학회 국제학술대회(CJJ) 참가	보호사무관 김종준 외 3	법정국
4. 25. ~4. 30.	싱가포르	ICN 총회 참석	구상엽 국제법무과장 외 1	법무실
4. 30. ~5. 8.	미국 (하와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 국제회의(ICOCT) 참가	강종헌 수원지검 강력부장 외1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5. 1. ~5. 5.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제70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담당자 회의 참가	신도옥 검사	검찰국
5. 2. ~5. 6.	미국 (뉴욕)	제49차 UNCITRAL 도산 실무 작업반 회의	조재철 검사 한민 교수	법무실
5. 8. ~5. 15.	네덜란드, 영국	반부패 정상회의 참석	김현웅 장관 외3	검찰국
5. 9. ~5. 13.	미국 (뉴욕)	제53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 작업반 회의	이규철 사/관 최경진 교수	법무실
5. 9. ~5. 14.	중국 (톈진)	국제반부패 기구협회(IAACA) 연례총회 참석	김희재 광주지검 검사장 외1	검찰국
5. 22. ~5. 26.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25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석	안태극 검찰국장 외2	검찰국
5. 24. ~5. 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16차 ASEAN 국제범죄 고위급 실무회의(SOMTC) 참석	최용훈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검찰국
6. 2. ~6. 10.	독일 (마그데부르크 메세)	독일범죄예방대회(DPT) 학술대회 참가	양중진 법질서선진화 과장 외 2	법정국
6. 12. ~6. 19.	스위스 (제네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이노공 과장 외 1	인권국
6. 13. ~6. 17.	프랑스 (파리)	국제 반부패 실무자회의 참석	김형원 검사	검찰국
6. 13. ~6. 15.	중국	중국 출입경관리국 출입국심사 국제포럼 참석	김영근 부이사관 외1	출입국 기획과
6. 14. ~6. 15.	중국 (베이징)	제18차 한중 형사국장회의 참석	박사우 사무관	검찰국
6. 15. ~6. 18.	프랑스	OECD 제40차 이주작업반 회의	박제성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국인 정책과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6. 23. ~ 6. 24.	태국 (방콕)	UNCITRAL·태국 법무부 공동 개최 도산법 관련 국제회의	조재철 검사	법무실
6. 23. ~6. 25.	홍콩	범죄인인도 청구사건 관련 회의	김태형 검사	검찰국
6. 27. ~7. 15.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49차 UNCITRAL 본회의	최태은 검사 외 1	법무실
7. 14. ~7. 21.	미국	미국 교정정신치료 학술대회 참가	성봉호 사무관 외 3	법정국
7. 18. ~7. 21.	싱가폴	제4차 ASEAN+3 사이버범죄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및 싱가포르 내무부 주최 사이버범죄 포럼 참가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외 1	검찰국
8. 14. ~8. 20.	페루 (리마)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 참석	김상현 대전지검 검사	검찰국
8. 23. ~ 8. 24.	페루 (리마)	2016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경제위원회(EC) 회의	김봉진 검사	법무실
9. 1. ~9. 9.	홍콩, 싱가포르	법교육, 셉테드 활용사례 등 범죄예방 정책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	최나영 검사 외 2	법정국
9. 12. ~9. 23.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65차 UNCITRAL 분쟁해결 실무 작업반 회의	김지언 검사 외 2	법무실
9. 21. ~9. 24.	독일	유럽 범죄학회 국제학술대회(ESC) 참가	보호사무관 김선규 외 2	법정국
9. 27. ~10. 2.	미국 (호놀룰루)	2016년 국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대응 회의 참석	황은영 의정부지검 검사	검찰국
10. 1. ~10. 3.	스페인 (마드리드)	ICN 카르텔 워크숍 참석	구상엽 국제법무과장 외 1	법무실
10. 3. ~10. 7.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27차 UNCITRAL 중소기업 실무 작업반 회의	노혁준 교수	법무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3. ~10. 8.	프랑스 (파리)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신도옥 검사	검찰국
10. 10. ~10. 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점검 메커니즘 전문가 교육 참가	임일수 광주지검 검사	검찰국
10. 15. ~10. 20.	프랑스 (파리)	법집행기관 간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반부패 실무자회의 참석	박대환 부산지검 검사	검찰국
10. 15. ~10. 22.	중국 (톈진)	제36차 아태교정본부장회의	김학성 교정본부장 외 4	교정본부
10. 15. ~10. 23.	프랑스 (파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28기 제1차 총회 참가	박상희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국
10. 16. ~10. 22.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8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UNTOC) 당사국 총회 참석	김형원 검사	검찰국
10. 31. ~11. 4.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54차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 작업반 회의	이규철 서기관 최경진 교수	법무실
10. 31. ~11. 5.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범죄인 송환 등 관련 회의 참가	김태형 검사 외 1	검찰국
11. 7. ~11. 12.	부탄 (파로)	제21차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 및 제14차 지역 세미나 참석	강지식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외 1	검찰국
11. 12. ~11. 18.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7차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참석	조아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국
11. 13. ~11. 20.	프랑스,폴란드	제16차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총회, 제71차 국제공조담당자회의 참가	신도옥 검사	검찰국
11. 14. ~11. 18.	네덜란드 (헤이그)	제15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참석	예세민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검찰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15. ~ 11. 16.	프랑스 (파리)	제31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차경진 연구관	법무실
11. 15. ~11. 23.	네덜란드 (헤이그)	제15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참석	백승주 대구서부지청 검사	검찰국
12. 3.	일본	한·일 학술교류회 참가 (한국소년정책학회와 일본범죄사회학회 공동 운영)	서기관 이영호 외 2	법정국
12. 5. ~12. 9.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30차 UNCITRAL 담보 실무 작업반 회의	최태은 검사 외 2	법무실
12. 8. ~12. 10.	베트남 (하노이)	한-베트남 형사협력회의 참석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외 1	검찰국
12. 12. ~12. 16.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50차 UNCITRAL 도산 실무 작업반 회의	조재철 검사 한민 교수	법무실
12. 12. ~12. 15.	스위스 (제네바)	제25차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 회의	이치현 검사 외 1	법무실
12. 15. ~12. 17.	일본 (도쿄)	제7회 한-일 형사사법협력회의 계기 일본 법무성 방문	안태근 검찰국장 외 1	검찰국
12. 15. ~12. 17.	일본 (도쿄)	제7회 한-일 형사사법협력회의 참석	이창수 국제형사과장 외 2	검찰국

IX. 상 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16. 1. ~ 12.)

상훈 \ 직급	계	정무 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558	-	94	15	33	38	148	399	674	144	13
청 조 근 정 훈 장	0	-	-	-	-	-	-	-	-	-	-
황 조 근 정 훈 장	3	-	3	-	-	-	-	-	-	-	-
홍 조 근 정 훈 장	33	-	6	12	15	-	-	-	-	-	-
녹 조 근 정 훈 장	78	-	-	-	-	18	60	-	-	-	-
옥 조 근 정 훈 장	169	-	-	-	-	-	-	115	54		-
근 정 포 장	50	-	3	3	13	5	9	7	9	1	-
대 통 령 표 창	37	-	2	-	2	4	18	9	2	-	-
국 무 총 리 표 창	51	-	4	-	1	1	26	9	10	-	-
모 범 공 무 원	173	-	-	-	-	-	-	152	21		-
법무부장관표창	964	-	76	-	2	10	35	107	578	143	13
유 관 기 관 표 창											

○ 기 관

(2016. 1. ~ 12.)

상훈 \ 기관	계	법무부	검찰청	보 호 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관리 사 무 소
법무부장관표창	47	4	10	14	5	9	5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16. 1. ~ 12.)

훈 격	소 속	직 급	성 명	수 여 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황철규	2016. 4.25.	법의날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재	2016.12.29.	검찰업무수행유공
	대검찰청	검사장	김해수	2016.12.29.	검찰업무수행유공
홍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변창훈	2016. 4.25.	법의날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박계현	"	"
	법무부	검사	김광수	"	"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오완섭	2016.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부이사관	서정주	"	"
	前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故 김기현	"	"
	대전교도소	일반직고위공무원	한본우	"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구대원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함영휘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송태원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완식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인석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용학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준용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유재성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표선익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원철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상용	"	"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검찰부이사관	이충기	"	"
	의정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순구	"	"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병철	2016.10.28.	교정의날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창희	2016.12.29.	검찰업무수행유공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정명호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고위공무원	우기봉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문식	"	"
	부산소년원	부이사관	이청엽	"	"
	안양교도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두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원성준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부이사관	이상우	"	"
	대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심순	"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노봉근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흥태	"	"
	법무부	부이사관	최정석	"	우수공무원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녹조근정훈장	법무연수원	서기관	박종래	2016.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소년원	보호사무관	신윤식	"	"
	안양소년원	서기관	이경호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박기주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병준	"	"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보호사무관	박인주	"	"
	대구구치소	교정관	윤판봉	"	"
	대구구치소	교정관	이종국	"	"
	진주교도소	교정관	류경숙	"	"
	포항교도소	교정관	전상철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서기관	임형종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양희용	"	"
	청주교도소	교정관	정상권	"	"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인회	"	"
	제주교도소	교정관	강기봉	"	"
	제주교도소	교정관	강창운	"	"
	제주교도소	교정관	양상호	"	"
	대구교도소	교정관	채형두	"	"
	경주교도소	교정관	박노명	"	"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효섭	"	"
	수원구치소	교정관	조세종	"	"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영길	"	"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병후	"	"
	안양교도소	교정관	임형민	"	"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황순용	"	"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남동창	"	"
	춘천교도소	교정관	김판식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장지환	"	"
	강릉교도소	교정관	전경복	"	"
	성동구치소	교정관	최용순	"	"
	성동구치소	교정관	김호경	"	"
	법무부	서기관	김병배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박태식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노화정	"	"
	천안교도소	교정관	최점주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관	김치영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관	김태우	"	"
	창원교도소	교정관	정성규	"	"
	창원교도소	교정관	오지환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박상모	"	"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진태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범준	2016.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조복기	"	"
	춘천지방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유재동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황기한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구공희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종석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사무관	박영동	"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사무관	전영인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사무관	이태영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강용경	"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원용우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정의홍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문식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성수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박철웅	"	"
	진주교도소	교정관	정태석	"	"
	부산구치소	교정관	문창수	"	"
	군산교도소	서기관	홍종우	"	"
	순천교도소	서기관	김영준	"	"
	해남교도소	서기관	김재용	"	"
	대전교도소	교정관	박준희	"	"
	안동교도소	교정관	오상봉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송병익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한병화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정일	"	"
	강릉교도소	교정관	홍범표	"	"
	여주교도소	교정관	성순제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서기관	육철수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이수재	"	"
	창원교도소	교정관	배종령	"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윤병국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신승주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수영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민경훈	"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사무관	정의인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문복	"	"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고이주	"	우수공무원

훈 격	소 속	직 급	성 명	수 여 일	비 고
옥조근정훈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임 성 진	2016.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이 상 옥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김 창 규	"	"
	법무부	사무운영주사보	조 행 화	"	"
	치료감호소	간 호 주 사	김 상 희	"	"
	대구구치소	교 위	김 학 율	"	"
	대구구치소	교 위	박 상 준	"	"
	부산구치소	교 감	원 창 연	"	"
	부산구치소	교 감	조 봉 제	"	"
	부산구치소	교 위	이 태 익	"	"
	부산구치소	교 위	박 용 목	"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 감	최 수 덕	"	"
	대전교도소	교 감	장 형 식	"	"
	대전교도소	교 감	송 창 규	"	"
	대전교도소	교 위	김 제 국	"	"
	충주구치소	교 감	정 순 보	"	"
	충주구치소	교 감	이 상 완	"	"
	충주구치소	교 감	김 태 일	"	"
	제주교도소	교 감	고 덕 훈	"	"
	제주교도소	교 감	고 순 조	"	"
	제주교도소	교 감	박 전 남	"	"
	제주교도소	교 위	문 형 수	"	"
	대구교도소	교 감	김 호 윤	"	"
	대구교도소	교 감	조 광 래	"	"
	대구교도소	교 위	신 충 호	"	"
	대구교도소	교 위	박 우 환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 감	임 양 빈	"	"
	광주교도소	교 감	라 병 천	"	"
	광주교도소	교 감	조 갑 현	"	"
	광주교도소	교 위	김 존 허	"	"
	광주교도소	교 위	최 성 일	"	"
	전주교도소	교 감	이 용 열	"	"
	전주교도소	교 감	정 태 강	"	"
	전주교도소	교 위	양 홍 식	"	"
	안동교도소	교 감	남 순 희	"	"
	서울구치소	교 감	김 중 수	"	"
	서울구치소	교 감	신 필 수	"	"
	서울구치소	교 위	정 연 규	"	"
	서울구치소	교 감	권 길 열	"	"
	수원구치소	교 위	김 중 필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수원구치소	교위	박상동	2016.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김학곤	"	"
	원주교도소	교위	남태환	"	"
	강릉교도소	교감	윤옥희	"	"
	성동구치소	교감	강병현	"	"
	성동구치소	교감	문복동	"	"
	인천구치소	교감	허역인	"	"
	인천구치소	교감	조서연	"	"
	인천구치소	교감	임한우	"	"
	인천구치소	교감	류영란	"	"
	인천구치소	교위	이용익	"	"
	여주교도소	교감	이충진	"	"
	여주교도소	교감	박상민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기정	"	"
	영월교도소	교감	조경재	"	"
	영월교도소	교위	이용진	"	"
	천안교도소	교위	김영화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하우현	"	"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남윤희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위	기영문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최경석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강신득	"	"
	창원교도소	교감	심재우	"	"
	창원교도소	교감	손일호	"	"
	창원교도소	교감	최덕봉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윤동일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김금주	"	"
	법무부	전산주사보(전담직위)	박순찬	"	"
	광주고등검찰청	방송통신주사	김선동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권기호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경희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김덕수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최기환	"	"
	대전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백창숙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방호주사보	김종웅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박기영	"	"
	인천지방검찰청	공업주사보	정경택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유공식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변종욱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사무운영주사	권경희	"	"
	의정부교도소	교감	강법석	"	"

훈 격	소 속	직 급	성 명	수 여 일	비 고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오승용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인섭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이찬섭	"	"
	부산교도소	교감	성경애	"	"
	부산교도소	교감	송재권	"	"
	부산교도소	교위	김성곤	"	"
	부산교도소	교위	강태호	"	"
	진주교도소	교위	이석수	"	"
	경주교도소	교감	남규동	"	"
	경주교도소	교감	이석원	"	"
	경주교도소	교감	황병만	"	"
	경주교도소	교감	한녹기	"	"
	부산구치소	교위	하재룡	"	"
	울산구치소	교감	황선정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정재규	"	"
	대전교도소	교감	김남식	"	"
	대전교도소	교감	김태식	"	"
	대전교도소	간호주사	권경숙	"	"
	청주교도소	교감	이정환	"	"
	청주교도소	교감	남동철	"	"
	청주교도소	교위	김응규	"	"
	청주교도소	교위	정구풍	"	"
	청주교도소	교위	변종성	"	"
	청주교도소	운전주사보	이용석	"	"
	공주교도소	교감	김완식	"	"
	공주교도소	운전주사보	이건주	"	"
	홍성교도소	교감	이승희	"	"
	前 홍성교도소	교감	故 정광석	"	"
	홍성교도소	교감	박상권	"	"
	홍성교도소	교위	박창수	"	"
	홍성교도소	교위	서현석	"	"
	충주구치소	교감	윤영인	"	"
	목포교도소	교감	임홍섭	"	"
	군산교도소	교감	김형섭	"	"
	군산교도소	교감	김용작	"	"
	제주교도소	교감	정승윤	"	"
	제주교도소	교감	김학래	"	"
	제주교도소	교위	양일순	"	"
	대구교도소	교감	신재영	"	"
	대구교도소	교위	권준화	"	"
	대구교도소	교감	이상태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교도소	교감	조익현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신봉열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이중기	"	"
	천안개방교도소	교위	임기용	"	"
	천안개방교도소	교위	박근용	"	"
	순천교도소	교감	안인향	"	"
	순천교도소	교위	서창원	"	"
	안동교도소	교감	이재희	"	"
	서울구치소	교감	성락천	"	"
	서울구치소	교감	한상래	"	"
	서울구치소	교위	조계성	"	"
	서울구치소	열관리운영주사보	김명복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주사	이종화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주사보	최기열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이길연	"	"
	안양교도소	교감	안진승	"	"
	의정부교도소	교감	구임백	"	"
	원주교도소	교감	유준상	"	"
	강릉교도소	교감	이정현	"	"
	성동구치소	교감	이시춘	"	"
	성동구치소	교감	문기두	"	"
	인천구치소	교감	안성수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이해성	"	"
	통영구치소	교감	김태곤	"	"
	밀양구치소	교감	전준석	"	"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황영복	"	"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신수철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박재천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김윤대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정동영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위	강병열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유인근	"	"
	상주교도소	교감	김진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류철호	2016.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노윤주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윤은숙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환오	"	"
	대구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허경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방송통신주사	김진만	"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찰주사	이태호	"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방호주사보	신세룡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	김희수	"	"
	창원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형준	"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운전주사보	오성근	"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운전주사보	지생구	"	"
	대검찰청	전산주사	이영호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안재호	"	"
	인천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이장섭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16. 1. ~ 12.)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위철환	2016. 4.25.	범의날유공
국민훈장모란장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회장	김병희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국민훈장동백장	법무사협회	법무사	신정순	2016. 4.25.	범의날유공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회장	김영동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한금희	2016.10.28.	교정의날유공
국민훈장목련장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	고문	박인성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보호위원	박광원	2016.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국민훈장석류장	법사랑위원 대구지역연합회	운영위원	권오홍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홍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2016. 4.25.	범의날유공
홍조근정훈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원립	2016. 4.25.	범의날유공
국민포장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운영실장	김상배	2016. 4.25.	범의날유공
	법사랑위원 순천지역연합회	부회장	장민기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신대철	〃	〃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위원	반영숙	〃	〃
	법사랑위원 의정부연합회	위원	서홍석	〃	〃
	서울소년연합회	위원	이백철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	지구대표	김종수	〃	〃
	성동구치소	교정위원	안명애	2016.10.28.	교정의날유공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안경식	〃	〃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김일섭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	김석희	2016.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사)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곽성호	2016.11.2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통령표창	광주교도소 교정위원회	위원	김정옥	2016. 4.25.	범의날유공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분과위원장	박숙근	〃	〃
	물방울나눔회	회장	와타나베 미카	2016. 5.19.	세계인의날유공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신상록	〃	〃
	(재)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	〃
	법사랑위원 안동지역연합회	지구대표	김영창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지구대표	박희정	〃	〃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부회장	김정희	〃	〃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	회장	유인모	〃	〃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부회장	김장욱	〃	〃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지구대표	고영무	〃	〃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부회장	류병현	〃	〃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고문	강세민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정목영	2016.10.28.	교정의날유공
	강릉교도소	교정위원	정재홍	〃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김현주	〃	〃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정만옥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보호위원	김신희	2016.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보호위원	이민성	〃	〃
	(사)케이비엘			2016.12.21.	법질서유공
	대한건설협회			〃	〃
	농협중앙회	상무	이수현	〃	〃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구정희	2016.11.25.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최헌숙	〃	〃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복지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장	신미화	2016. 4.25.	법의날유공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2016. 5.19.	세계인의날유공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국제보육이사	박사희 온드라호	〃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훈성	〃	〃
	울산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이상민	〃	〃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순미	〃	〃
	(북)라파엘클리닉			〃	〃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	〃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	위원	최병하	2016. 7.15.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고양지역연합회	위원	김석란	〃	〃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위원	배효연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부회장	김영만	〃	〃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위원	이옥순	〃	〃
	법사랑위원 군산지역연합회	위원	김정훈	〃	〃
	법사랑위원 공주지역연합회	지구대표	유명조	〃	〃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위원	민병하	〃	〃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	지구대표	임은택	〃	〃
	수원구치소	교정위원	조완표	2016.10.28.	교정의날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박효심	〃	〃
	울산구치소	교정위원	홍혜량	〃	〃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김진하	〃	〃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김수명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김갑수	2016.11.16.	갱생보호지원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지원센터	보호위원	조영배	〃	〃
	세종특별자치시			2016.12.21.	법질서유공
	인천광역시			〃	〃
	부산광역시 북구청			2016.12.21.	법질서유공
	서울소년원			〃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박성혁	〃	〃
	(사)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황정한	2016.11.25.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김유평	〃	〃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	이대공	〃	〃
	(사)광주전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허정	〃	〃

X.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16. 12. 현재)

소 관 별	계	장관실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 실	교 정 본 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인권국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56	1	15	8	11	3	1	1	5	7	4

2. 위원회 개요

연 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 건축협위, 중앙급식 관리위, 외국인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84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이원복 (교수)	17	정 책 기획단	장 관 실
2	법무부 직장방위 협의회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35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향토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장 관	13	비상 안전	기 획 조 정 실
3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훈령 제870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조정 실장	12	기획 재정	
4	법무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 법무부 정책연구관리규정 (법무부훈령 935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조정 실장	17	"	
5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장관이 임명	11	창조 행정	
6	법무부 보통징계 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차 관	9~15	"	

연 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7	법무부근무성적 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조정	장관이 임명	5~	창조 행정	기 획 조 정 실
8	법무부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장관이 임명	4~6	"	
9	법무부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	"	
10	법무부성과급심사 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	"	
11	법무부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차 관	5~	"	
12	법무부자체규제 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1036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등에 대한 심사	최정진 (변호사) · 기획조정 실 장	6	"	
13	법무부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규정 (훈령 제1077호)	법무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지문	이선우 (교수)	12	"	
14	법무부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010호)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노명선 (변호사)	24	"	
15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 실장	6	"	
16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의4	법무정보화 업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김현곤 (한국정보화 진흥원 부원장)	9	정보화	

연 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7	법무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 형사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남북 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조, 제2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윤진수 (교수)	15	법무 심의 관실	법 무 실
18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12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 심의	차 관	9~15	"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7조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안전 준비	법무심의관	6	"	
19	법무부변호사징계 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장 관	9	법무과	
20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 징계사건심의	차 관	7	"	
21	외국법자문사징계 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장 관	16	국 제 법무과	
22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차 관	7	국 가 송무과	
23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사법시험법 제14조	사법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장 관	13	법 조 인력과	
24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 방법 등의 개선 등의 심의	차 관	15	"	
25	검사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장 관	7	검찰과	

연 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26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1	"	검 찰 국
27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9	"	
28	검사직무성과금심의 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 지급액 심의	차 관	5	"	
29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부령)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에 관한 심의	검찰국장	5	형 사 기획과	
30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특별사면·감형·복권 상신의 적정성 심사	장 관	9	"	
31	국가보안유공자심사 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국장	7	공 안 기획과	
32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차 관	7	"	
33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국장	11	"	
34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국장	5	"	
35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국장	5	"	

연 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 5개 심사위원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고 검 차장검사	각 9	범 죄 예 방 기획과	범 죄 예 방 정 책 국
37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효율적 법교육 추진	김영천 (교수)	15	법질서 선진화과	
38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차 관	9	보 호 법제과	
39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유원규 (변호사)	11	감 찰 관 실	감 찰 관 실
40	장애인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심의	차 관	8	인 권 정책과	인 권 국
41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훈령 제890호)	법무행정 및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박은정 (교수)	25	"	
42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심의	장 관	18	인 권 구조과	
	범죄피해자 실무 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차 관	19	"	
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차 관	15	"	
44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구조금 지급 재심신청사건 심의 결정	차 관	7	"	
45	법무부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법무부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이재연 (교수)	12	여성 아동 인권과	
46	법무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 지침(훈령 제1000호)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권국장이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인권국장	5	"	

연 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7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차 관	9	분 류 심사과	교 정 본 부
48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896호)	투자이민제도 운영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차 관	11	체류 관리과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49	법무부이민정책자문 위원회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926호)	이민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시행 시 자문	정인섭 (교수)	14	외국인 정책과	
50	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제28조	특별귀화대상자 선정 및 국적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심의	외국인 본부장	21	국적과	
51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제53조의4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외국인 본부장	11	이 민 통합과	
52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차 관	15	난민과	
53	법무부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훈령 1021호) 제3조	보안대책수립 및 제규정 제정	차 관	9	운 영 지원과	운 영 지 원 과
54	법무부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 제 2015-195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차 관	6	"	
55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기획조정 실 장	6	"	
56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여부	기획조정 실 장	11	"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16.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62개 기관	31,513
법 무 부	2실 3국 2본부	666
검 찰 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0	10,336
법 무 연 수 원	진천본원 1, 용인본원1	13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30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38, 위치추적관제센터 2	1,495
치 료 감 호 소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389
소 년 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	807
교 정 기 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8, 지소 3	15,701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19, 외국인보호소 2, 출장소 24, 센터 1	1,94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16.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4개 단체	1,056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0, 지소 72, 법문화교육센터 1	7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5, 지소 7, 센터 1, 교육원 1	192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34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 1	16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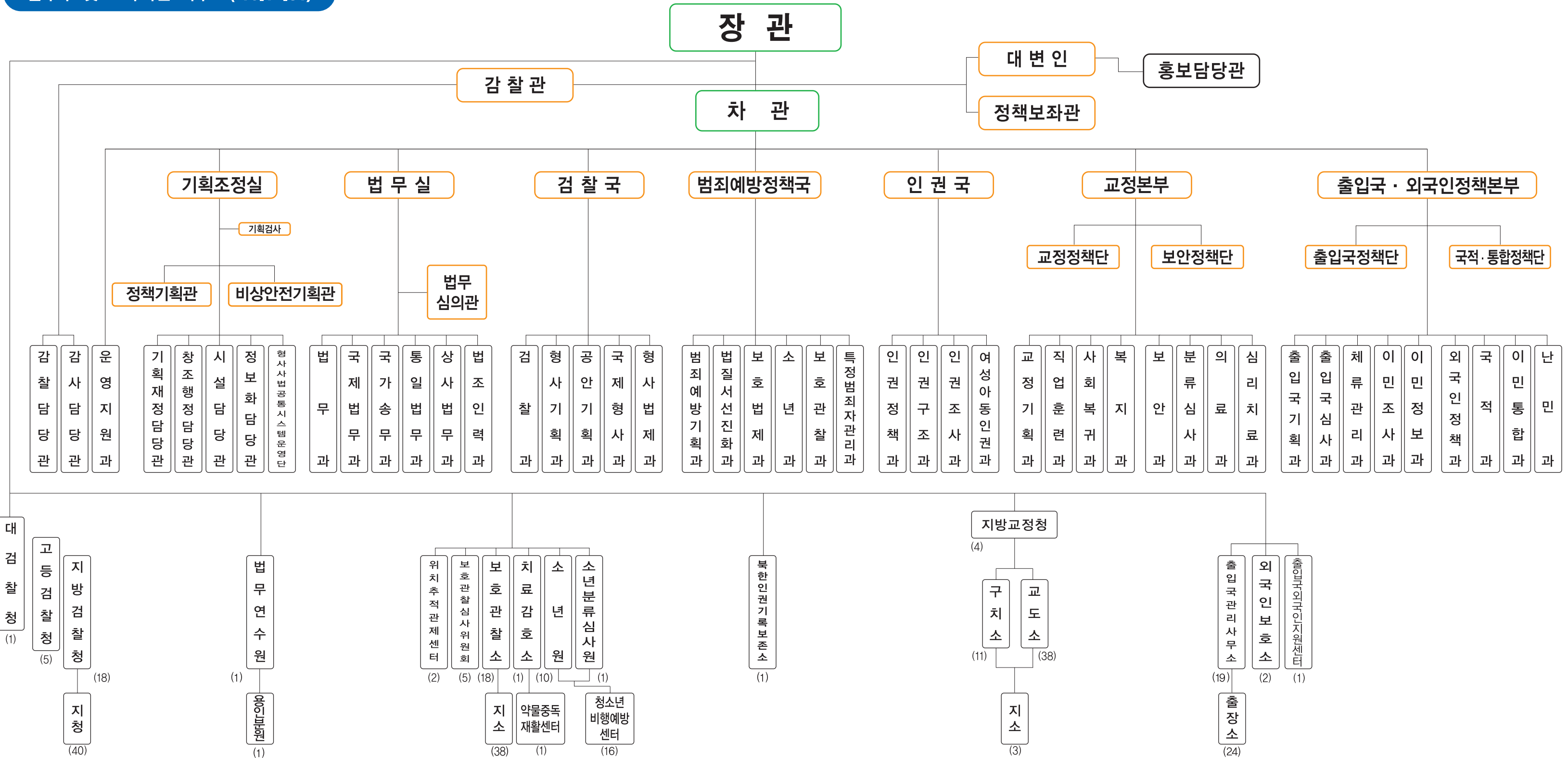
- ◆ 법무부 본부 기구변천표
-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illegible]

범례 : △靑(신설) △赤(개편, 이관)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16.12.31)



법무연감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검 사 장	조 상 철
--------	-------	-------

□ 편집위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이 상 순
법무실	검 사	신 재 홍
검찰국	검 사	나 희 석
범죄예방정책국	검 사	강 성 기
감찰관실	검 사	손 상 욱
인권국	검 사	안 희 준
교정본부	부이사관	최 제 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이 동 권
장관정책보좌관	검 사	이 종 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 정 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유 지 중
법무연수원	검 사	윤 상 호

□ 편집실무위원

기획조정실	사 무 관	이 현 정
법무실	사 무 관	이 재 호
검찰국	사 무 관	김 동 욱
범죄예방정책국	사 무 관	조 연 호
감찰관실	사 무 관	최 종 필
인권국	사 무 관	반 준 성
교정본부	교 정 관	이 정 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 무 관	문 수 용
대변인실	사 무 관	고 영 석
운영지원과	서 기 관	김 수 철
법무연수원	사 무 관	김 승 권

法務手鑑

발행일 | 2017년 9월

발행기관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무과천청사
TEL : (02) 2110-3092, 3093
FAX : (02) 2110-0314

인쇄 | 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TEL : (063) 714-3967

〈비매품〉